

2013년 10월 현재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2013년 구미시의회 정례회]

2013. 11



구 미 시

목 차

1. 제안사유	1
2. 보고의 목적 및 배경	1
3. 계획의 범위	1
1) 공간적 범위	1
2) 내용적 범위	1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2
5.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3
6.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5
7. 행정절차	5
8. 첨부자료	6
①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서 및 도면	6
1) 공원	9
2) 운동장	131
3) 폐기물처리시설	137
② 관계법령	14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기 위함.

2. 보고의 목적 및 배경

-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 실효기간(20년)이 너무 길고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임
-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통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함

3.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내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2) 내용적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현황보고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법 제47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 함(실시계획인가 및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부분 시행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잔여부분은 미집행시설로 봄
- 실시계획인가 없이 법 제47조에 따라 부지 매수를 한 경우 미집행 시설로 봄

· 기반시설의 종류

구 분	시 설 종 류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비 고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11종 (4종)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 <u>공원</u> ,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5종 (5종)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9종 (6종)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u>운동장</u> ,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10종 (8종)
방재시설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천, 우수지	8종 (2종)
보건 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6종 (2종)
환경 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하수도, <u>폐기물처리시설</u>	4종 (2종)

5.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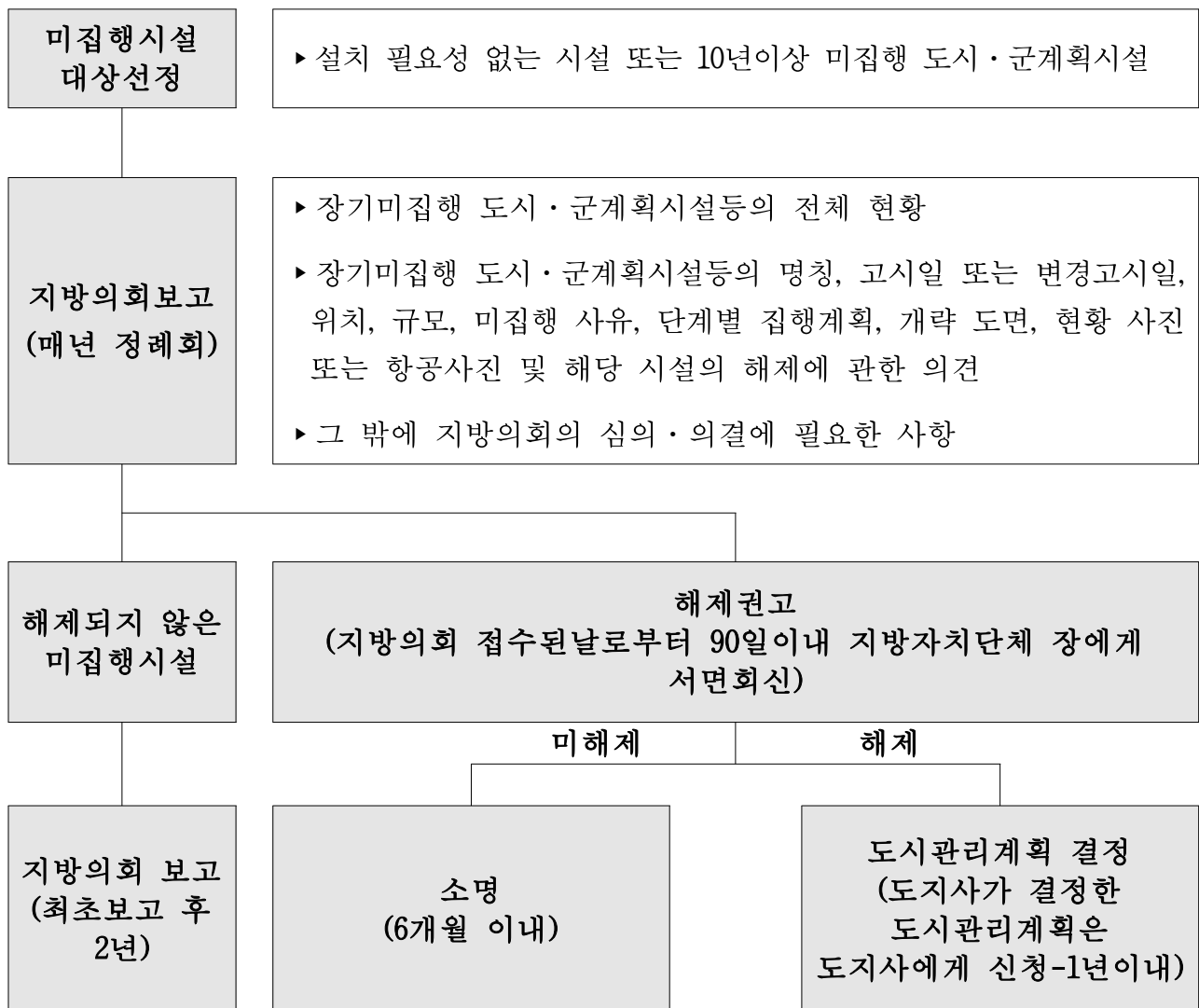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금회보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525	49,097,294	1,962	21,186,187	1,563	27,911,238	539	14,677,804	40개소 12,038,930㎡
교통시설	계	2,715	18,938,380	1,522	8,923,918	1,193	10,014,462	470	2,043,008	
	도로	광로	4	953,730	4	953,730	-	-	-	
		대로	90	6,723,194	41	3,334,173	49	3,389,021	11	512,589
		중로	500	7,495,164	196	2,332,500	304	5,162,664	44	773,688
		소로	2,015	3,168,657	1,248	1,972,940	767	1,195,717	410	699,275
	철도	2	261,406	2	261,406	-	-	-	-	
	주차장	97	214,604	28	57,054	69	157,550	3	6,149	
	자동차정류장	7	121,625	3	12,115	4	109,510	2	51,307	
공간시설	계	546	20,339,029	233	3,862,644	313	16,476,385	56	11,944,992	
	광장	21	989,083	15	387,314	6	601,769	2	380,252	
	공원	242	15,619,696	120	1,677,027	122	13,942,669	38	11,528,756	38개소 11,528,756 ㎡
	녹지	267	3,269,950	92	1,786,497	175	1,483,453	16	35,984	
	공공공지	15	14,575	6	11,806	9	2,769			
	유원지	1	445,725	-	-	1	445,725			
오류·미집행시설	계	63	755,206	54	634,613	9	120,593	2	7,850	-
	수도공급설비	28	438,229	22	365,889	6	72,340	1	4,250	
	전기공급설비	20	77,928	18	60,517	2	17,411	1	3,600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15,887	1	15,887	-	-			
	방송·통신시설	1	23,959	1	23,959	-	-			
	공동구	1	6,863	1	6,863	-	-			
	시장	12	192,340	11	161,498	1	30,842			

기초민중화체육시설	계	161	7,224,018	127	6,377,767	34	846,250	10	407,954	
	학교	122	3,297,999	97	3,028,277	25	269,722	7	90,450	
	공공청사	12	146,370	11	144,770	1	1,600			
	운동장	2	275,906	1	39,732	1	236,174	1	236,174	1개소 236,174㎡
	문화시설	4	260,560	-	-	4	260,560	1	76,830	
	체육시설	10	3,119,289	8	3,045,595	2	73,694			
	도서관	2	9,076	1	4,576	1	4,500	1	4,500	
	연구시설	1	45,285	1	45,284	-	-			
	사회복지시설	8	69,533	8	69,533	-	-			
방재시설	계	10	366,702	4	255,002	6	111,700	-	-	-
	유수지	10	366,702	4	255,002	6	111,700			
보건위생시설	계	3	77,527	3	77,659	-	-	-	-	-
	도축장	1	29,188	1	29,320	-	-			
	종합의료시설	2	48,339	2	48,339	-	-			
환경기초시설	계	27	1,396,432	19	1,054,584	8	341,848	1	274,000	
	하수도	21	238,731	14	170,883	7	67,848			
	폐기물처리시설	6	1,157,701	5	883,701	1	274,000	1	274,000	1개소 274,000㎡

6.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13.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보고
- 2014. 02 : 해제권고(지방의회) 서면회신
- 2014. 04 : 미 해제 시설에 대한 소명 및 관리계획 수립

7. 행정절차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42조에 따라 매년 정례회시 지방의회에 보고 되며, 미해제 시설에 대해서 최초보고 후 2년 뒤에 재보고가 이루어짐

8. 첨부자료

①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현황조서 및 도면

1) 공원

시설명	사업량(㎡)			최초 결정일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미집행사유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비고
	총합계	집행	미집행					
38개소	11,528,756		11,528,756		1,014,531			
근린공원 소계 11개소	11,485,761		11,485,761		1,010,747			
근린공원1 (형곡중앙공원)	615,512		615,512	1973.12.31	54,165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2 (비산공원)	219,381		219,381	1973.12.31	19,306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3 (도산공원)	574,000		574,000	1973.12.31	50,512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5 (오태공원)	1,801,070		1,801,070	1973.12.31	158,494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9 (인동1공원)	1,766,448		1,766,448	1973.12.31	155,447	재원부족	축소	
근린공원18 (봉곡1공원)	14,300		14,300	1987.02.07	1,258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20 (문성1공원)	20,450		20,450	1980.12.11	1,800	재원부족	존치	
묘지공원21 (옥계공원)	350,000		350,000	1978.09.15	30,800	재원부족	폐지	
근린공원27 (비봉공원)	194,100		194,100	1969.09.01	17,081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29 (화개공원)	185,500		185,500	1994.02.08	16,324	재원부족	존치	
근린공원31 (천생산공원)	5,745,000		5,745,000	1991.08.12	505,560	재원부족	존치	
어린이공원 소계 27개소	42,995		42,995		3,784			
어린이공원1 (지산공원)	1,000		1,000	1987.03.12	88	재원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3 (고아제2공원)	2,450		2,450	1980.12.11	216	재원부족	존치	
어린이공원27 (인동제1공원)	1,500		1,500	1978.02.14	132	재원부족	존치	
어린이공원28 (인동제2공원)	1,670		1,670	1978.02.14	147	재원부족	존치	

시설명	사업량(㎡)			최초 결정일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미집행사유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비고
	총합계	집행	미집행					
어린이공원93 (관심제1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94 (관심제2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95 (이레공원)	2,500		2,500	1994.01.05	220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96 (관심제3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97 (오로제1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98 (오로제2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99 (오로제3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00 (오로제4공원)	1,500		1,500	1994.01.05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01 (동부공원)	1,500		1,500	1969.09.01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02 (이문공원)	1,500		1,500	1969.09.01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06 (1호화조공원)	1,500		1,500	1995.04.14	132	개발여건부족	축소	
어린이공원109 (3호교동공원)	1,875		1,875	1995.04.14	165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15 (상모제2공원)	1,600		1,600	1992.08.04	141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16 (상모제3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재원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0 (봉한제1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1 (봉한제2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2 (다식제1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3 (다식제2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4 (송림제1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시설명	사업량(㎡)			최초 결정일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미집행사유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비고
	총합계	집행	미집행					
어린이공원125 (송림제2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6 (괴평제1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7 (괴평제2공원)	1,900		1,900	1992.08.04	167	개발여건부족	존치	
어린이공원128 (사곡제1공원)	1,500		1,500	1992.08.04	132	개발여건부족	존치	

2) 운동장

시설명	사업량(㎡)			최초 결정일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미집행사유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비고
	총합계	집행	미집행					
종합운동장1	236,174	166,345	69,829	1982.12.21	16,768	재원부족	축소	

3)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명	사업량(㎡)			최초 결정일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미집행사유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비고
	총합계	집행	미집행					
쓰레기처리장2	274,000		274,000	1991.08.12	19,454	재원부족	폐지	

1) 공 원

근 련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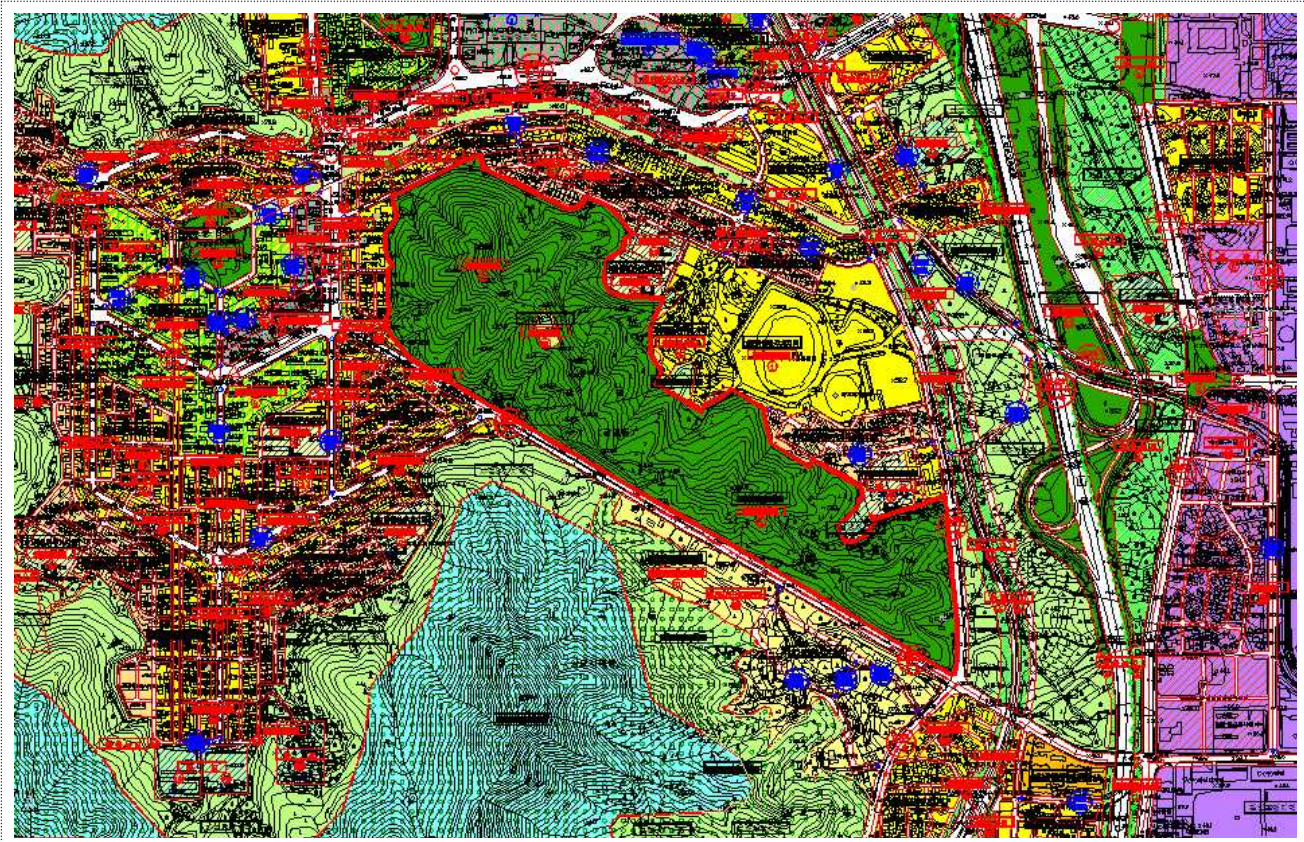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1
- 위 치 : 광평동 산57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24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	형곡중앙 공원	근린 공원	광평동 산57번지 일원	615,512	-	615,512	건교고 524 (73.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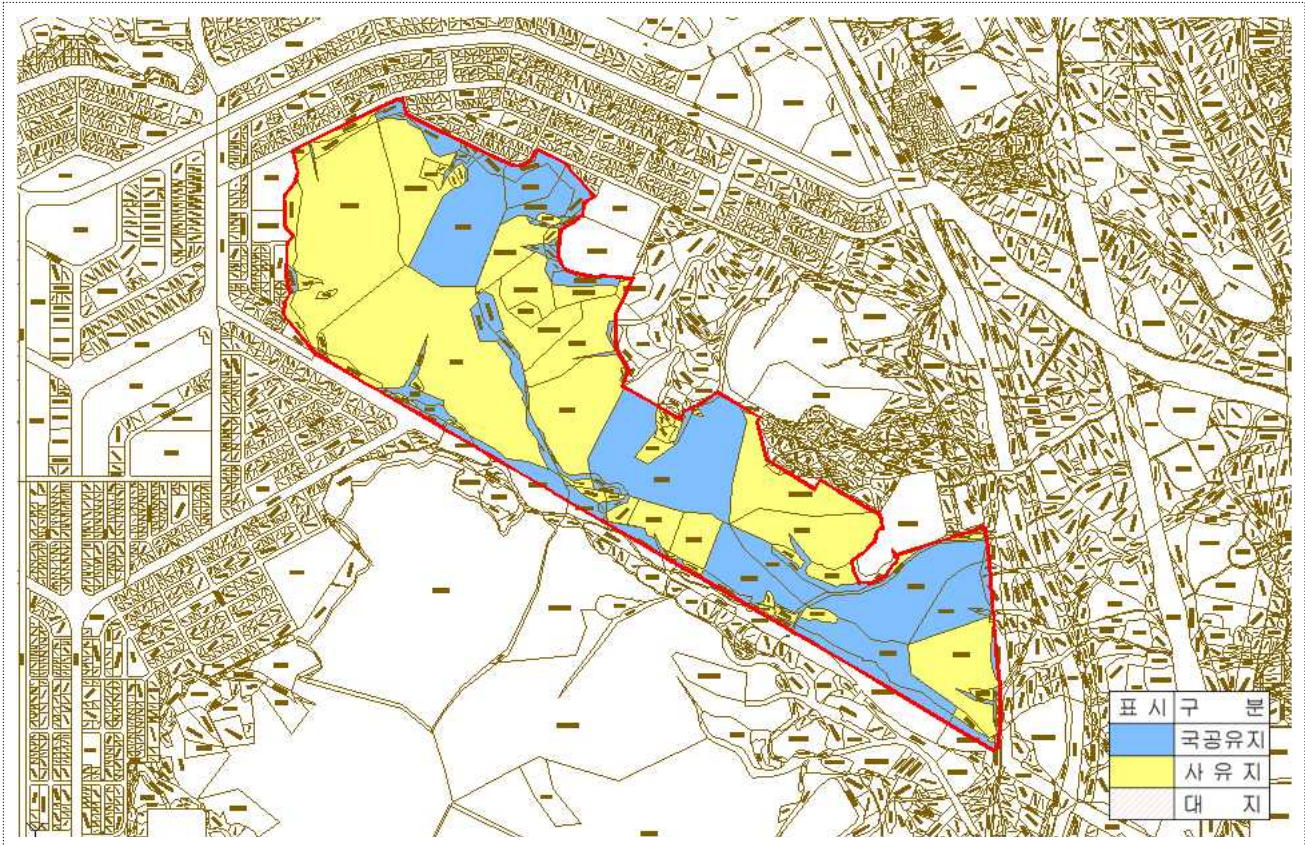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3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615,512㎡중 국공유지는 245,769㎡, 39.9%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369,743㎡, 60.1%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8㎡, 0.1%로 구성됨)
- 금오산도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시민운동장, 체육관과 인접해 있으며 공원조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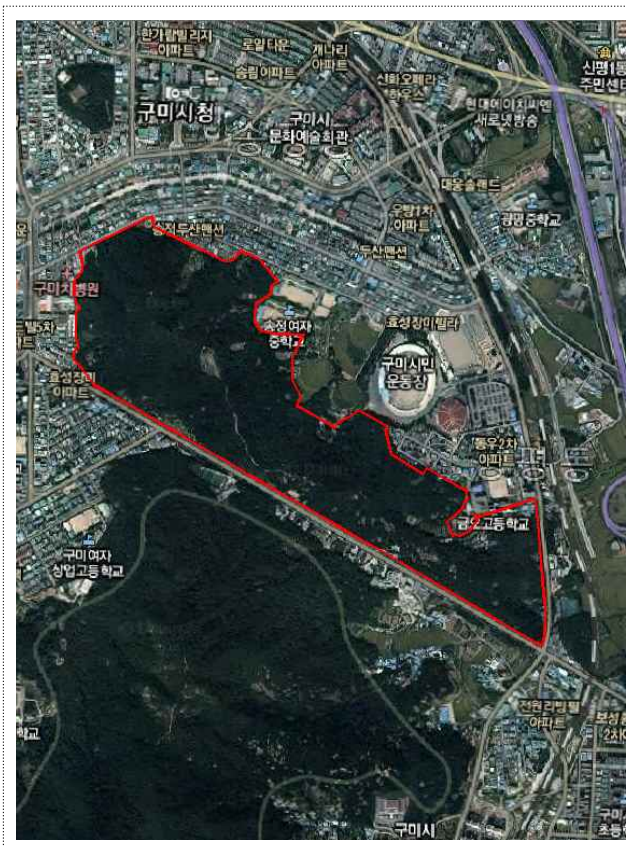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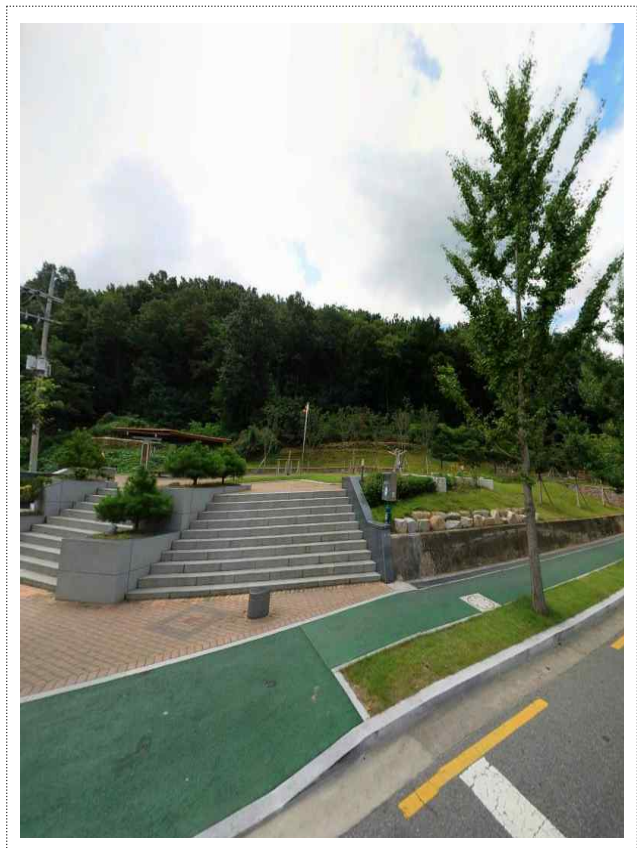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축소·건축허용·조정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근린생활 보다는 금오산 도립공원과 인접하여 보전을 위해 지정된 공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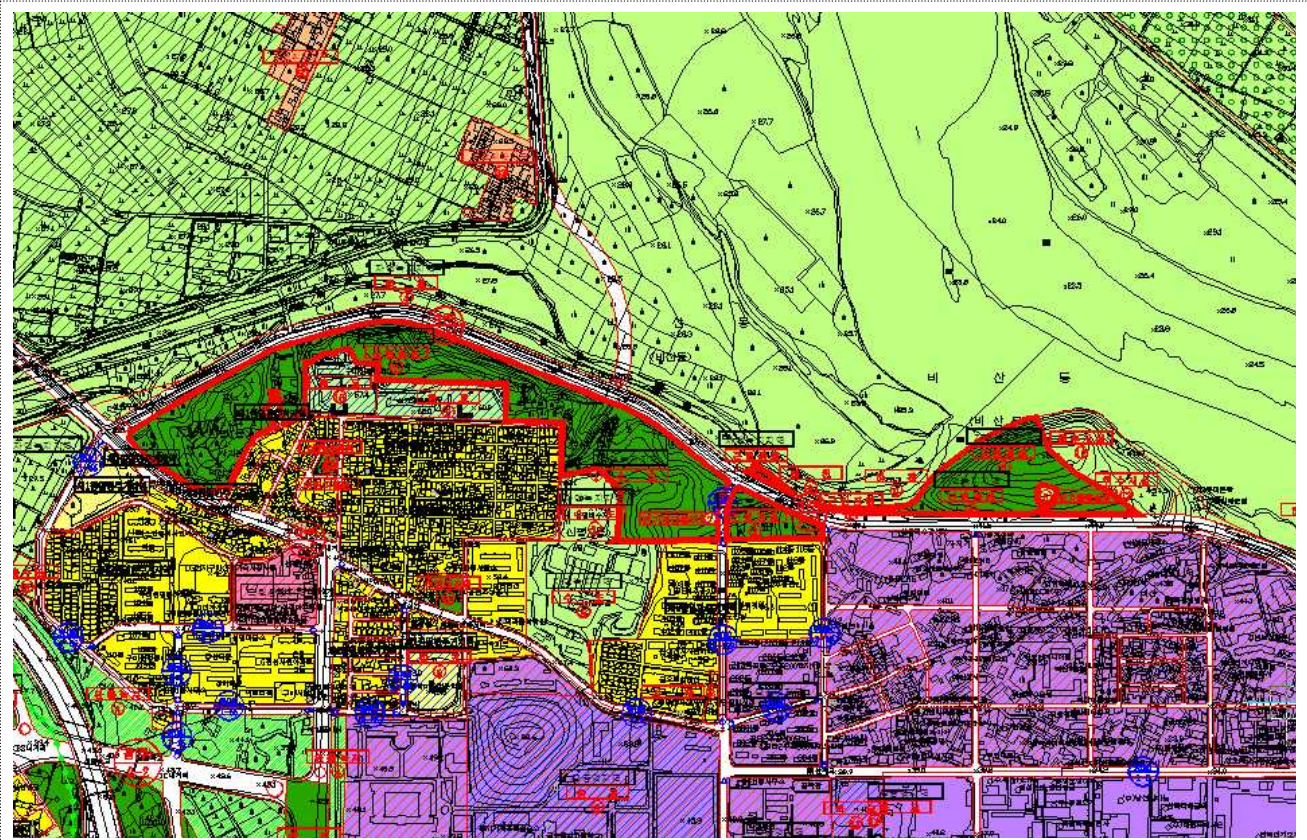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2
- 위 치 : 비산동 산9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24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	비산공원	근린 공원	비산동 산9일원	219,381	-	219,381	건교고 524 (73.12.31)	고압 철탍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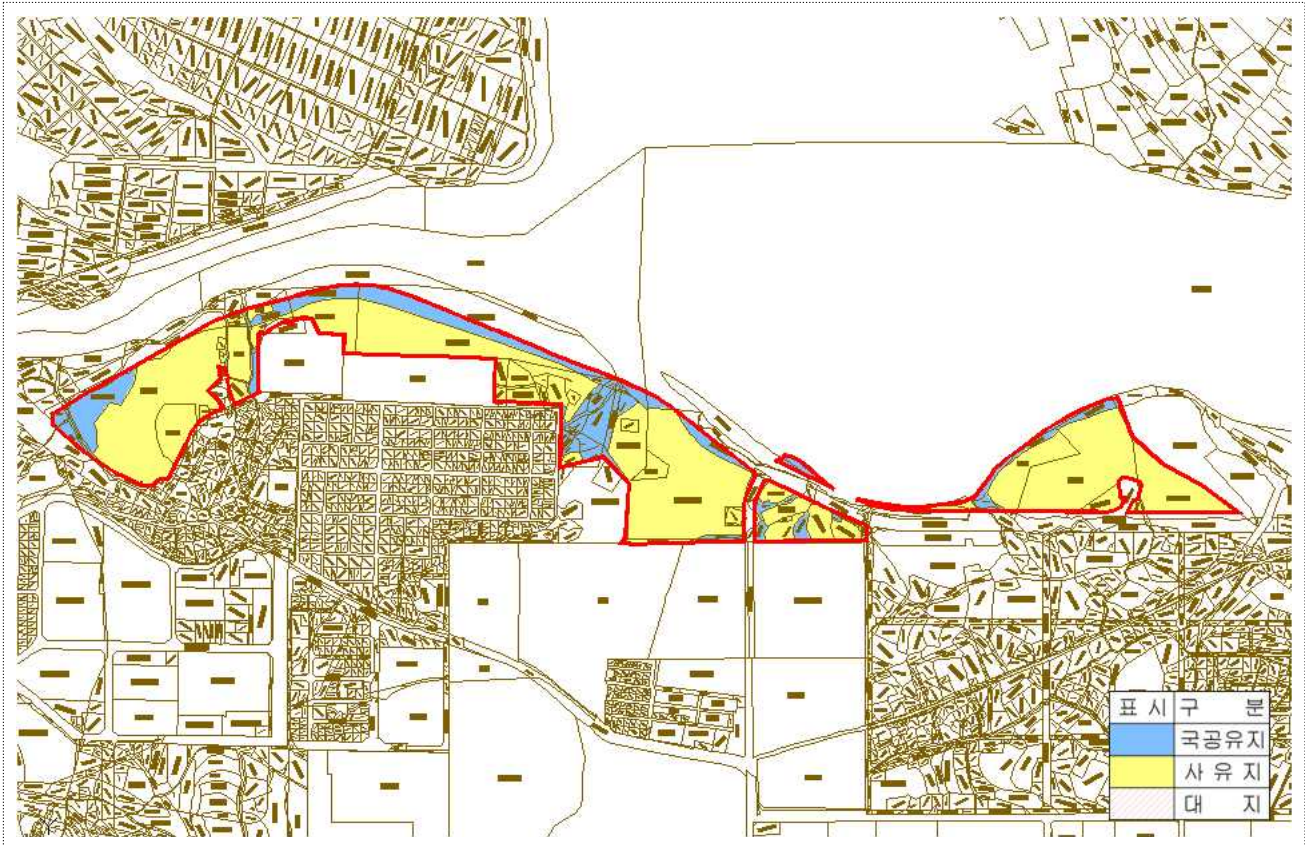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3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219,381㎡중 국공유지는 48,562㎡, 22.1%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70,819㎡, 77.9%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558㎡, 0.3%로 구성됨)
- 낙동강, 신평중학교, 신기초등학교와 연접해 있고 동측부분에 고압철탍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측 경계부 일부에 광장, 폭포, 주차장 등의 공원시설이 개설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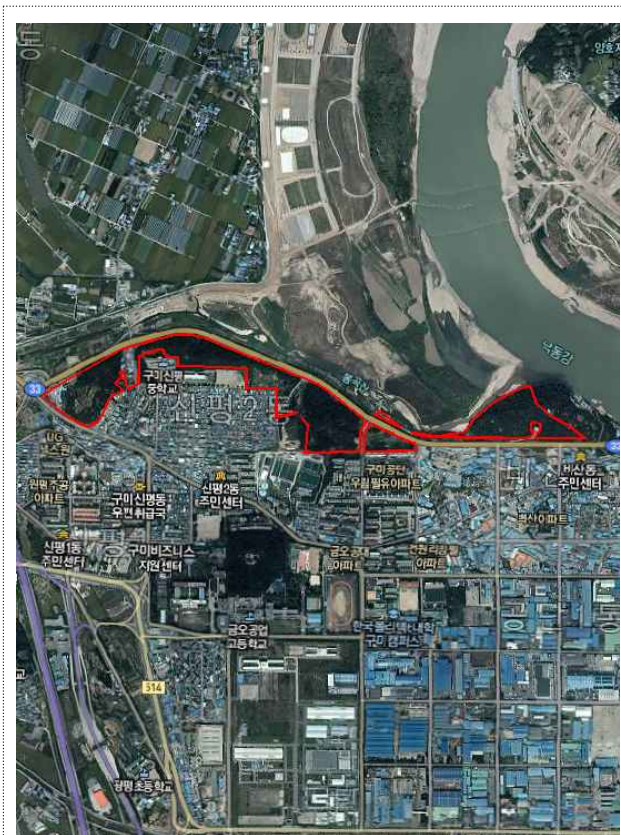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일부 해당 (통과도로 3개)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토록 규정된 사항이 일부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지침상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토록 규정
- 현재 통과도로가 3개 입지해 잔여토지가 발생되었으나 근린생활과 보전을 위해 지정된 공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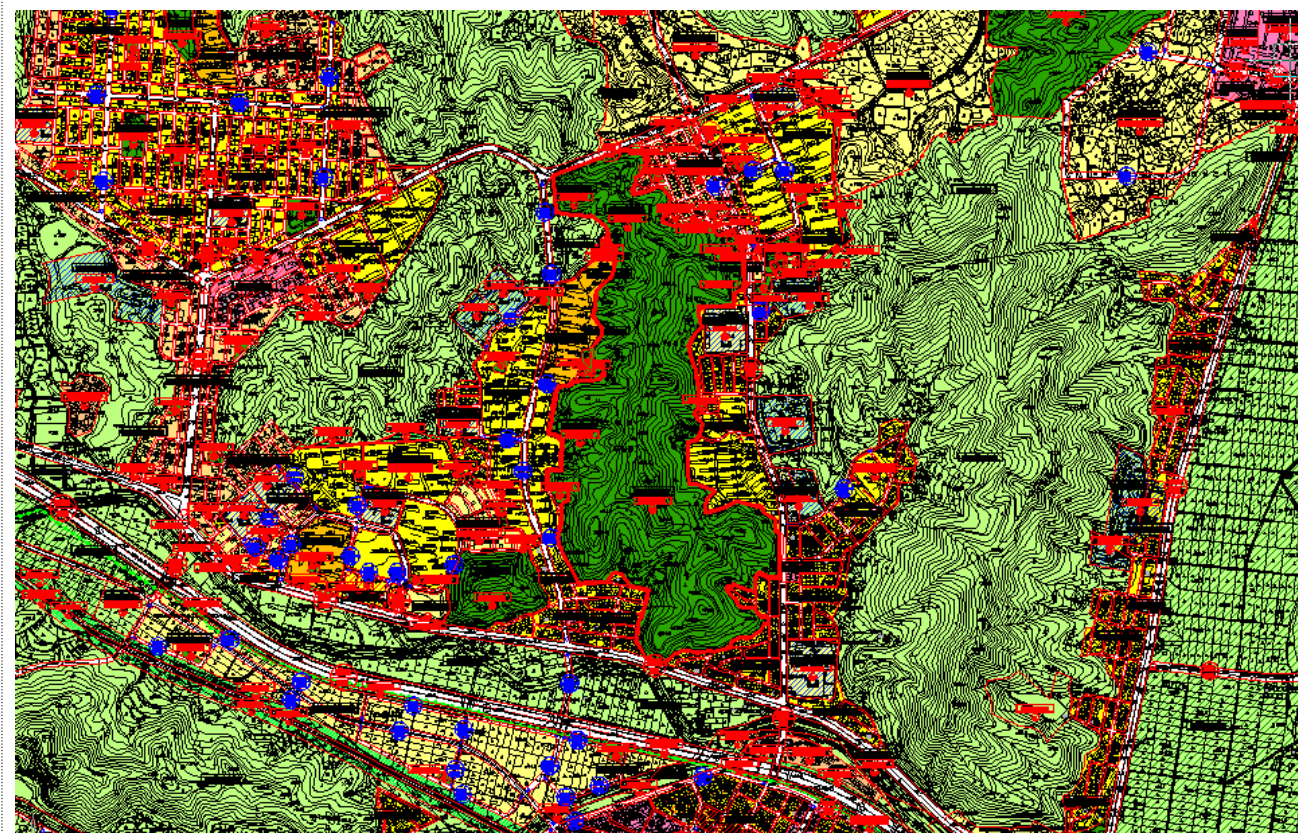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3
- 위 치 : 도량동 산25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24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	도산공원	근린 공원	도량동 산25일원	574,000	-	574,000	건교고 524 (73.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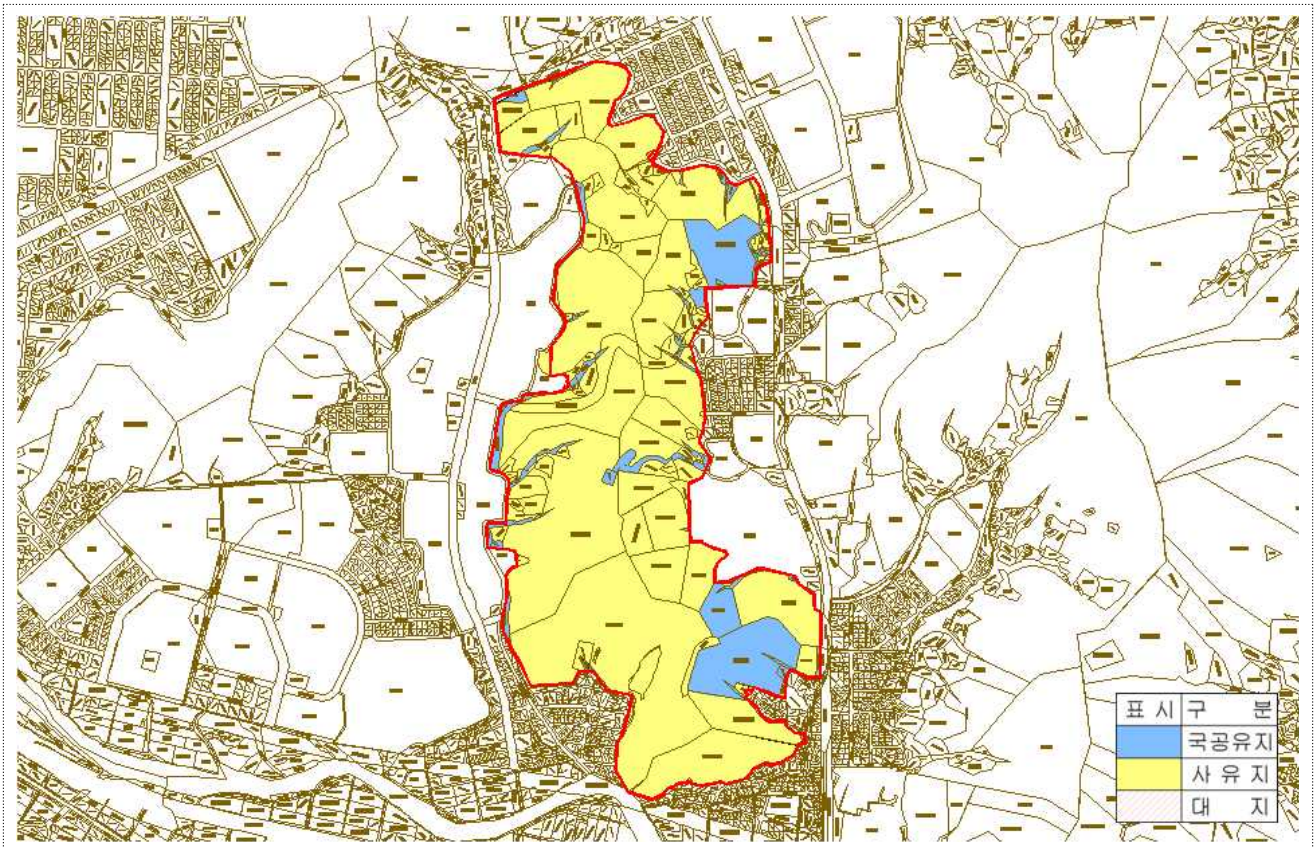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3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574,000㎡중 국공유지는 74,654㎡, 1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499,346㎡, 87.0%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617㎡, 0.1%로 구성됨)
- 구미중학교, 도량지구, 다봉산과 인접해 있고 약 100m 이내 거리에 2개의 다른 근린공원이 입지해 있으며 공원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양호한 임상임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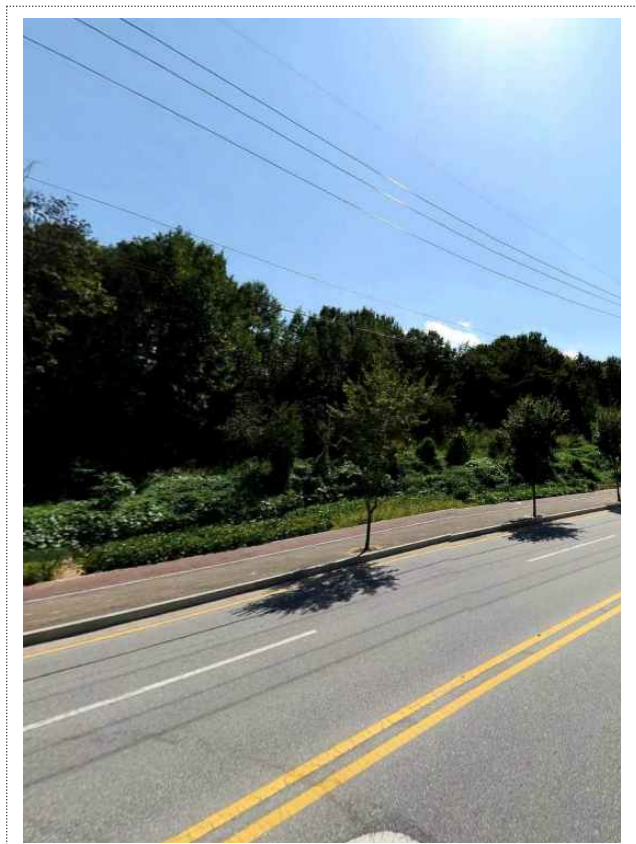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축소·건축허용·조정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인근에 다봉산과 도량지구 근린공원(73,869㎡), 원호공원(15,039㎡)이 입지해 있고 근린생활과 보전을 위해 지정된 공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의거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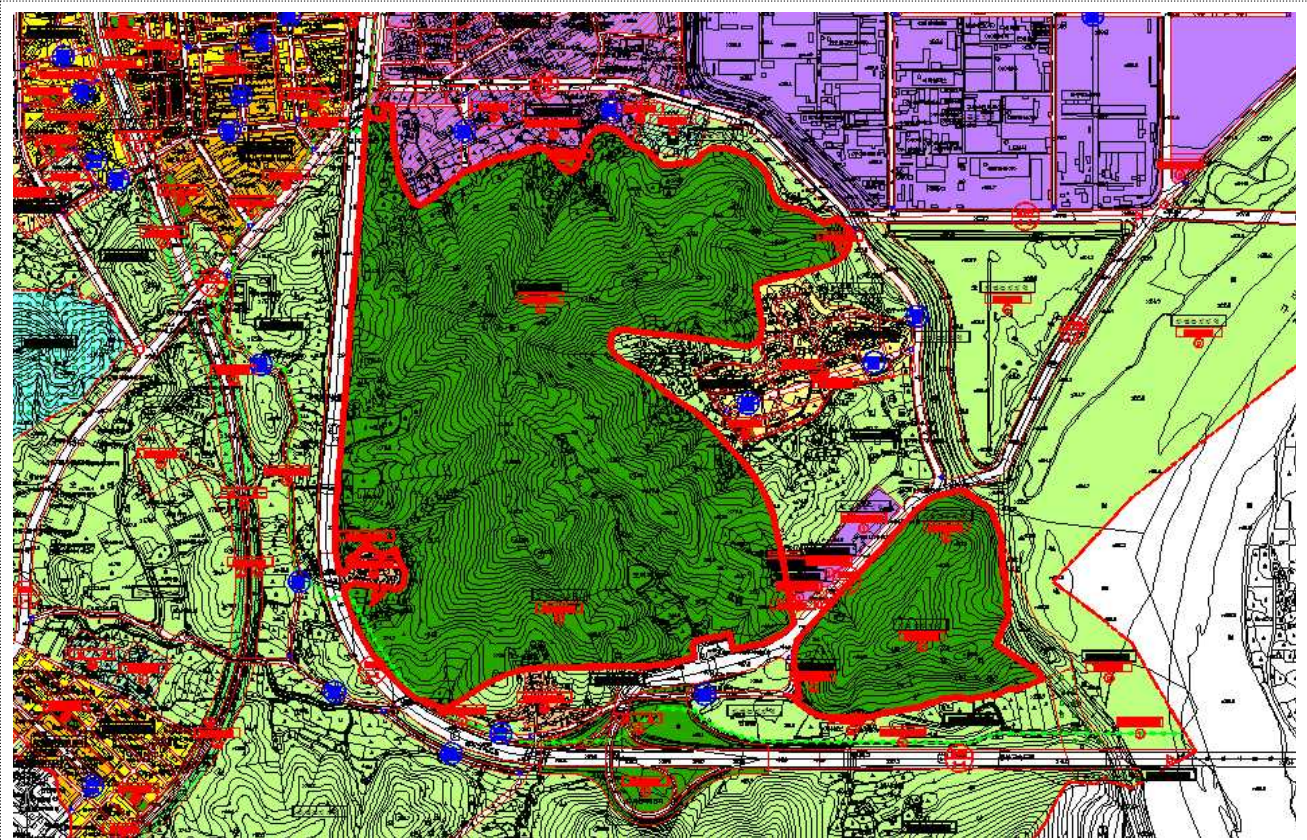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5
- 위 치 : 오태동 산10-2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24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	오태공원	근린 공원	오태동 산10-2일원	1,801,070	-	1,801,070	건교고 524 (73.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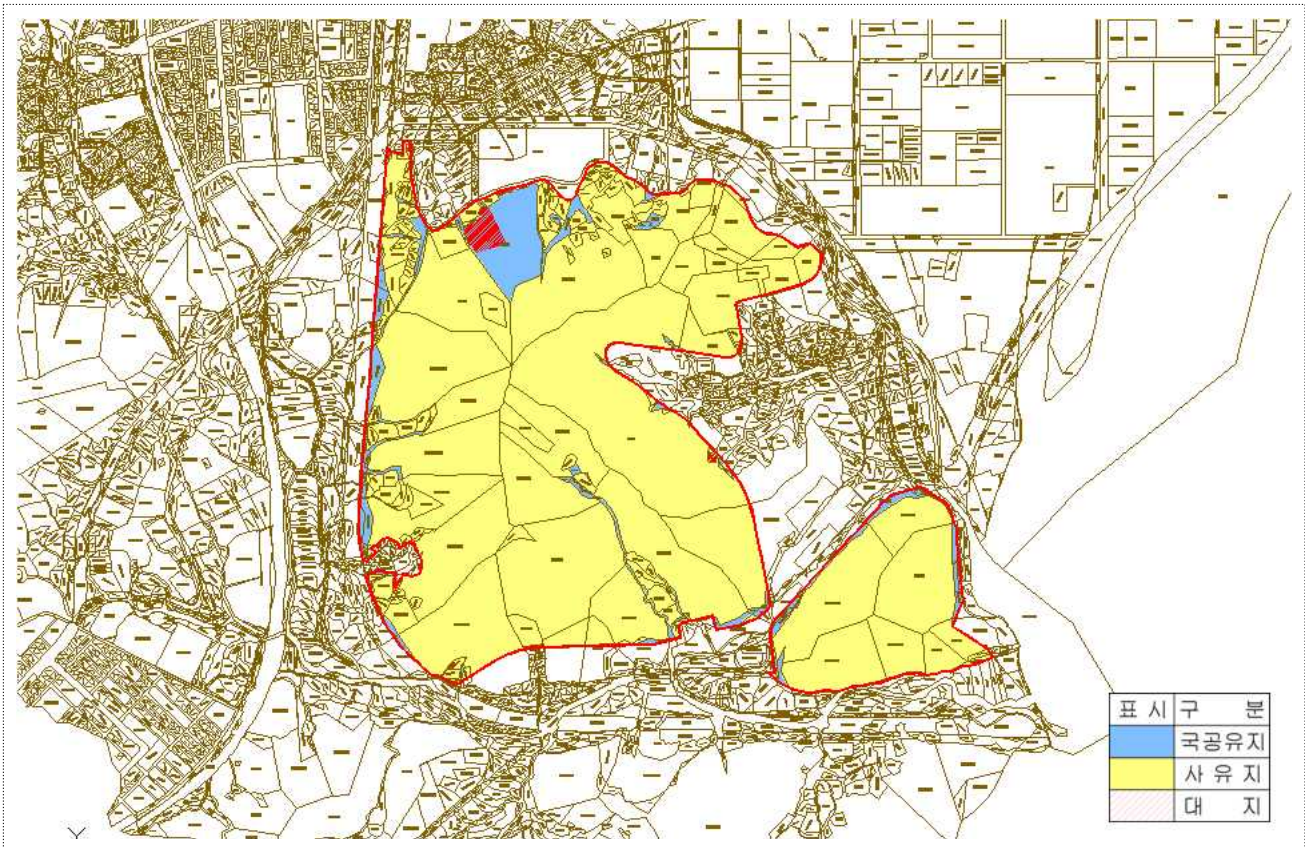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3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801,0700m²중 국공유지는 142,308m², 7.9%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658,762 m², 92.1%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1,338m², 0.6%로 구성됨)
- 금오중학교, 경부고속국도 남구미IC, 국가산업1단지, 낙동강 등이 인접해 있고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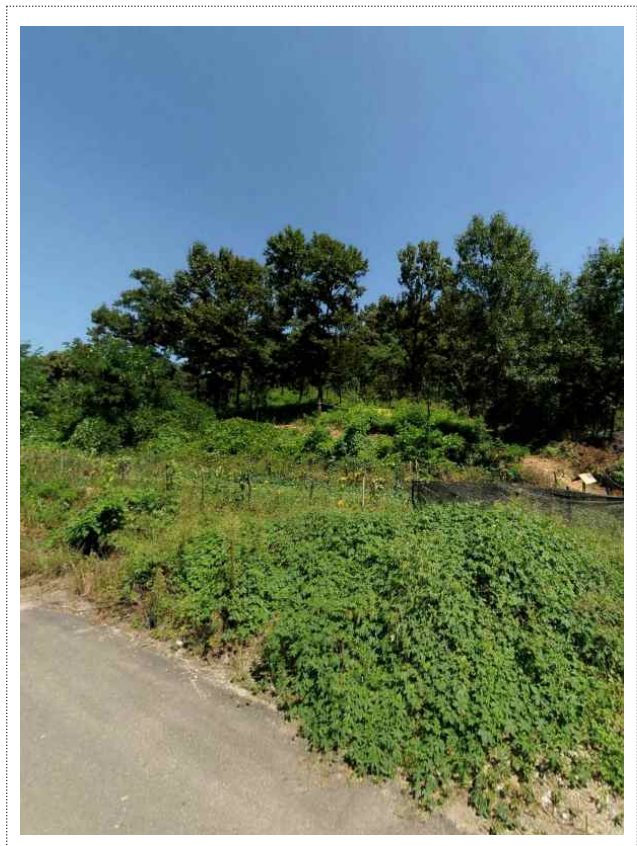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일부 해당 (통과도로 1개)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토록 규정된 사항이 일부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현재 통과도로가 1개 입지해 잔여토지가 발생되었으나 근린생활과 보전을 위해 지정된 공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의거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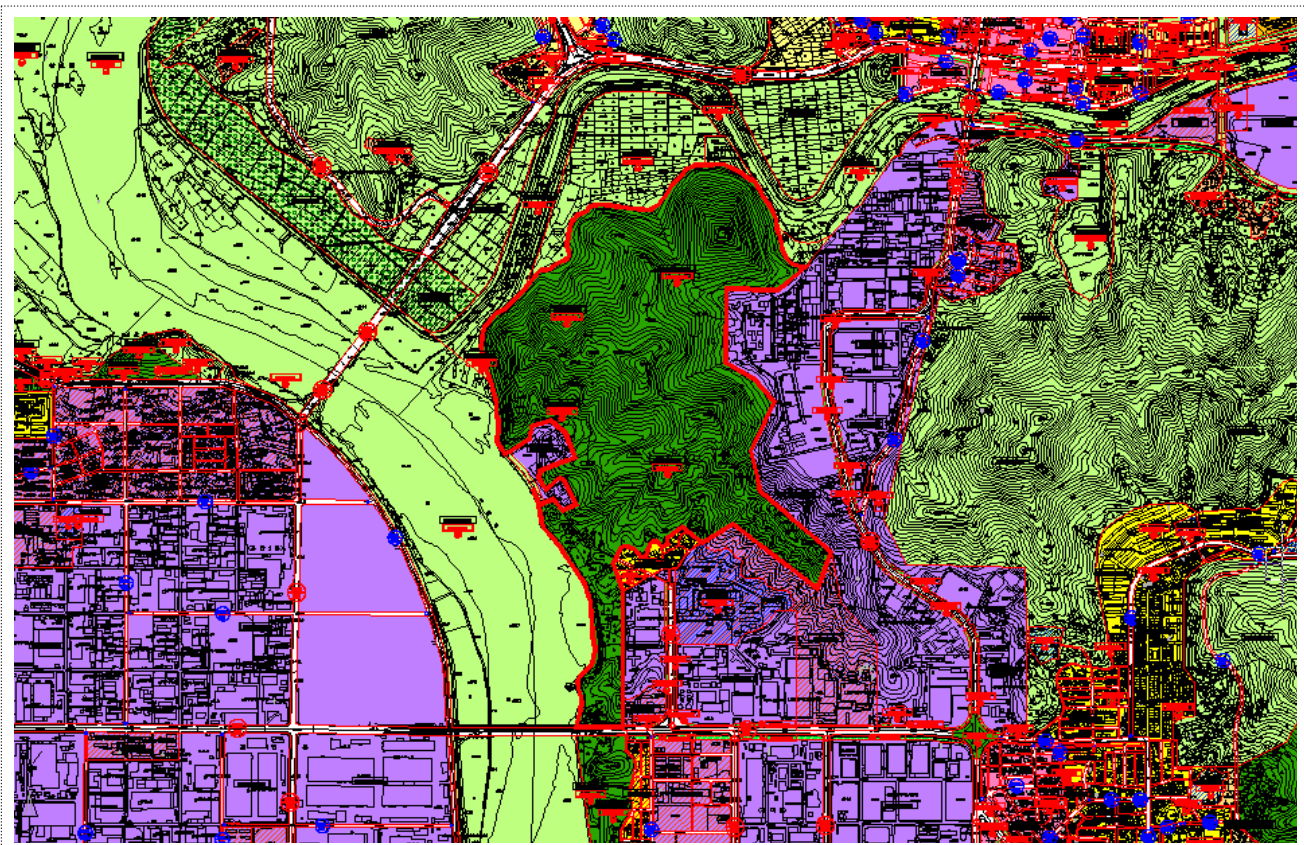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9
- 위 치 : 임수동 산30-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24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	임수동 1공원	근린 공원	임수동 산30-1일원	1,766,448	-	1,766,448	건교고 524 (73.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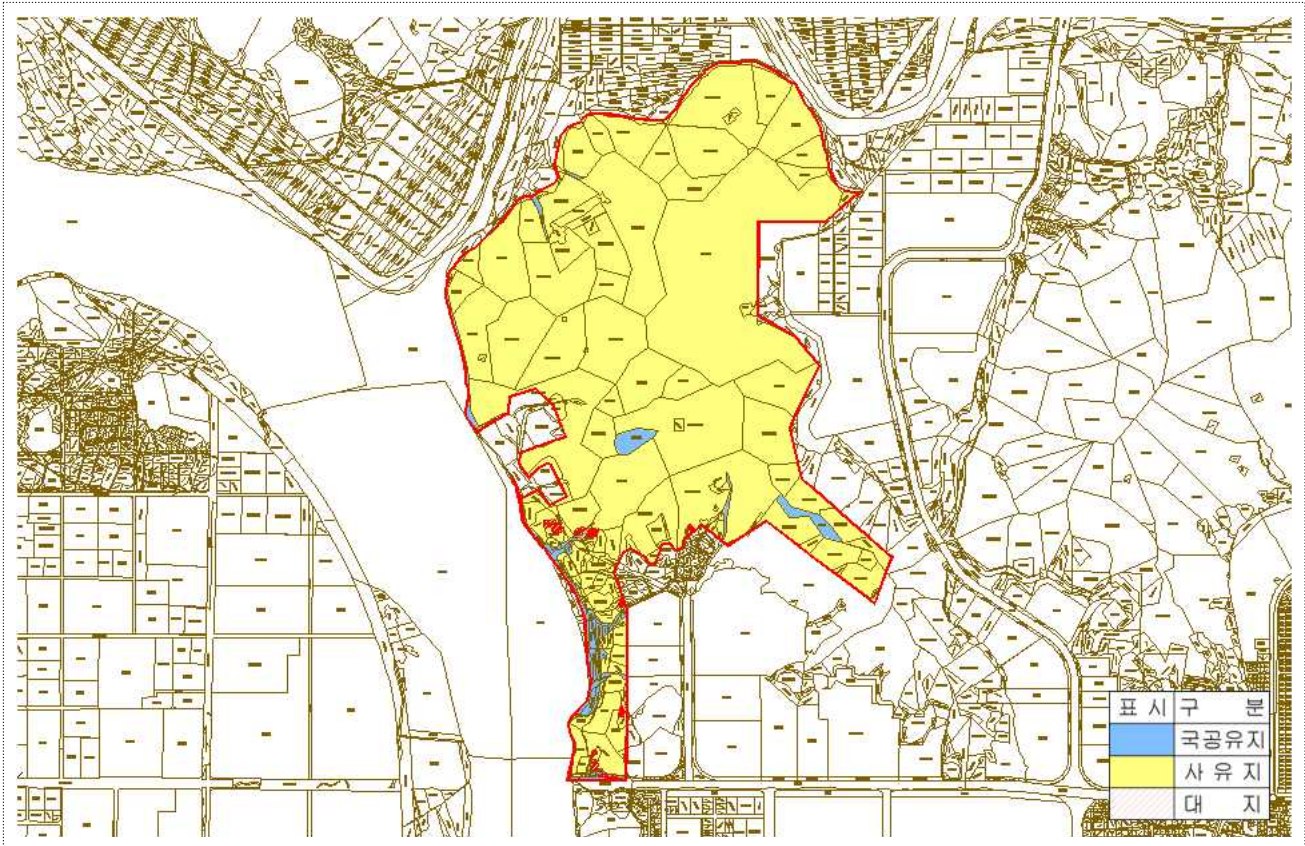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3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766,448㎡중 국공유지는 69,290㎡, 3.9%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697,158㎡, 96.1%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6,721㎡, 0.4%로 구성됨)
- 구미전자공고, 낙동강, 국가산업2단지, 천생산과 인접해 있고 남쪽의 낙동공원과 구미대교로 분리되어 있으며 공원조성된 부분은 없이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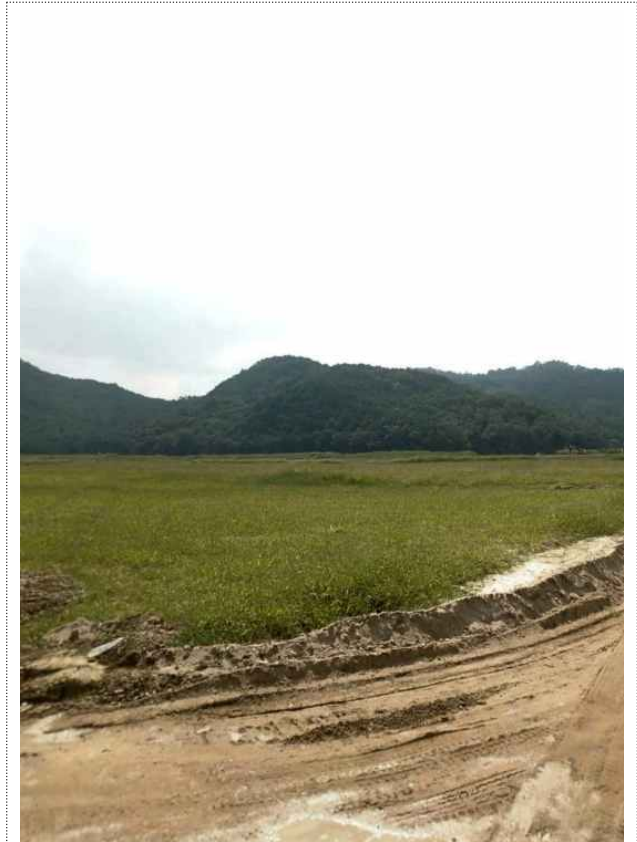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일부 해당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토록 규정된 사항에 일부 해당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방위정책사업으로 확장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입증되었을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원구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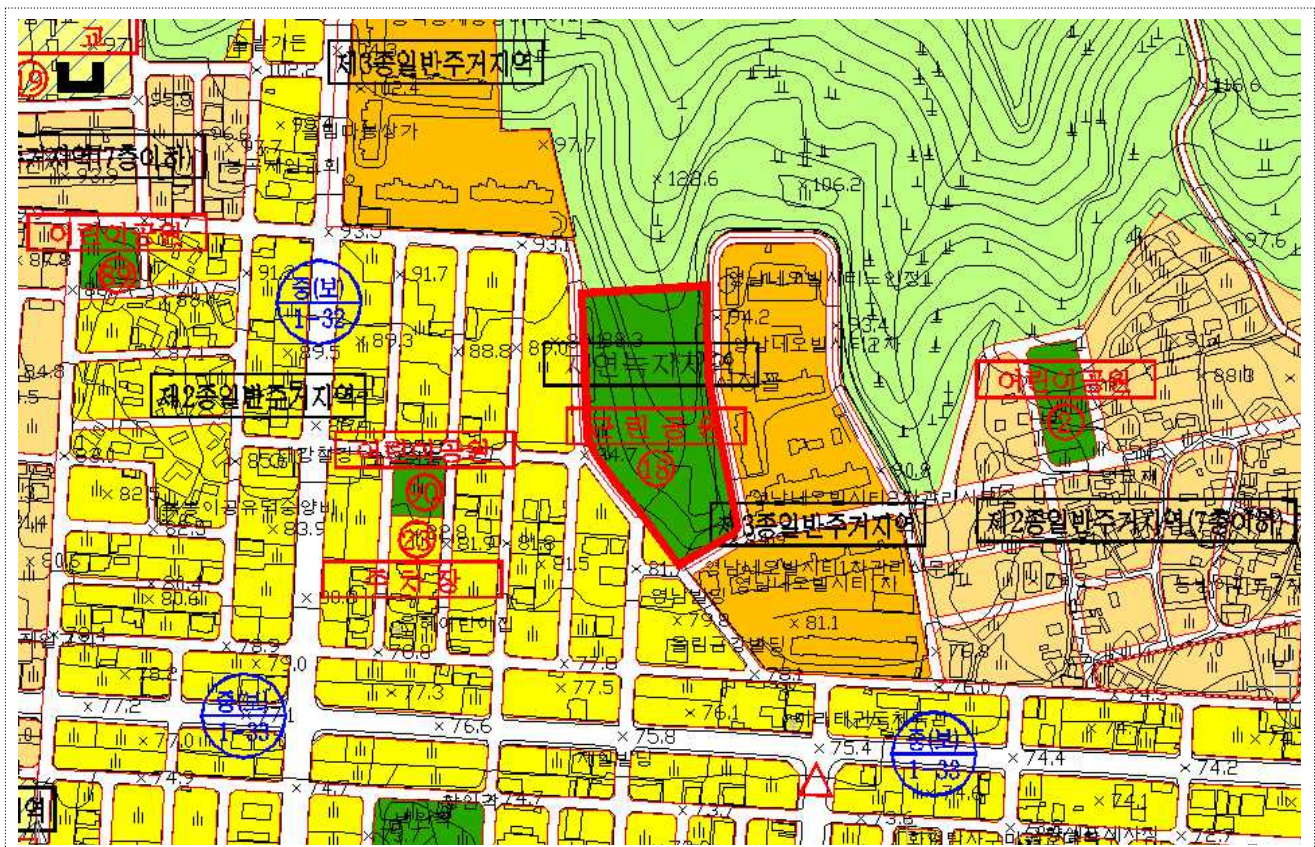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18
- 위 치 : 봉곡동 산3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42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8	봉곡 1공원	근린 공원	봉곡동 산3일원	14,300	-	14,300	건교고 42 (87.2.7)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87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6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4,300㎡중 국공유지는 1,215㎡, 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3,085㎡, 91.5%로 구성됨)
- 공동주택지인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다봉산과 인접해 있고 공원시설의 조성은 없이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공동주택지인 아파트가 입지해 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택지가 형성중 이며 이들 근린생활권 거주자의 이용을 위해 지정되었음
- 장래 주거지역이 활성화 될 때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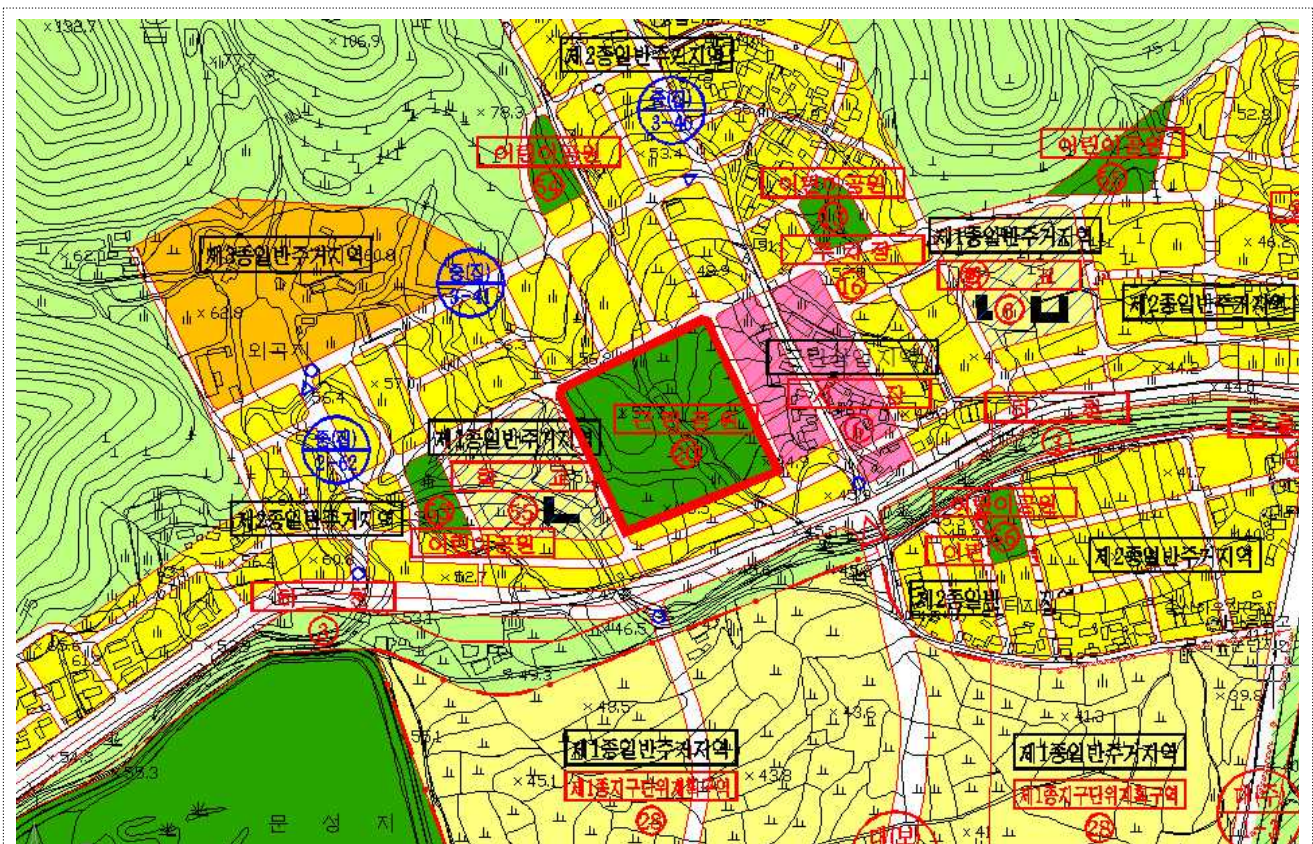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20
- 위 치 : 문성리 산21-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42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0	문성 1공원	근린 공원	문성동 산21-1일원	20,450	-	20,450	경북고 제42호 (8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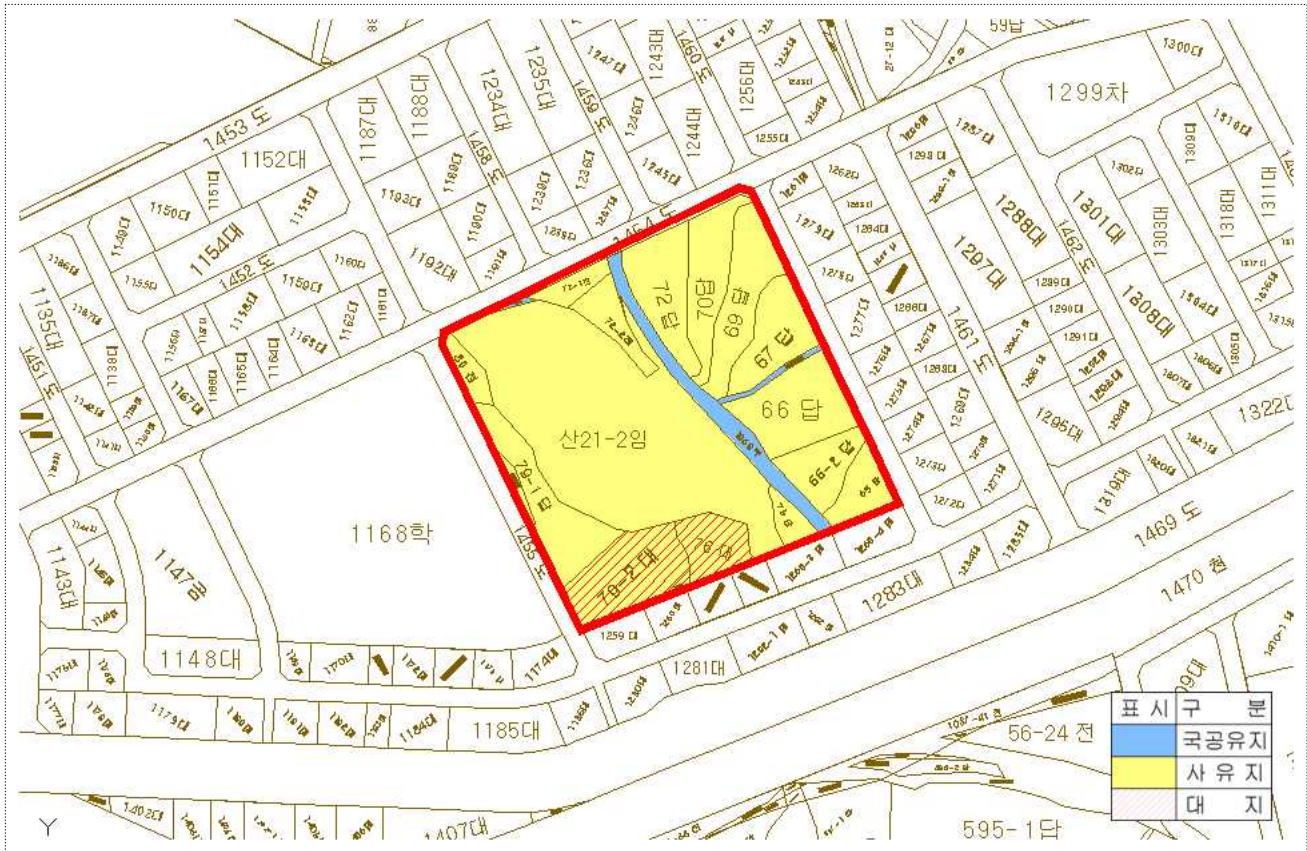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87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6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20,450㎡중 국공유지는 1,060㎡, 5.2%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9,232㎡, 94.8%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2,060㎡, 10.1%로 구성됨)
- 1987년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공원으로 계획하여 현재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만 조성되고 주거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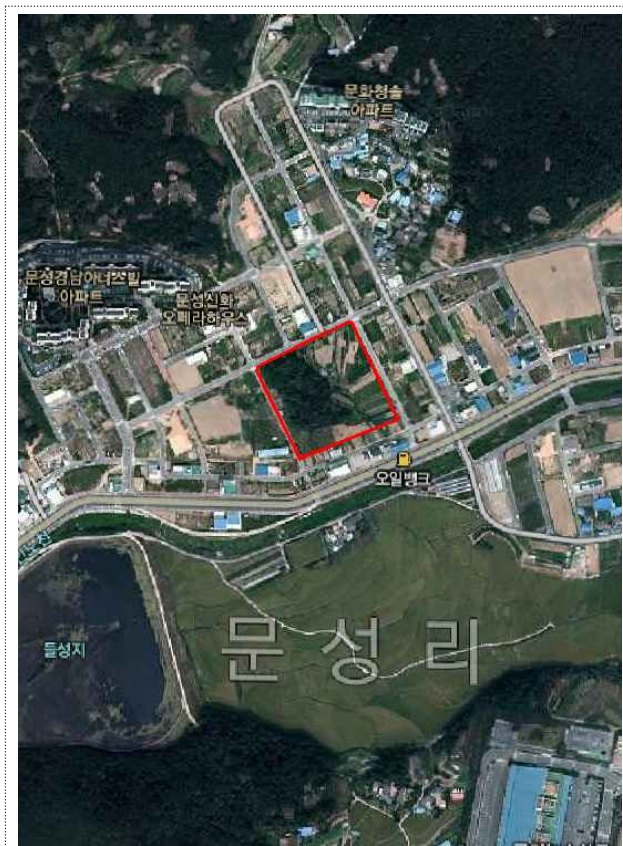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공원으로 계획하여 현재는 도로 등의 기반 시설만 조성되고 주거지역 일부 공동주택과 노후건물이 인근에 입지하는 등 주거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 장래 주거지역이 활성화 될 때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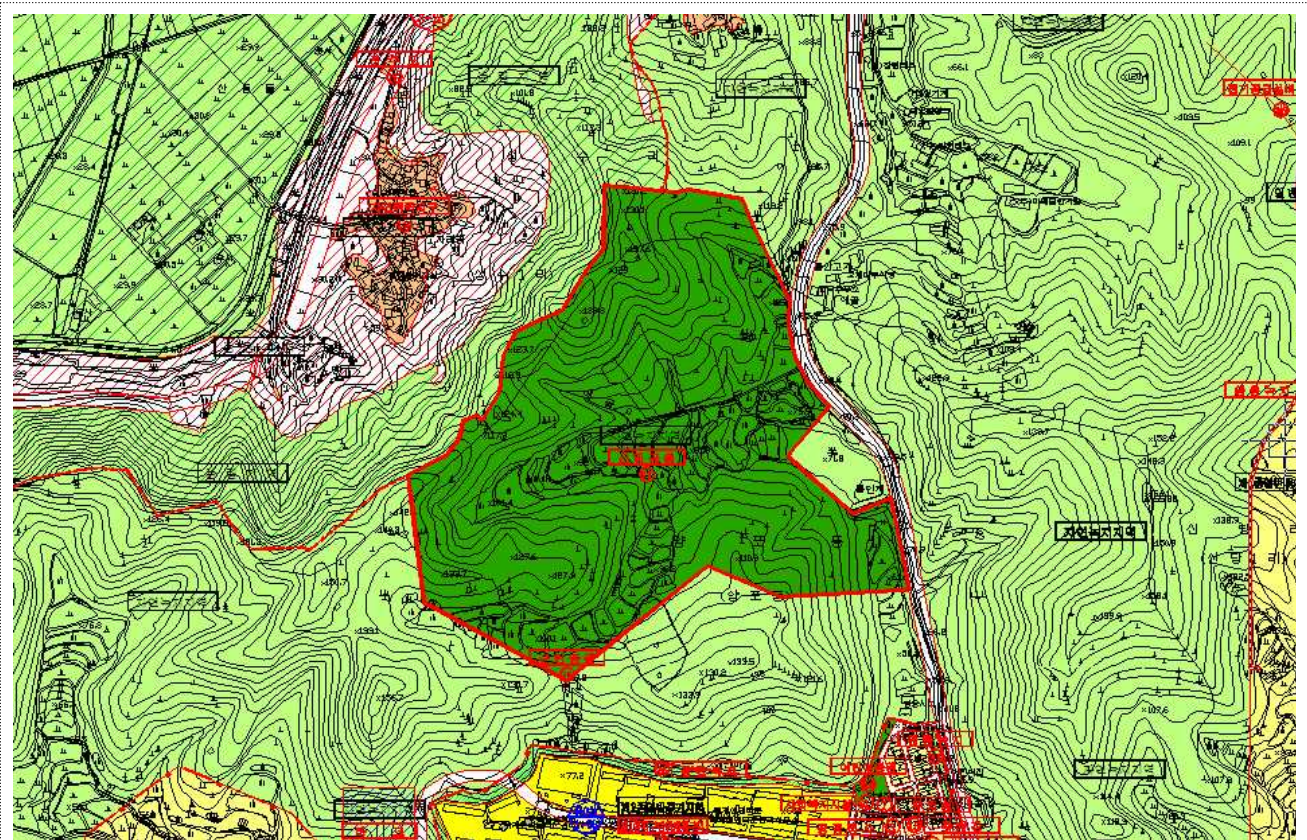
- 시설 명 : 묘지공원 21
- 위 치 : 옥계동 산7번지 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70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1	옥계공원	묘지 공원	옥계동 산7일원	350,000	-	350,000	경북고 270 (78.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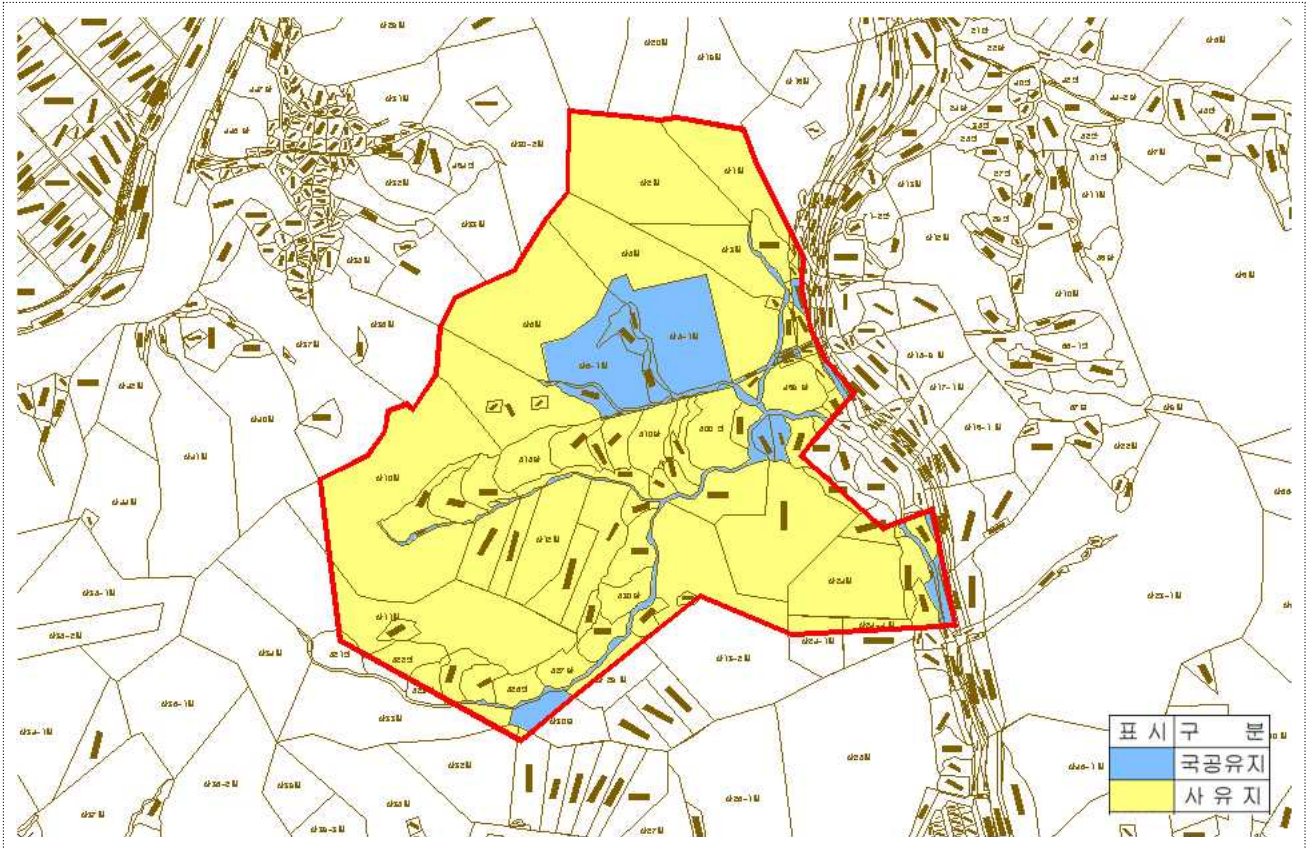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8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35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350,000㎡중 국공유지는 45,119㎡, 12.9%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304,881㎡, 87.1%로 구성됨)
- 인근에 금오공과대학교, 국가산업4단지, 국도 67호선이 입지해 있으며 공원시설 조성은 없이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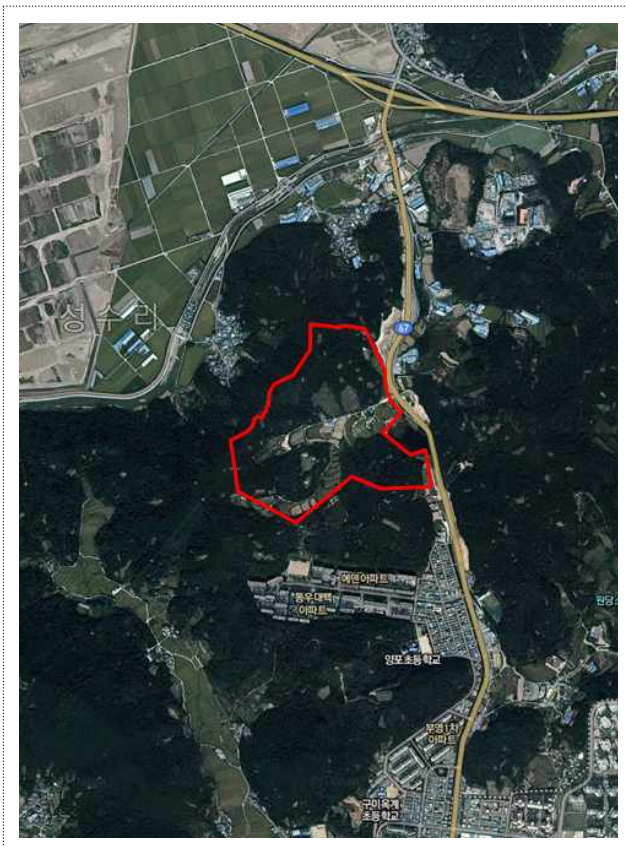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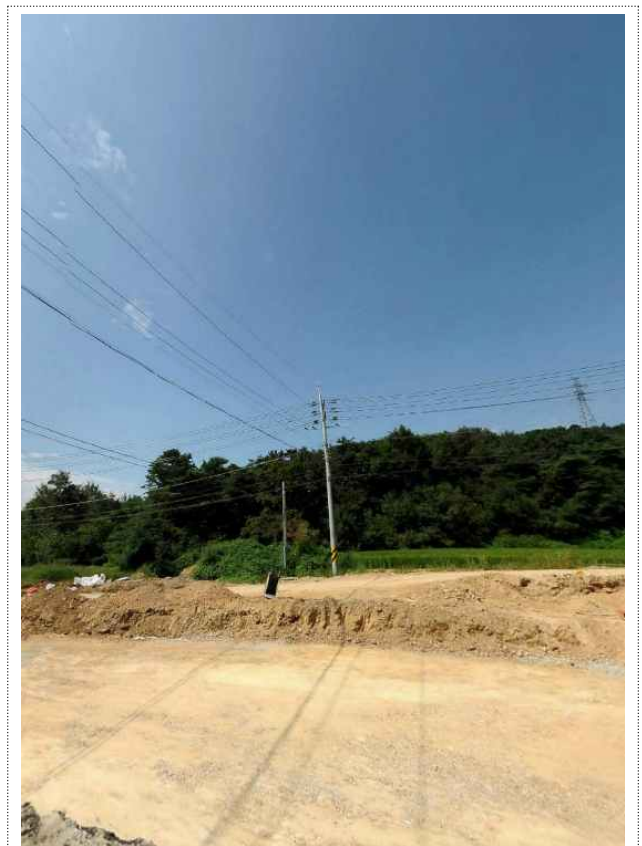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2011년 구미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장 신설 예정으로 현재 묘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의거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검토 결과 묘지공원을 폐지하여도 묘지수급계획상 여유가 있으며 기매장되어 있는 묘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묘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 함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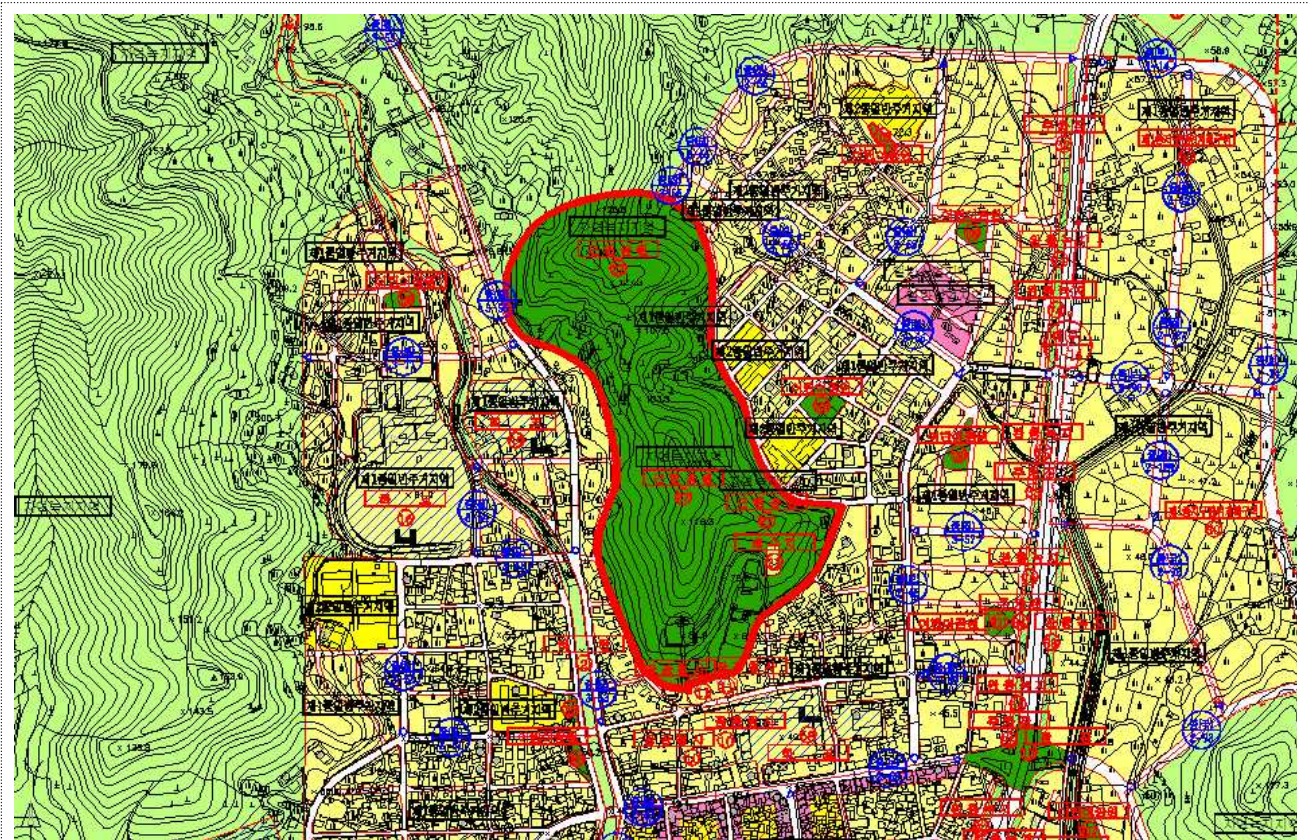
- 시설명 : 근린공원 27
- 위치 : 선산읍 노상리 산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13호
-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7	비봉공원	근린 공원	선산 노상리 일원	194,100	-	194,100	건교부 513 (6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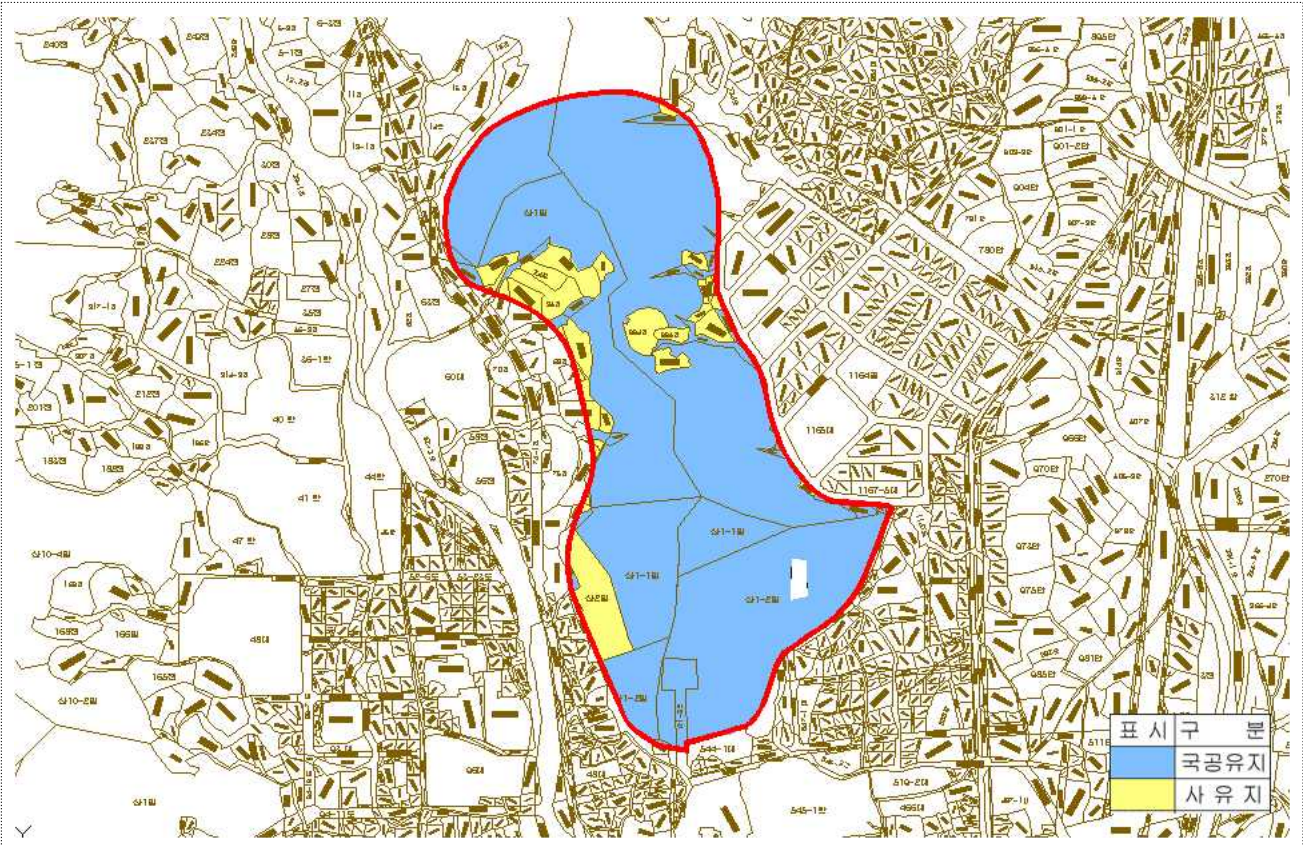
■ 일반현황

- 당해 시설은 1969년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4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94,100㎡중 국공유지는 171,431㎡, 88.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23,314㎡, 11.7%로 구성됨)
- 인근에 선산읍사무소, 선산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고 충혼탑, 배수시설 등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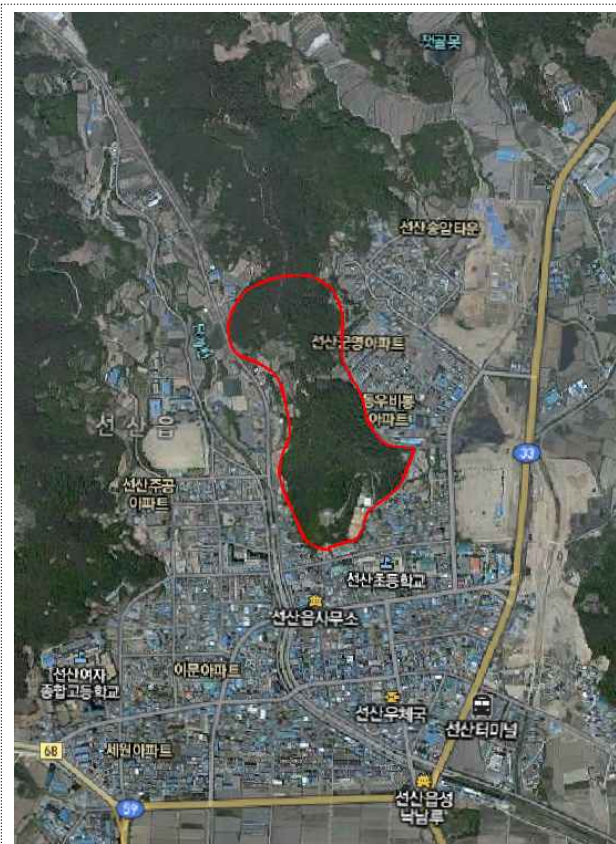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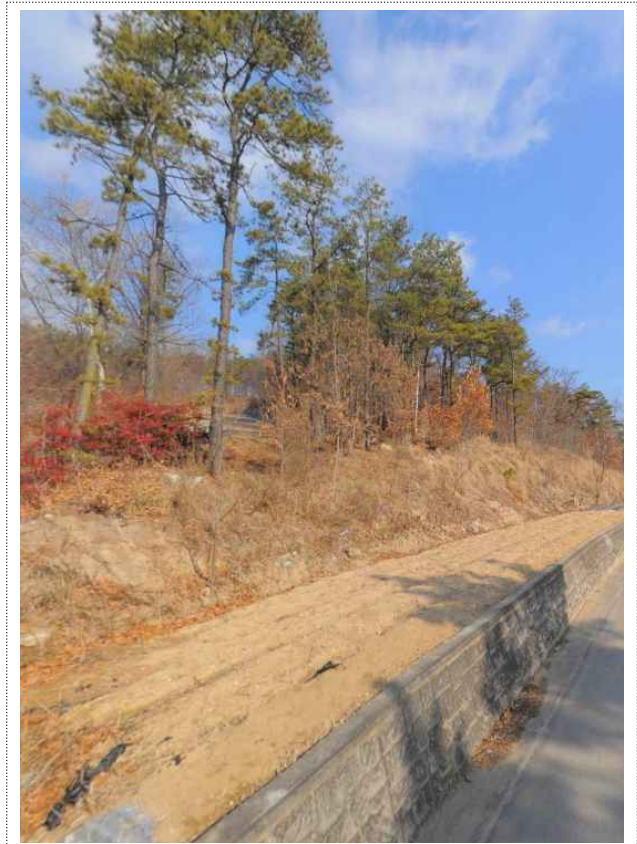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선산읍사무소, 선산초등학교 공동주택지 등 주택지 등이 입지해 있고 공원내에 충혼탑, 배수시설 등의 시설이 입지해 있음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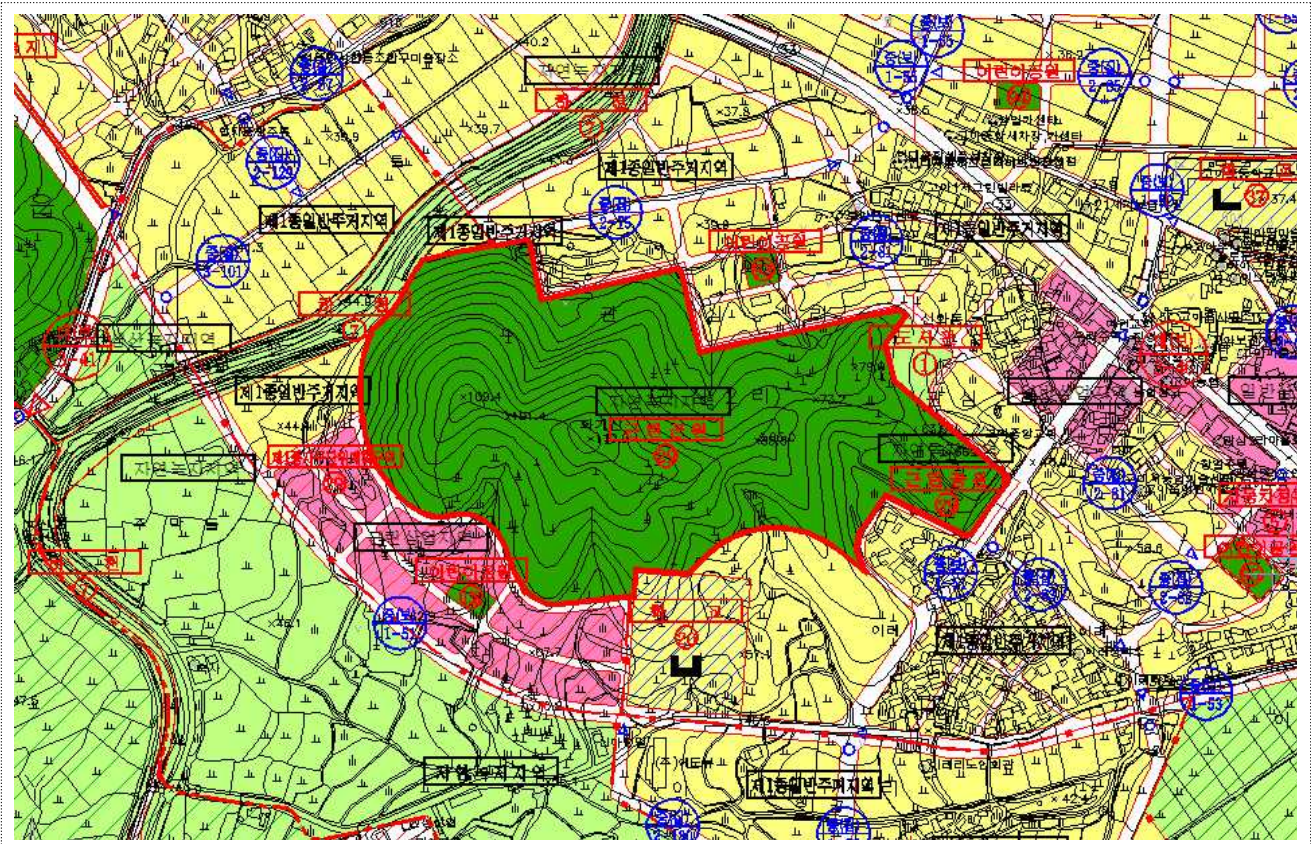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29
- 위 치 : 고아읍 이레리 산6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9	화개공원	근린 공원	고아 이레리 산6	185,500	-	185,500	경북고 3 (9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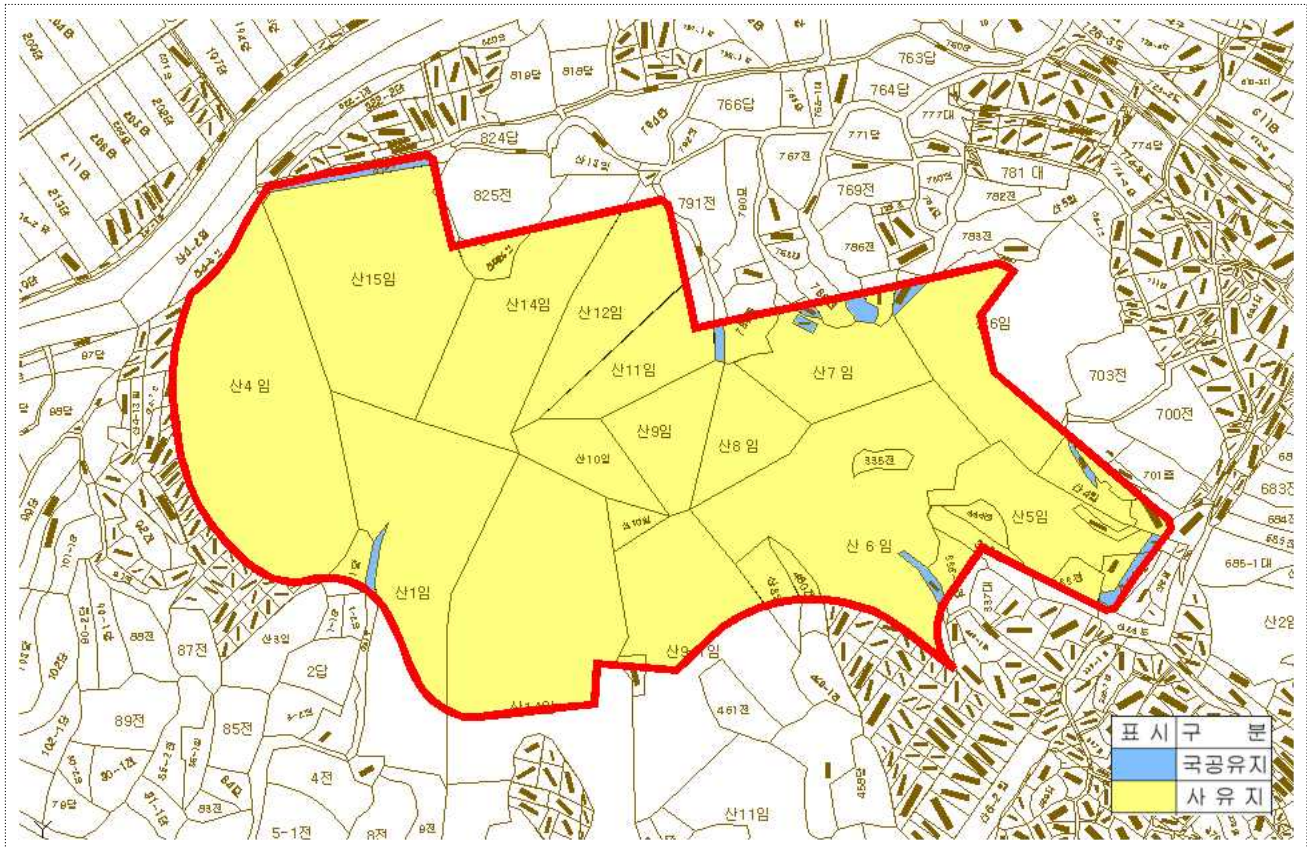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85,500m²중 국공유지는 3,240m², 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82,260m², 98.3%로 구성됨)
- 인근에 고아읍사무소, 국도33호선이 입지하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고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서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장래 주거지역이 활성화 될 때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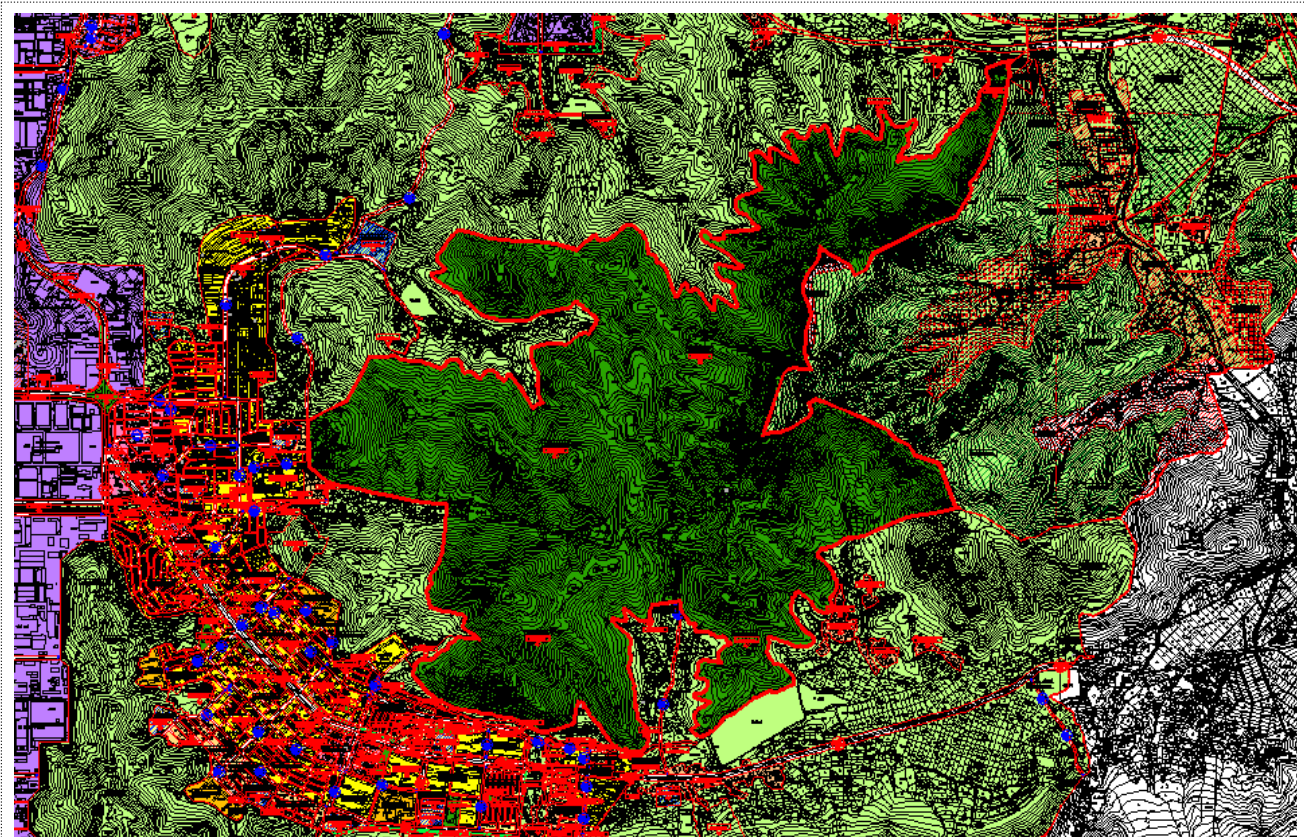
- 시설 명 : 근린공원 31
- 위 치 : 인의동 산26일원(천생산일대)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05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1	천생산 공원	근린 공원	인의동 산26일원 (천생산일대)	5,745,000	-	5,745,000	경북고 305 (9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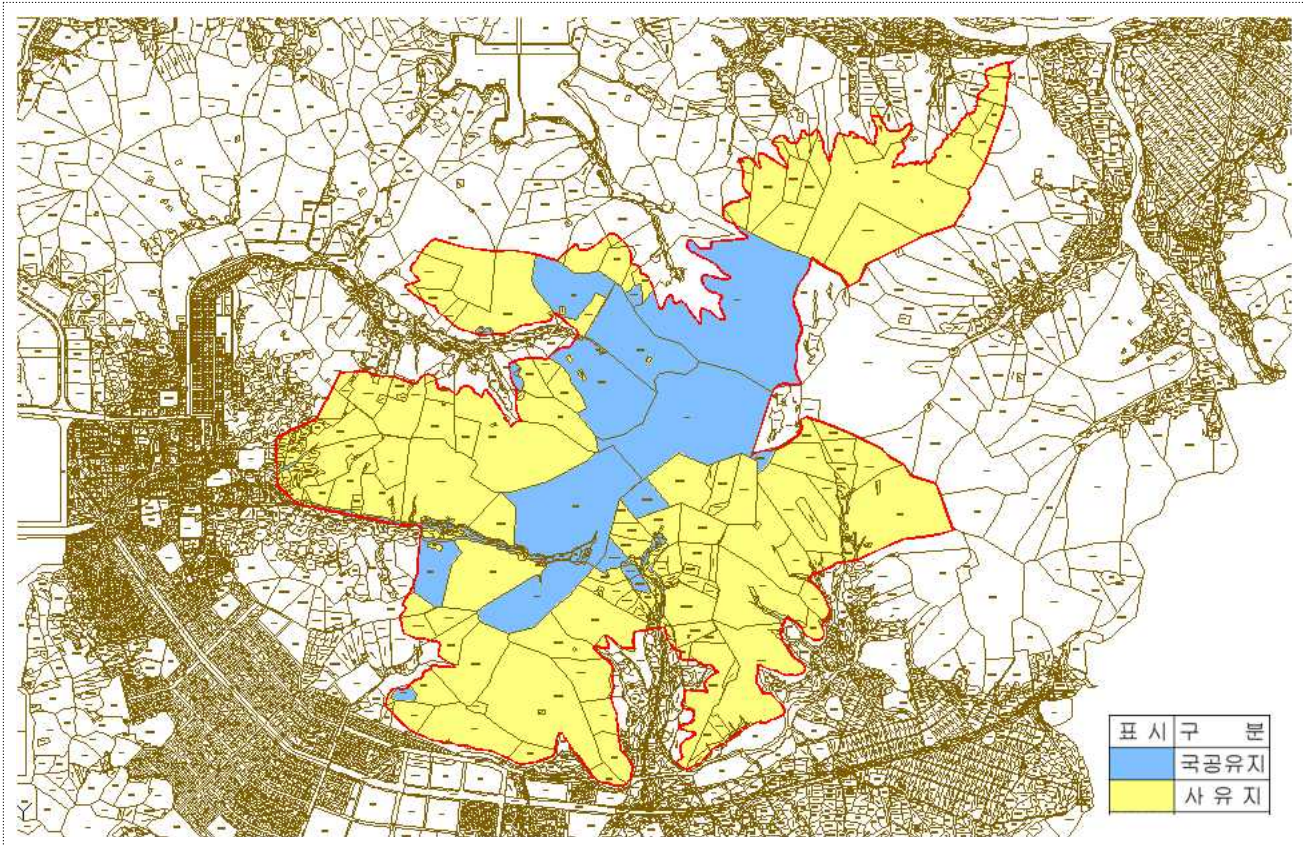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1년 구미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
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85,500m²중 국공유지는 3,240m², 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82,260m²,
98.3%로 구성됨)
- 인근에 국가산업4단지, 인동중학교, 천생산휴게소가 입지해 있고 천생산 산림욕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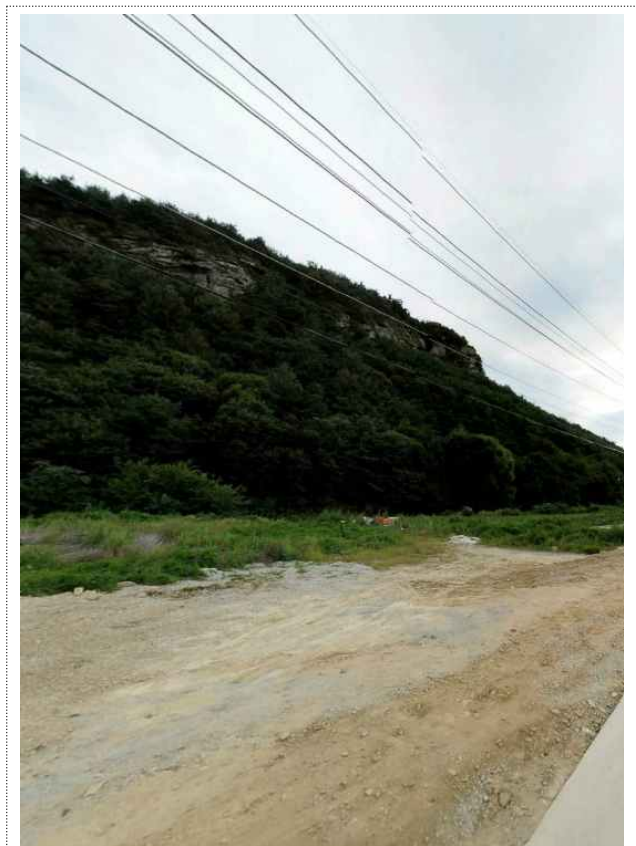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없는 곳은 2015년 10월 2일 실효 예정
- 공원내에 천생산산림욕장이 개설되어 있고 천생산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근린생활과 보전을 위해 지정된 공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어 린 이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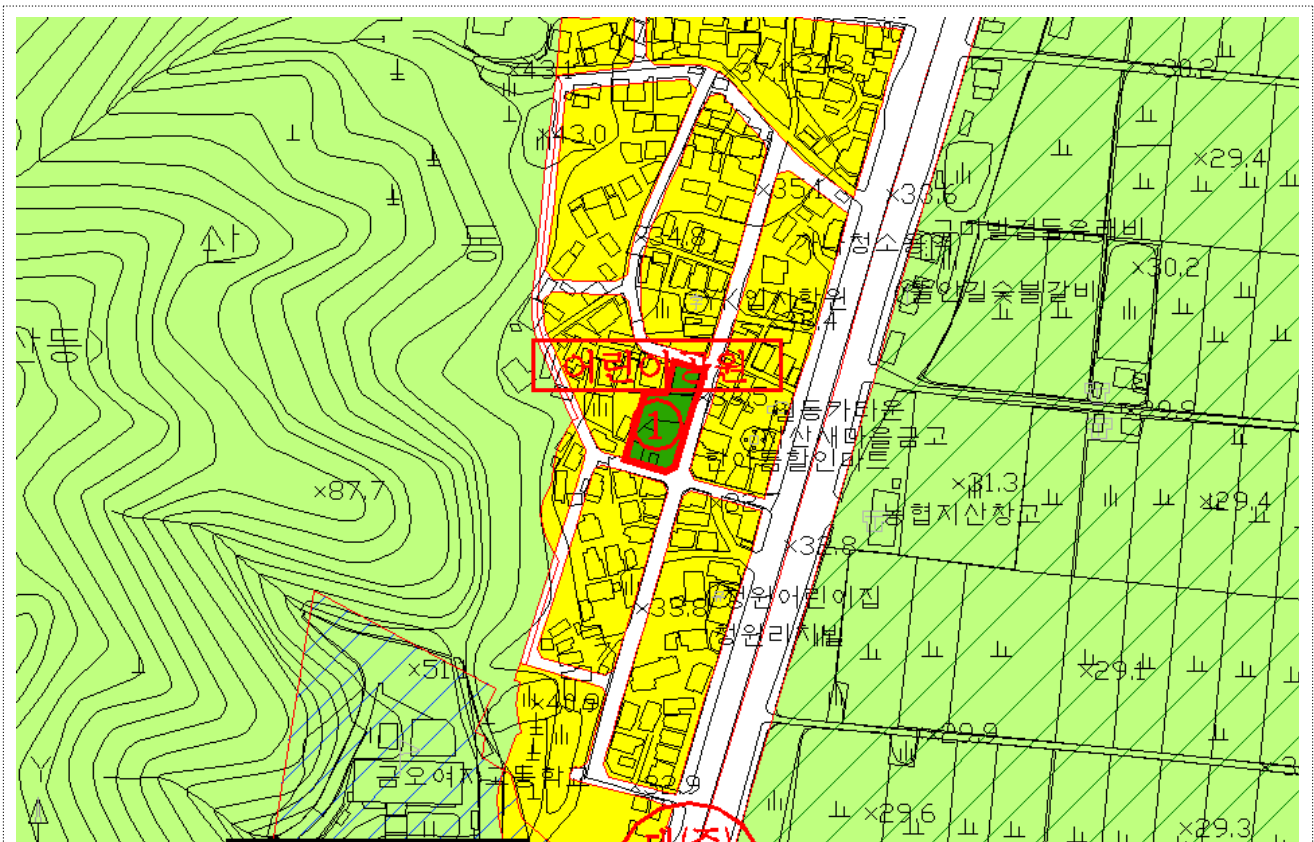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
- 위 치 : 지산동 105-4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40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	지산공원	어린이 공원	지산동 105-4일원	1,000	-	1,000	경북고 40 (87.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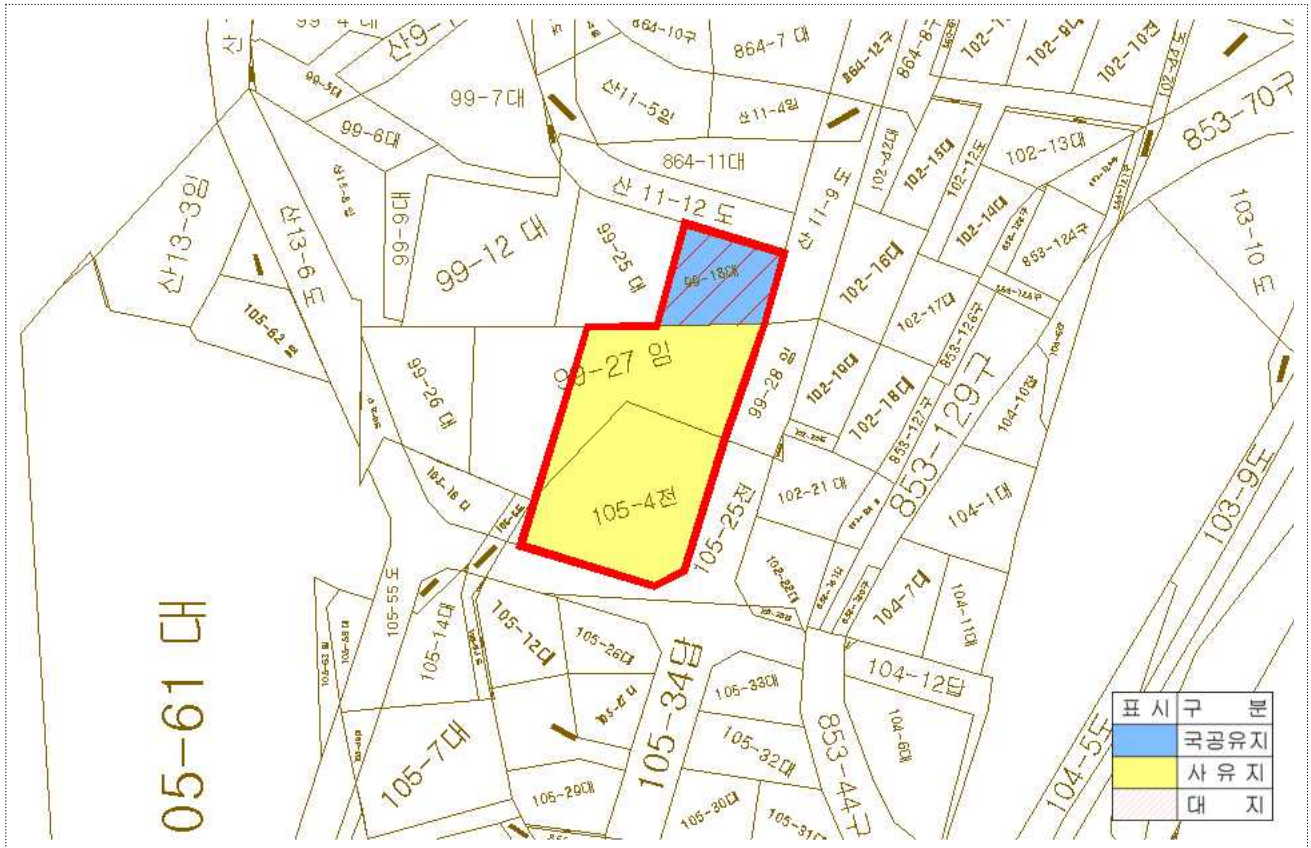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87년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6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000㎡중 국공유지는 183㎡, 18.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817㎡, 81.7%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83㎡, 18.3%로 구성됨)
- 인근에 금오여자고등학교, 지산초등학교 및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개설 및 결정된 다른 어린이공원은 없고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노후건축물과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주택가로 형성된 주변에 개설 및 결정된 다른 어린이공원은 없으며 대상지는 노후건축물과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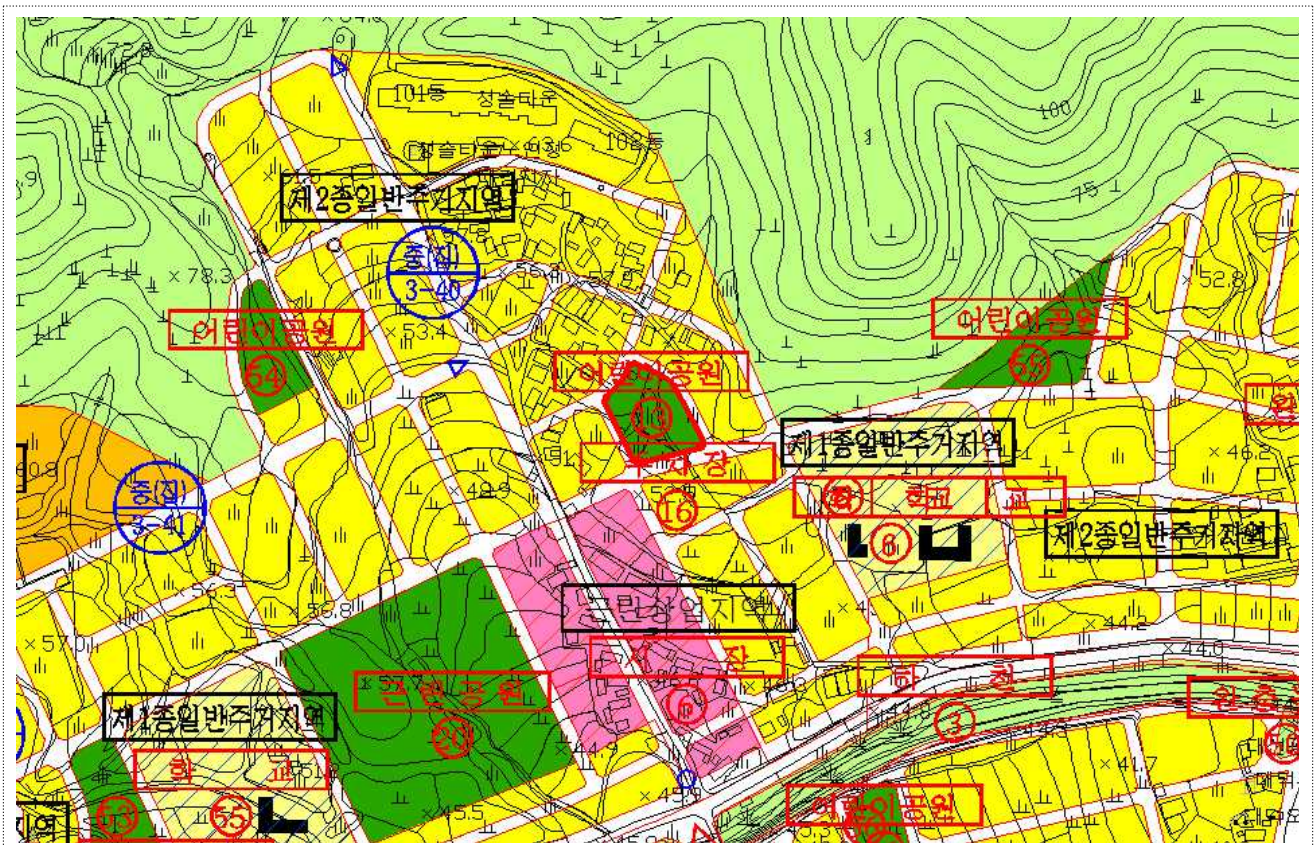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3
- 위 치 : 고아읍 문성리 54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3	고아 제2공원	어린이 공원	문성동 54일원	2,450	-	2,450	경북고 349 (80.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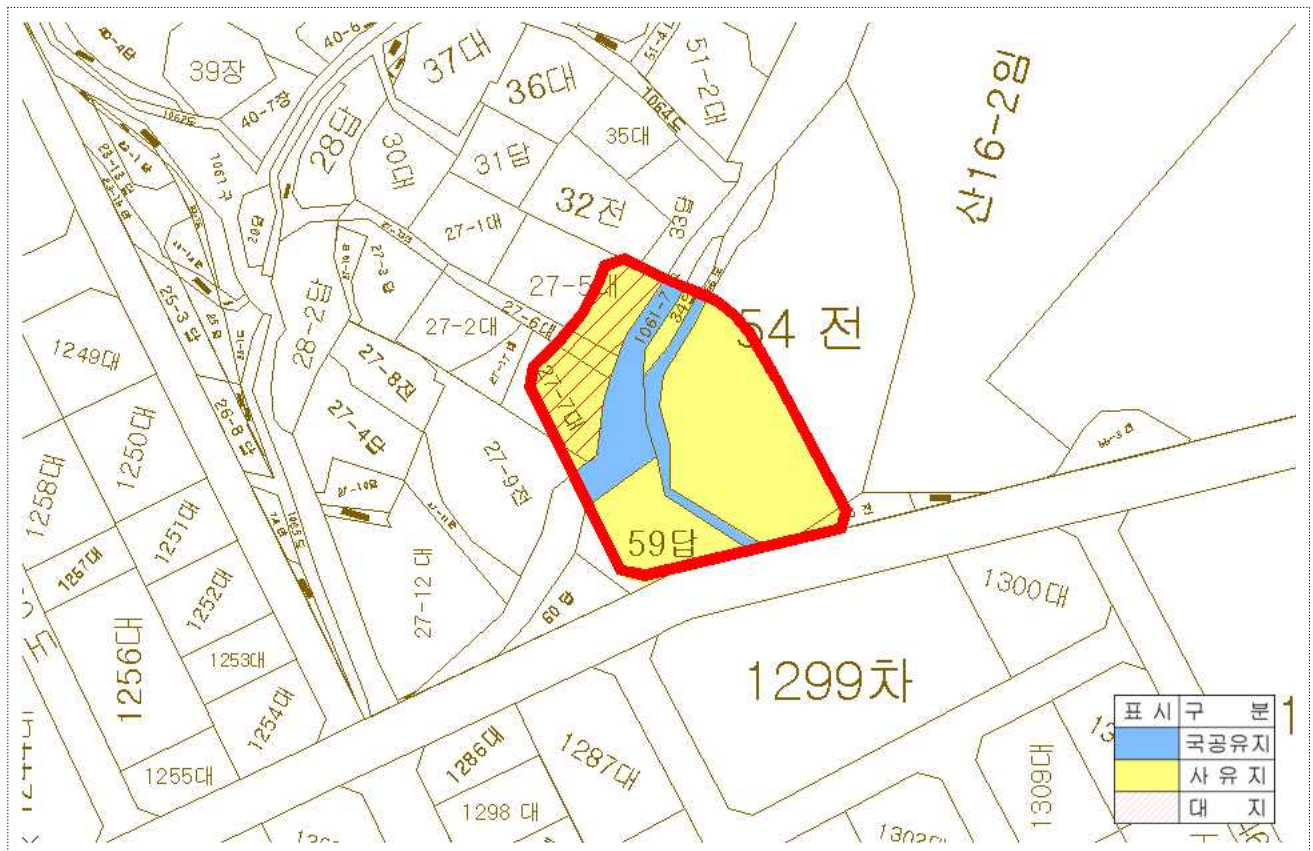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80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33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2,450㎡중 국공유지는 482㎡, 19.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968㎡, 80.3%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460㎡, 18.8%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으로서 현재 도로 등의 기반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으로서 현재 도로 등의 기반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결정되어 있거나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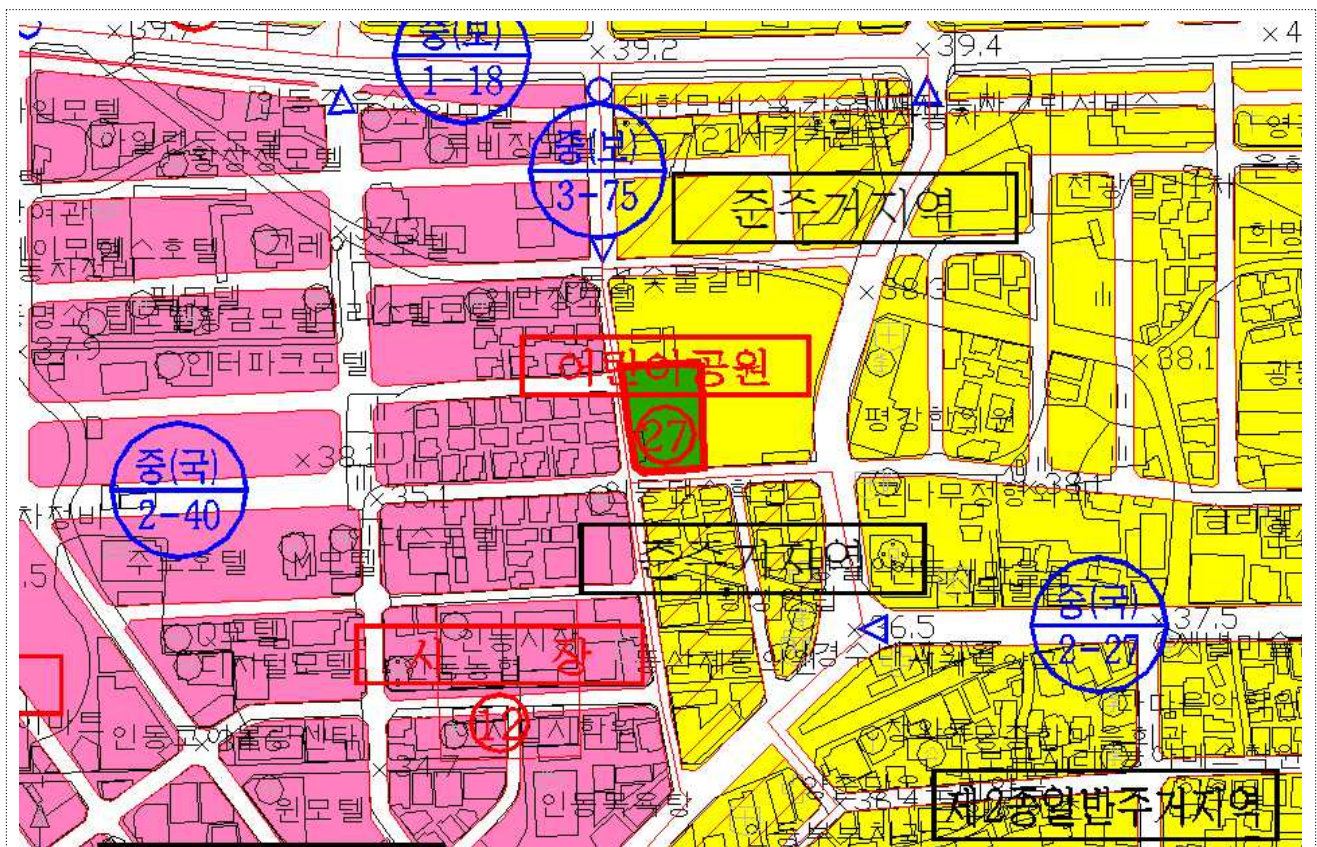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27
- 위 치 : 황상동 336-7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42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7	인동 제1공원	어린이 공원	황상동 336-1일원	1,500	-	1,500	경북고 42 (78.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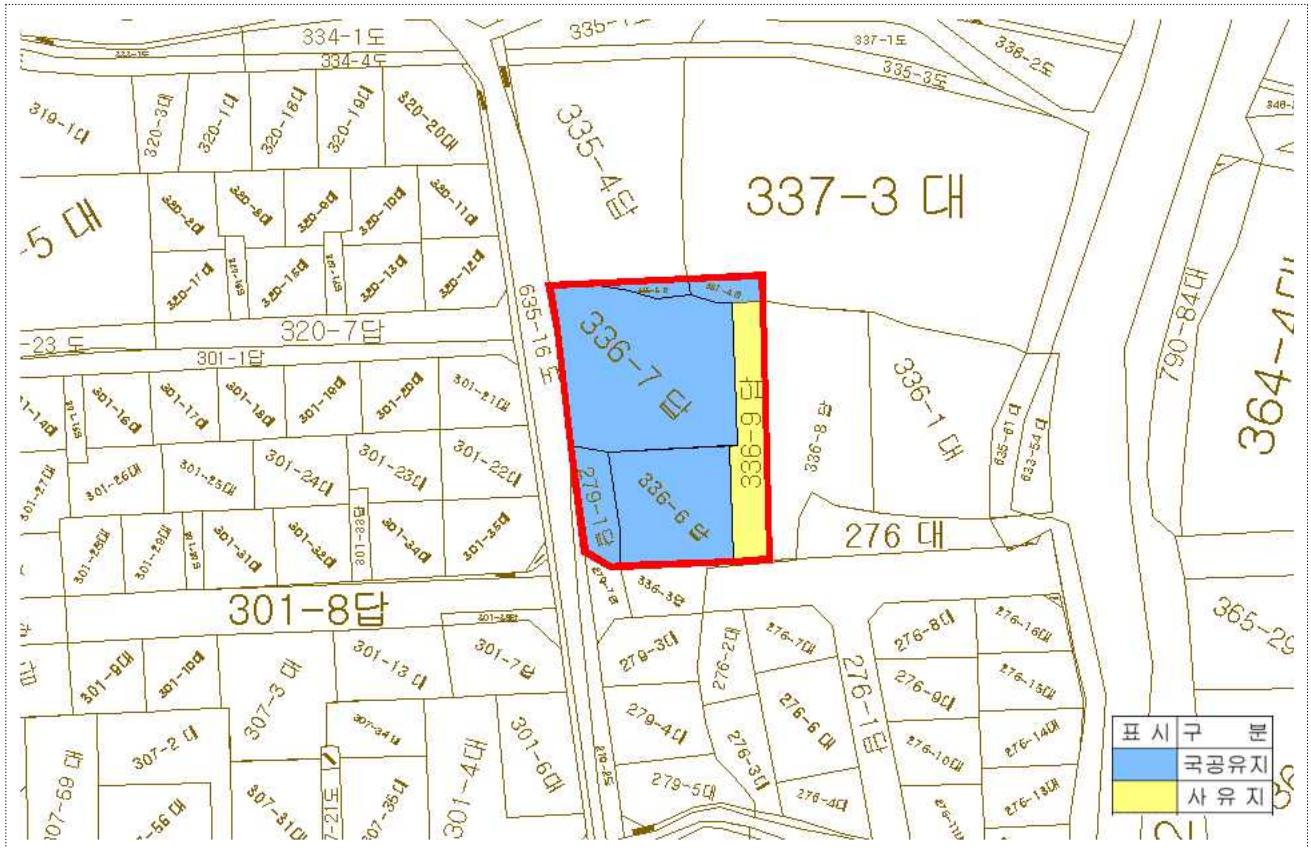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8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35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1,270㎡, 8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230㎡, 15.3%로 구성됨)
- 인근에 인동초등학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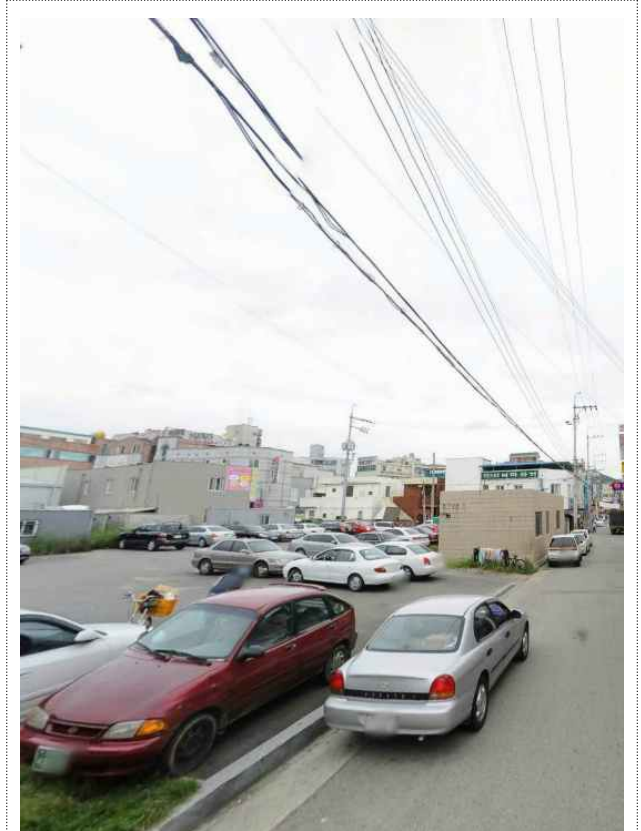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주거지역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으로서 인근 500m내에 결정 및 조성된 어린이공원 4개소가 결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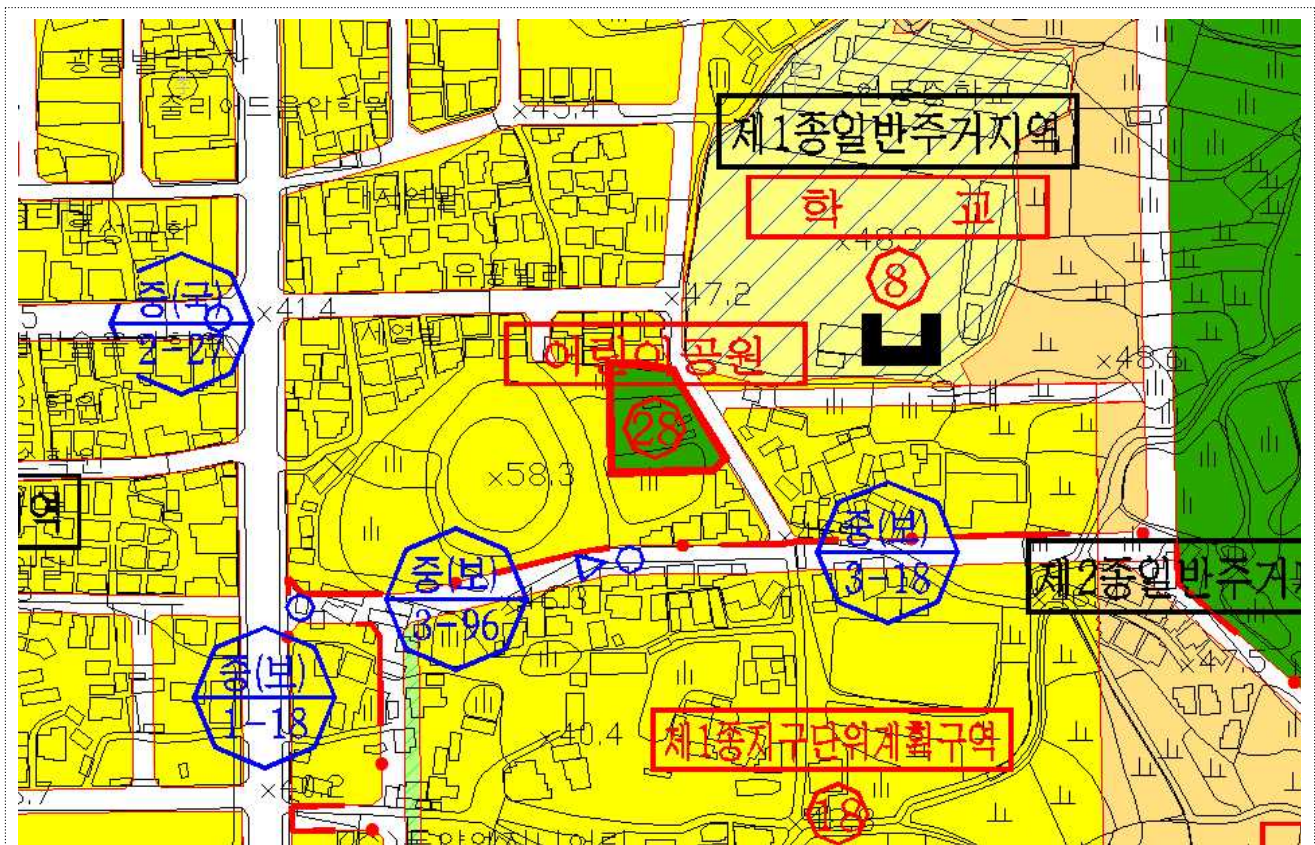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28
- 위 치 : 인의동 507-1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42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8	인동 제2공원	어린이 공원	인의동 산505일원	1,670	-	1,670	경북고 42 (78.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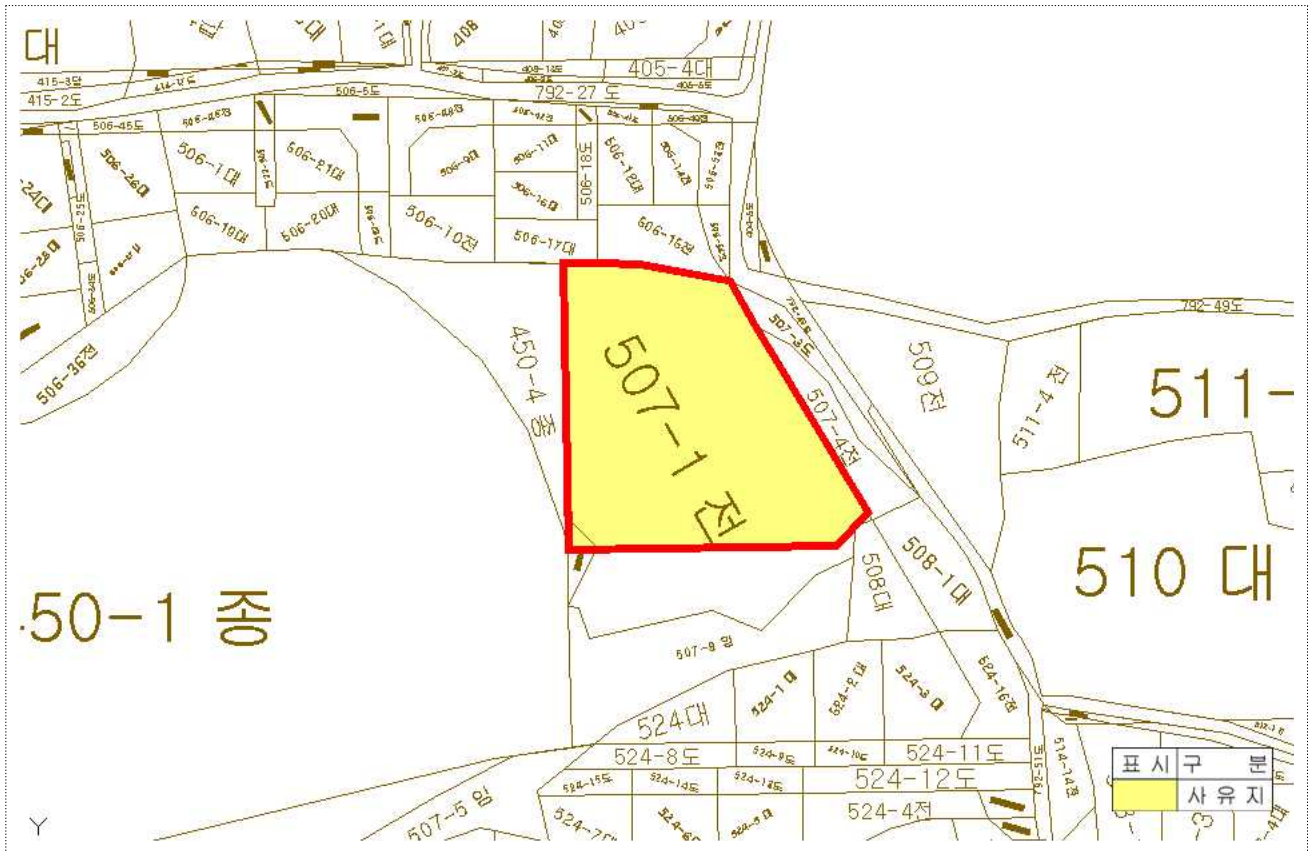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78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35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670㎡중 사유지가 1,670㎡, 100.0%로 구성됨)
- 인근에 인동중학교가 입지해 있고 새로 개설된 향교와 연접해 있으며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와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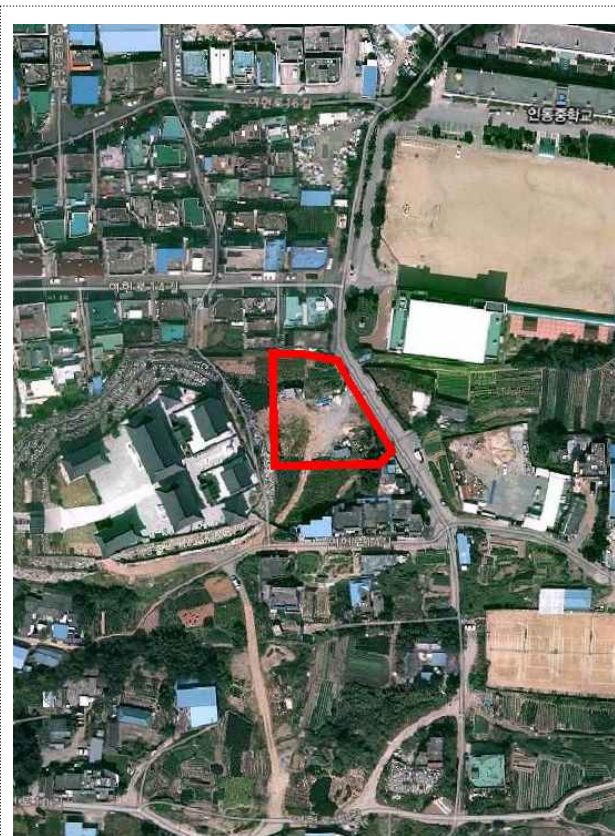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인동중학교가 입지해 있고 기존주택지와 경작지로 형성된 지역에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와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기존 주거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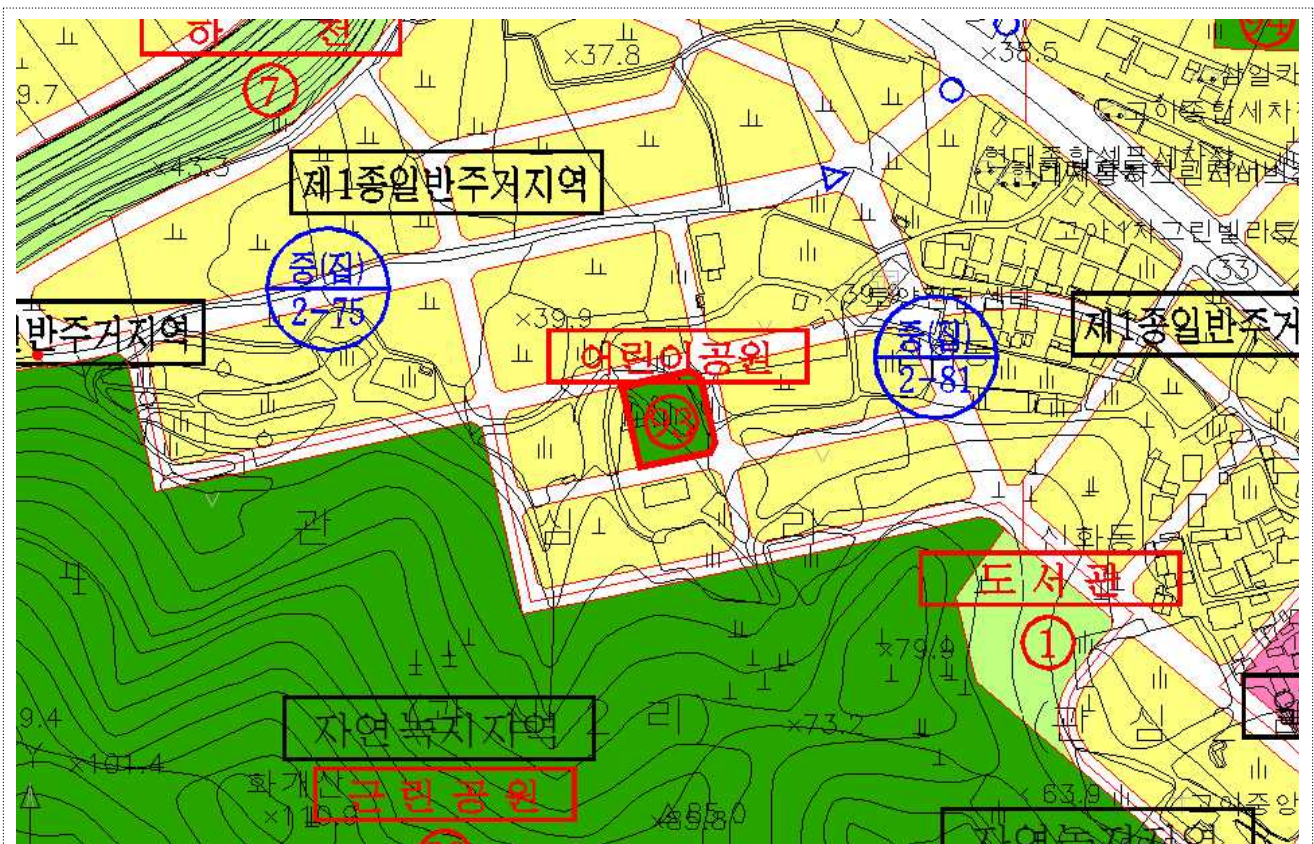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3
- 위 치 : 고아읍 관심리 767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3	관심 제1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관심 767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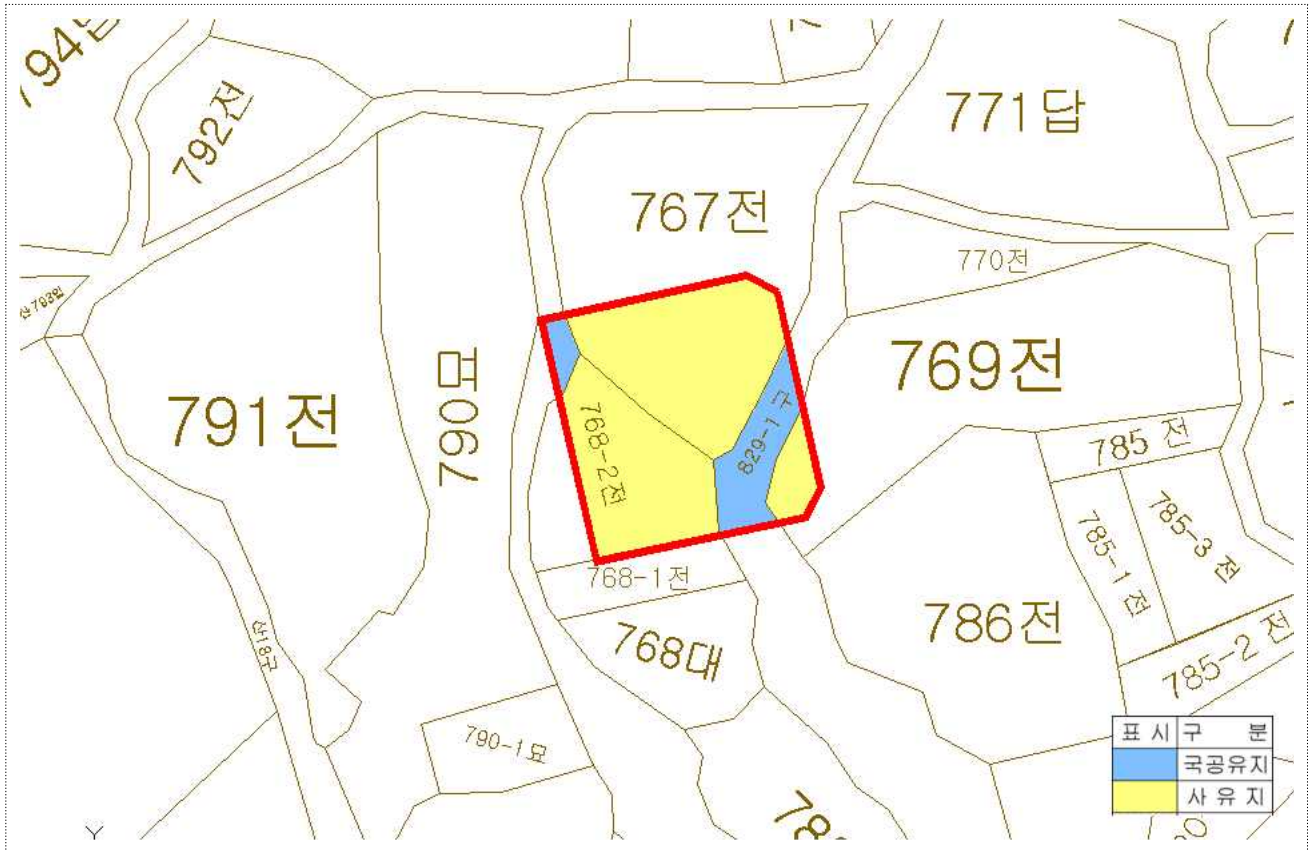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255㎡, 17.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245㎡, 83.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국도 33호선, 고아읍사무소, 고아초등학교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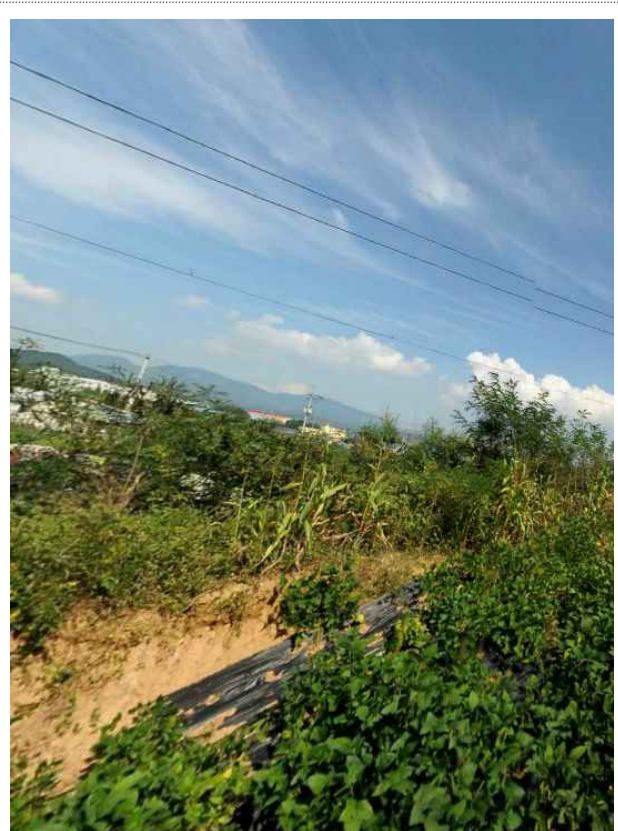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고아읍사무소, 고아초등학교가 입지해 있고 미개설된 근린공원과 연접해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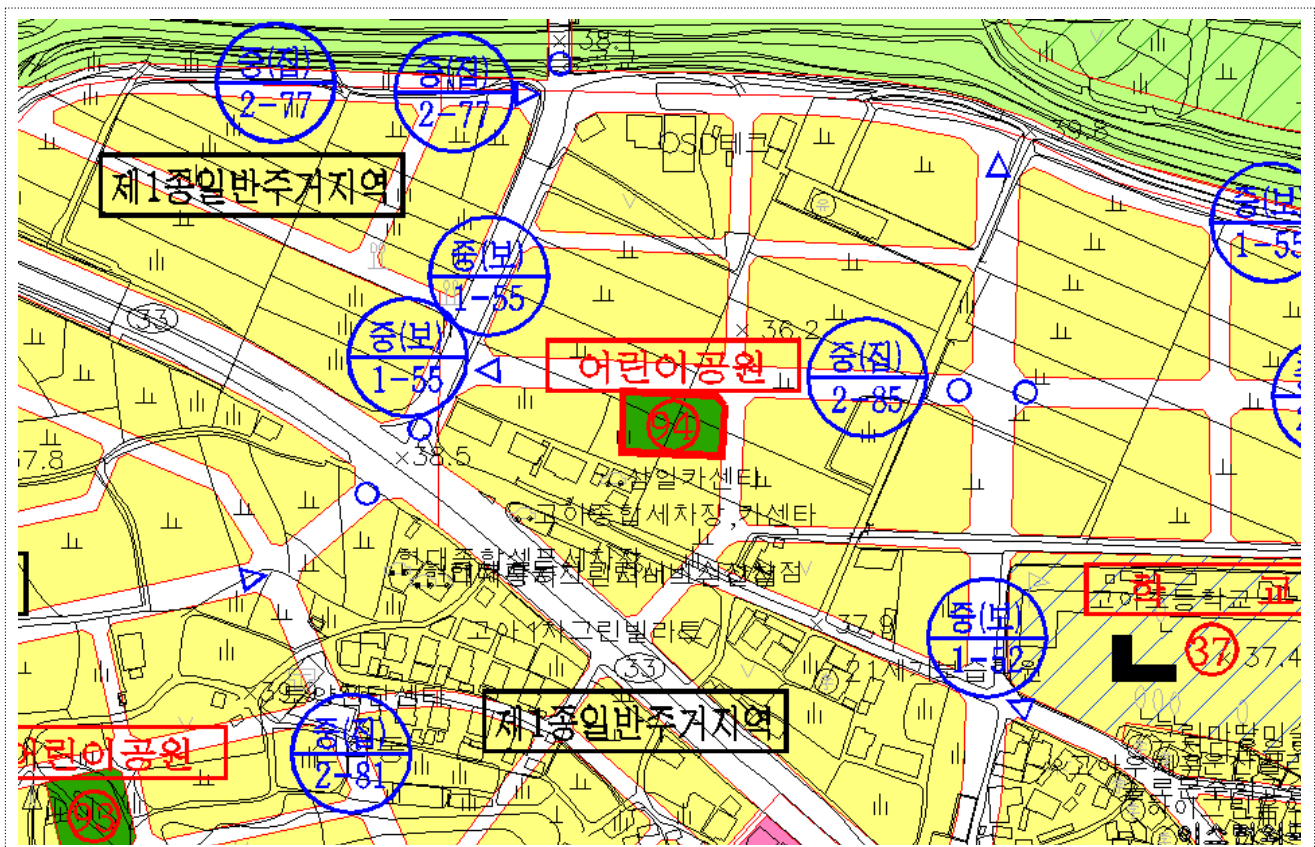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4
- 위 치 : 고아읍 관심리 747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4	관심 제2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관심 747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86㎡, 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414㎡, 94.3%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고아읍사무소, 고아농공단지, 고아초등학교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고아읍사무소, 고아초등학교, 고아농공단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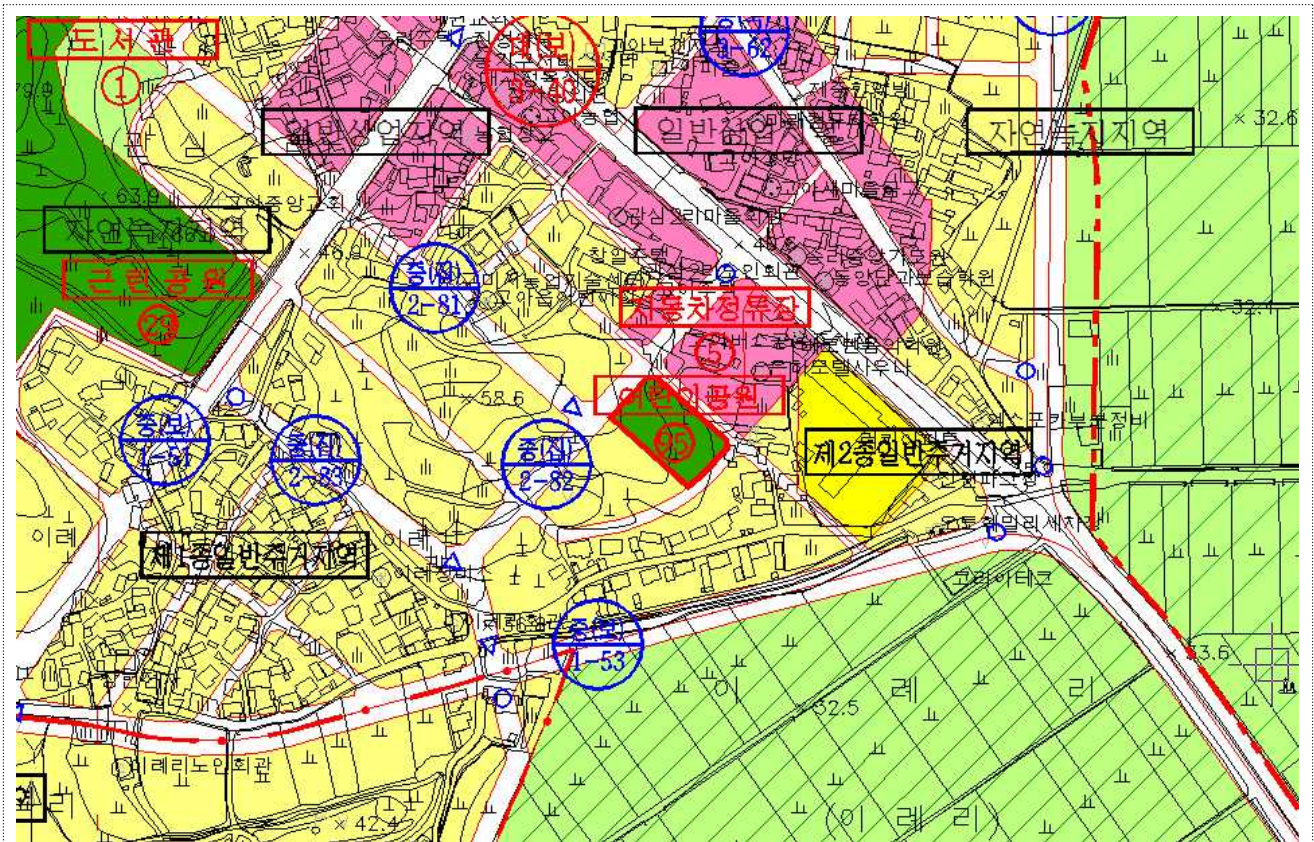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5
- 위 치 : 고아읍 이레리 산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5	이레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이레 산1일원	2,500	-	2,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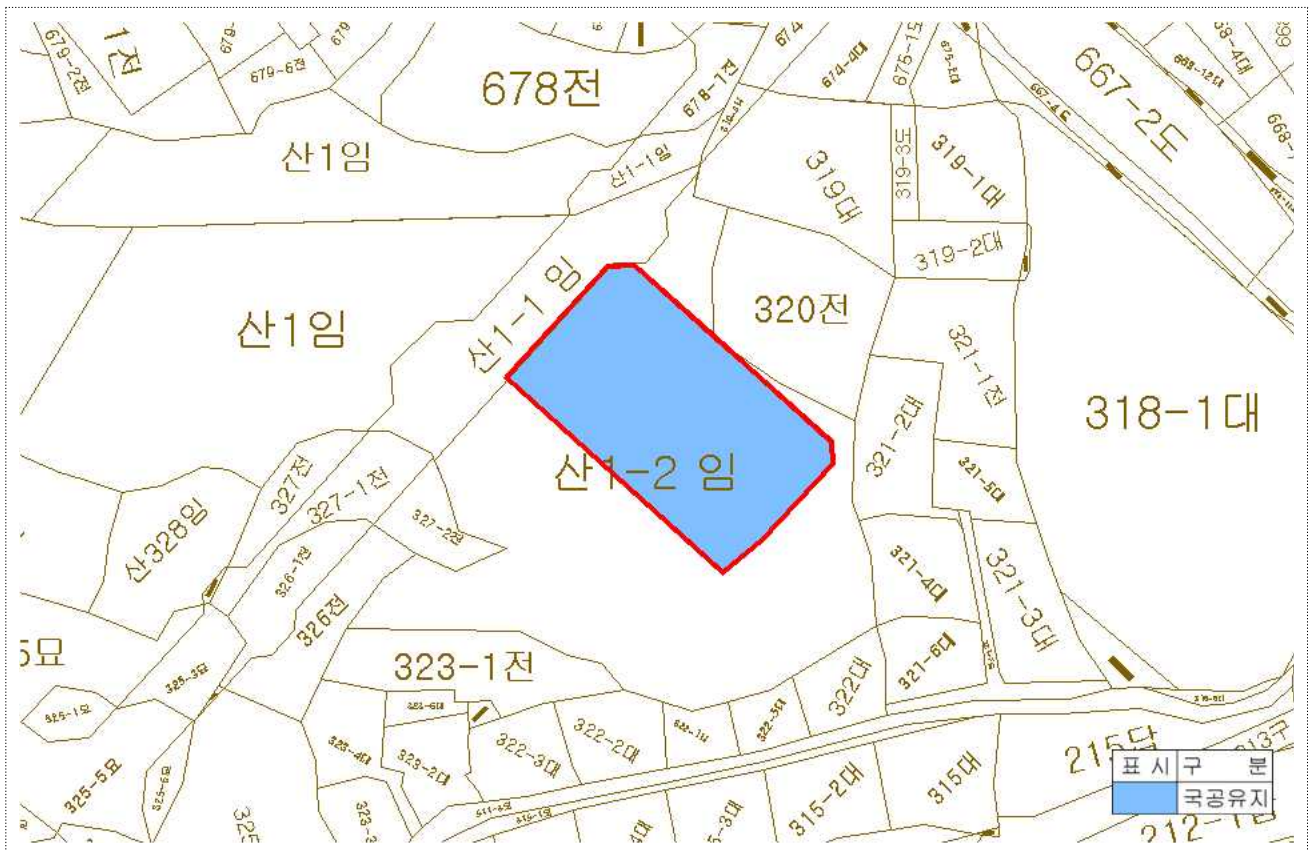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2,500㎡중 국공유지가 2,500㎡, 100.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여객버스터미널, 고아읍사무소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고아읍사무소, 여객버스터미널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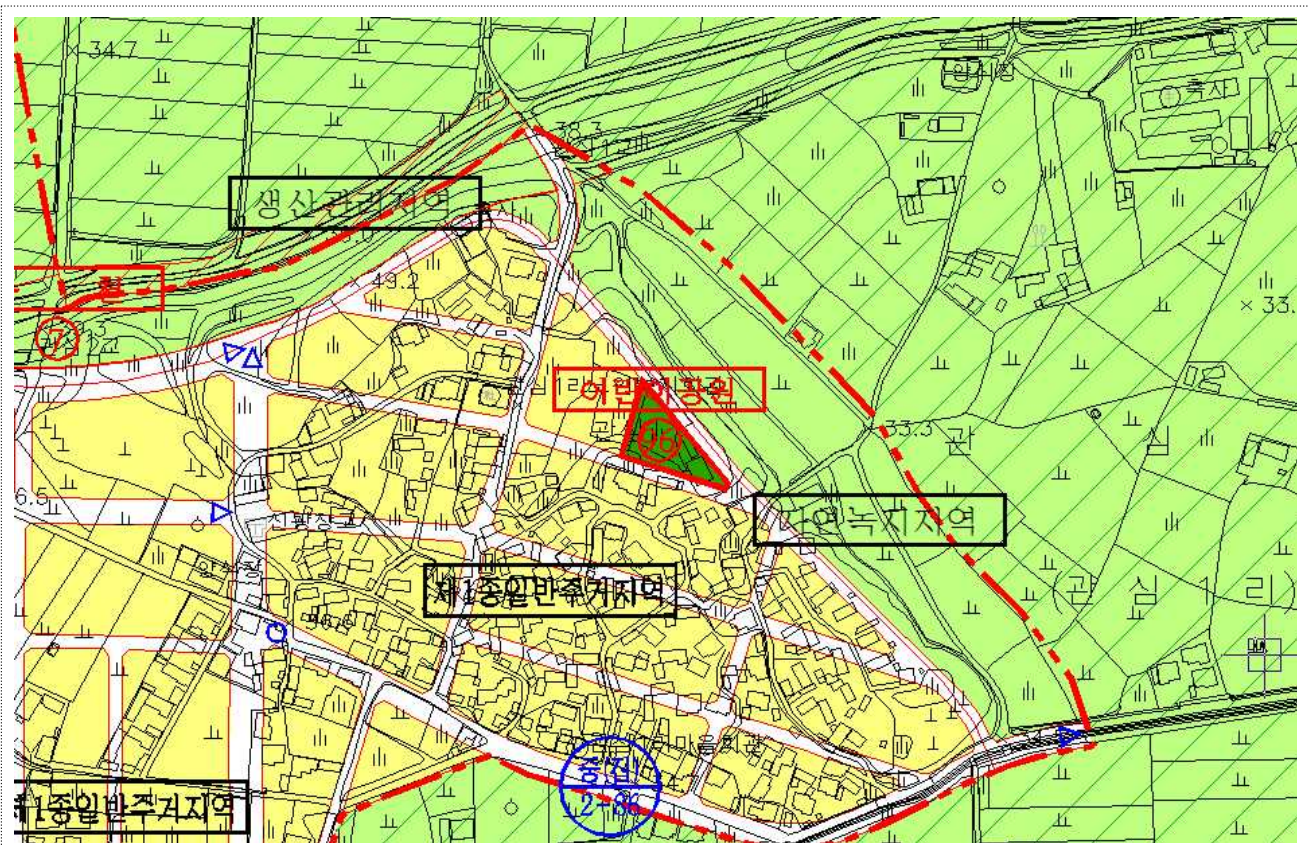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6
- 위 치 : 고아읍 관심리 417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6	관심 제3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관심 417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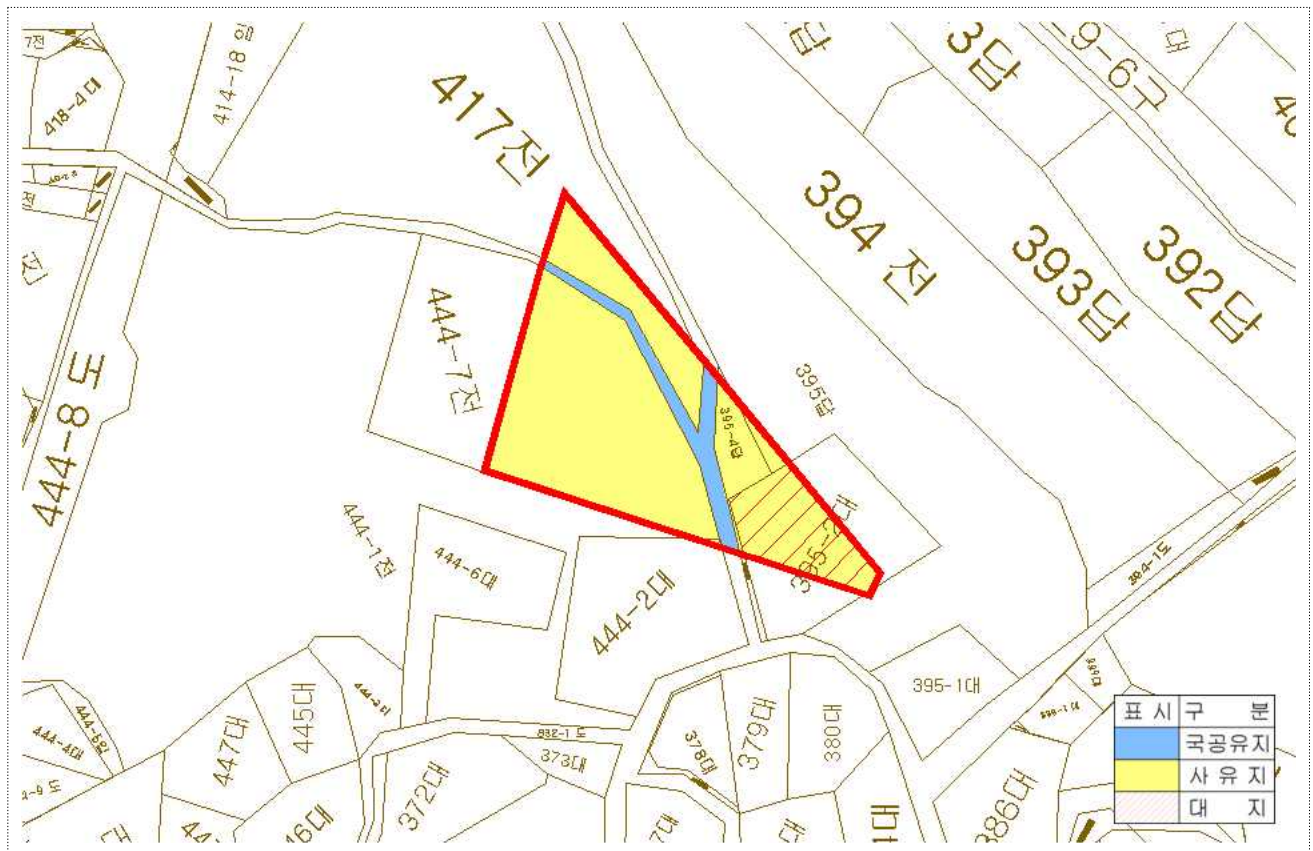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139㎡, 9.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361㎡, 90.7%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241㎡, 16.1%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대망천, 농가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일부 해당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대망천, 농가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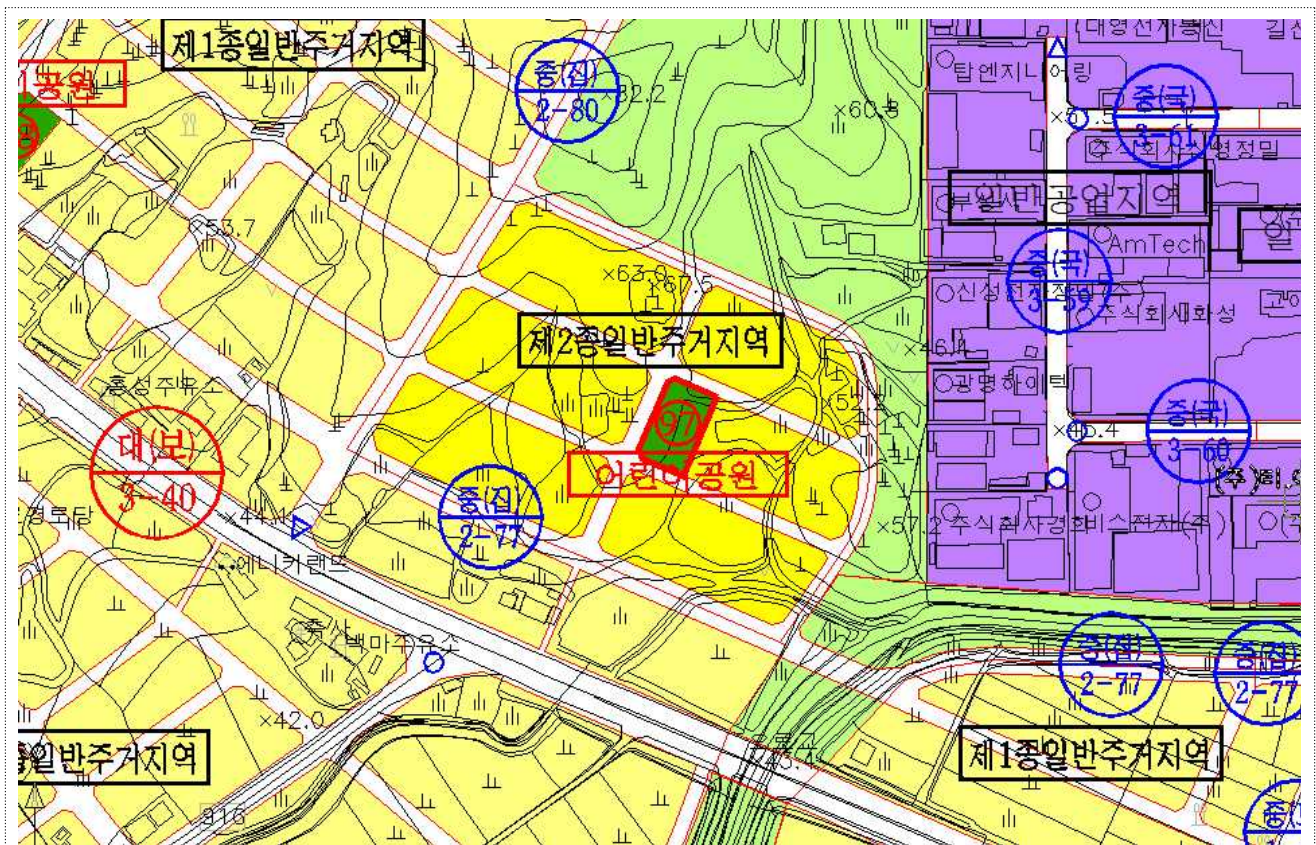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7
- 위 치 : 고아읍 오로리 79-3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7	오로 제1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오로 산6-9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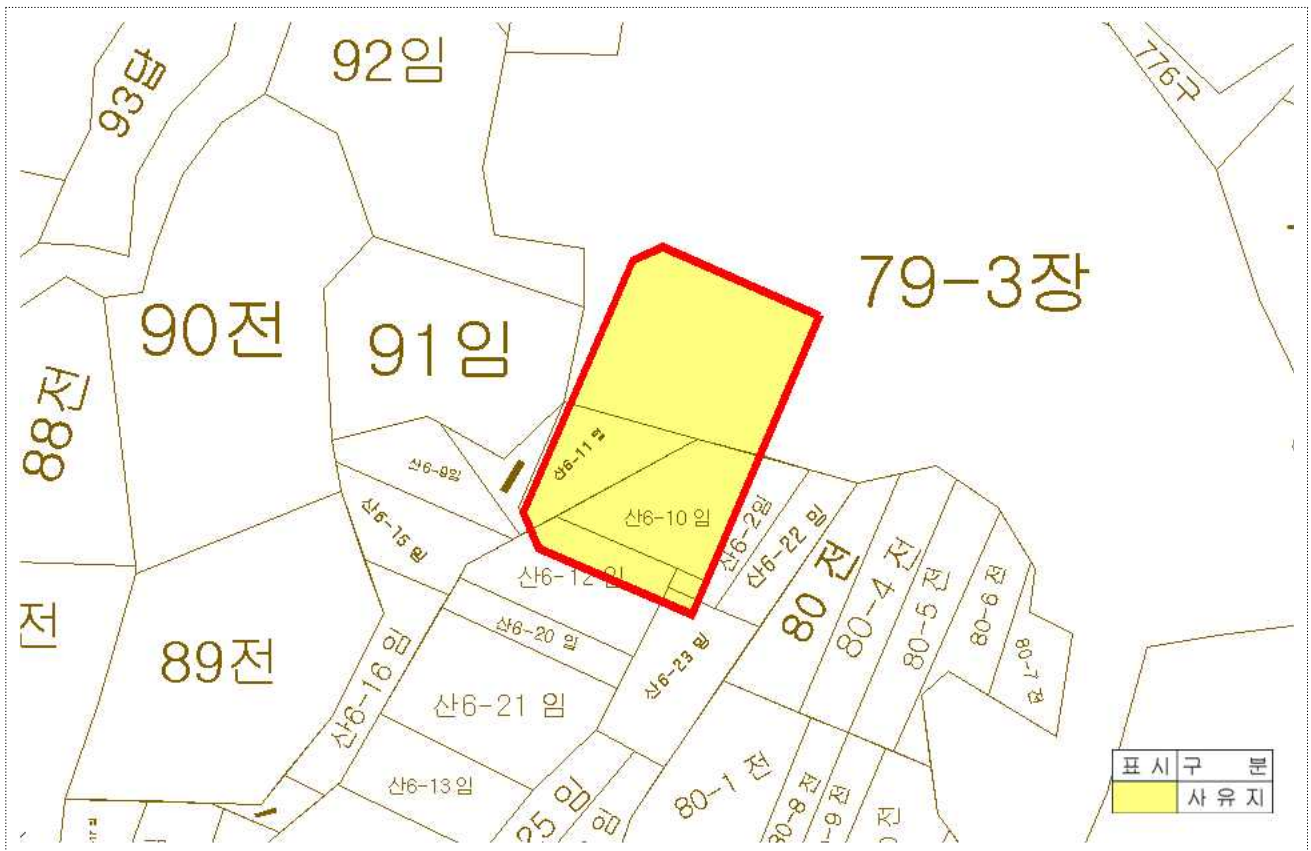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사유지가 1,500㎡, 100.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고아농공단지, 국도33호선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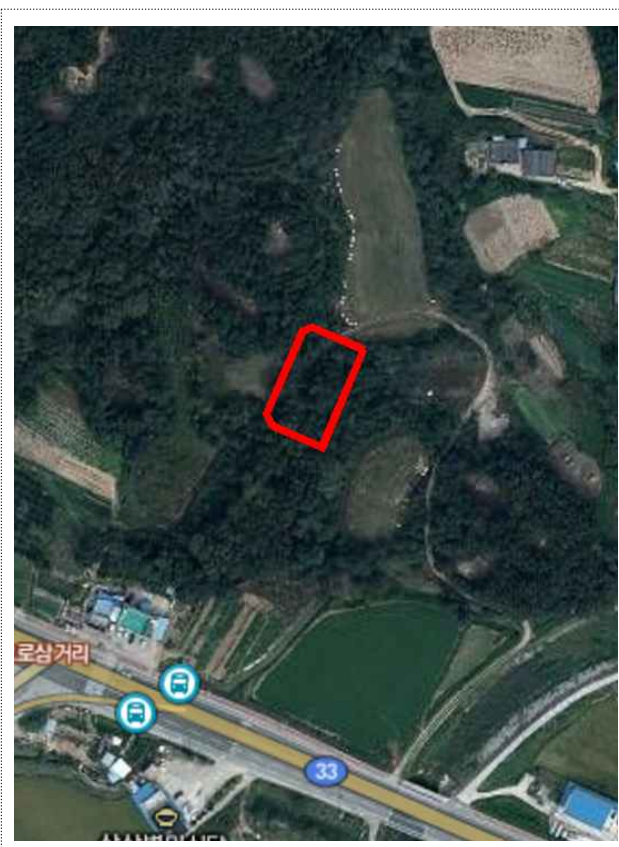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고아농공단지, 국도33호선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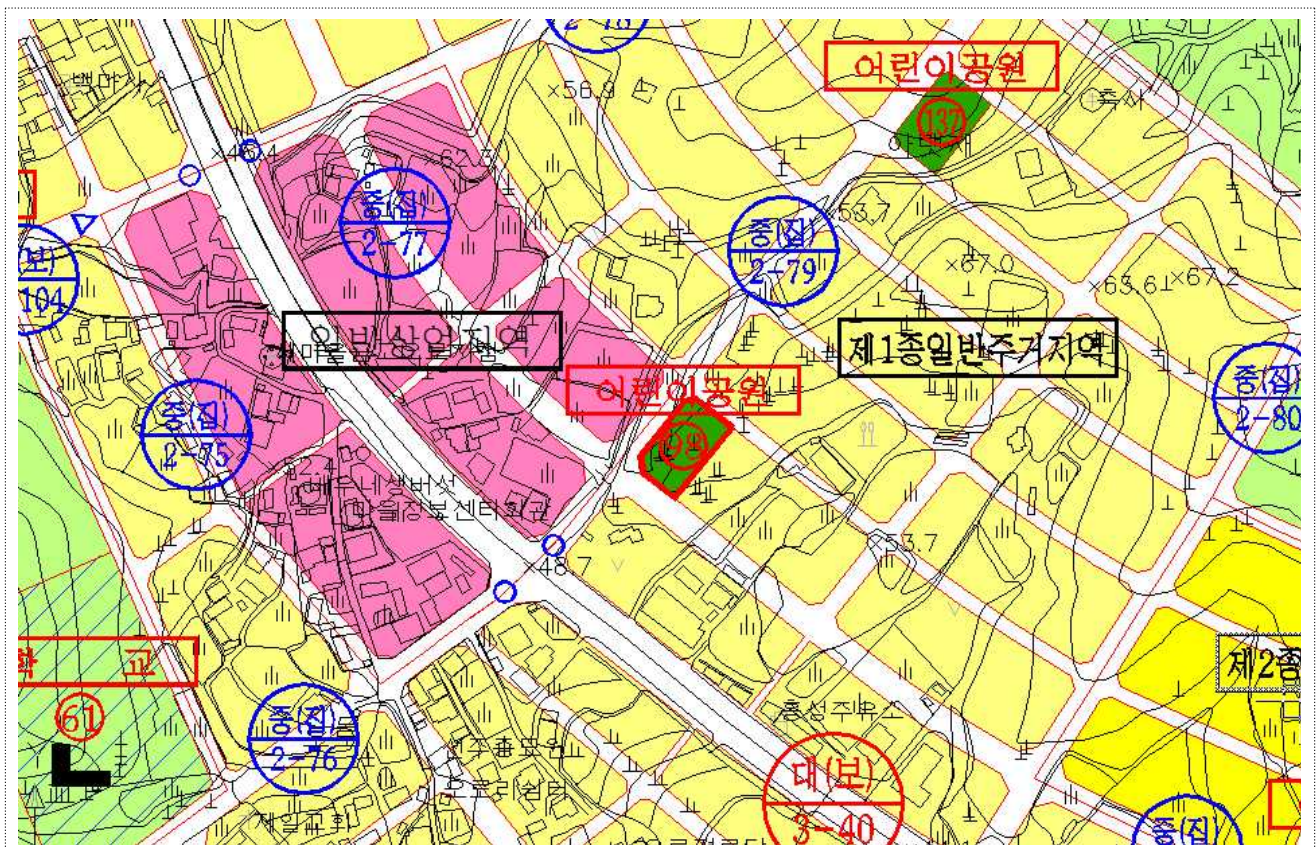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8
- 위 치 : 고아읍 오로리 359-6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8	오로 제2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오로 359-6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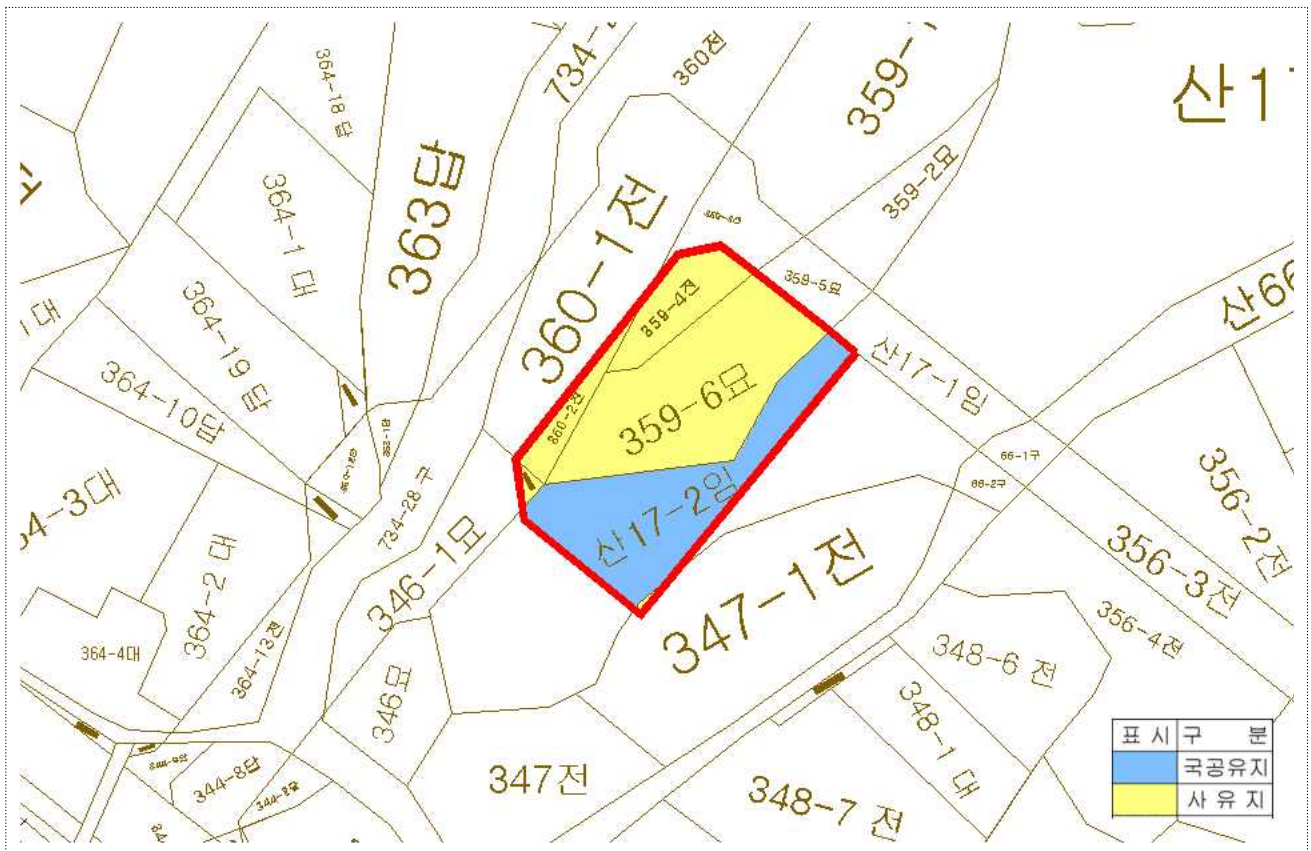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562㎡, 37.4%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938㎡, 62.6%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선산제일병원, 고아농공단지, 국도33호선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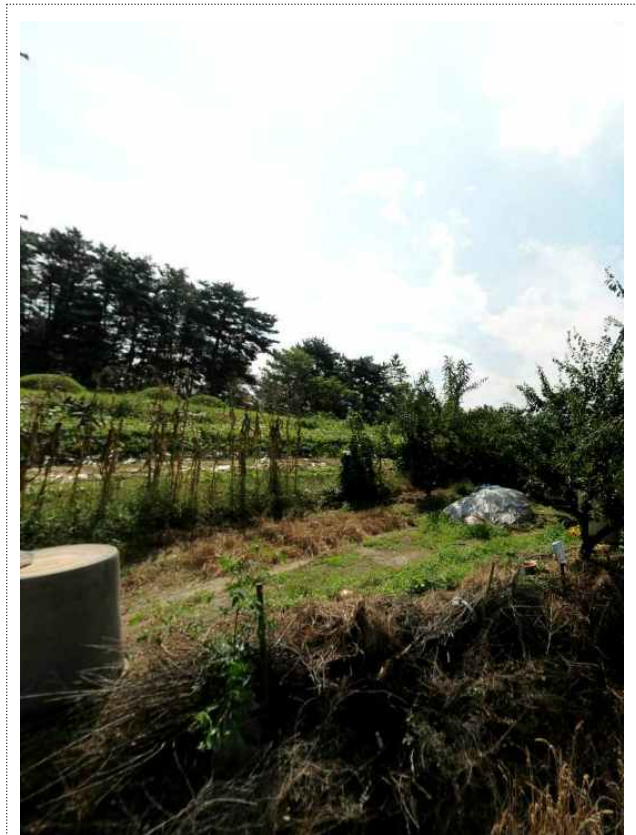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선산제일병원, 고아농공단지, 국도33호선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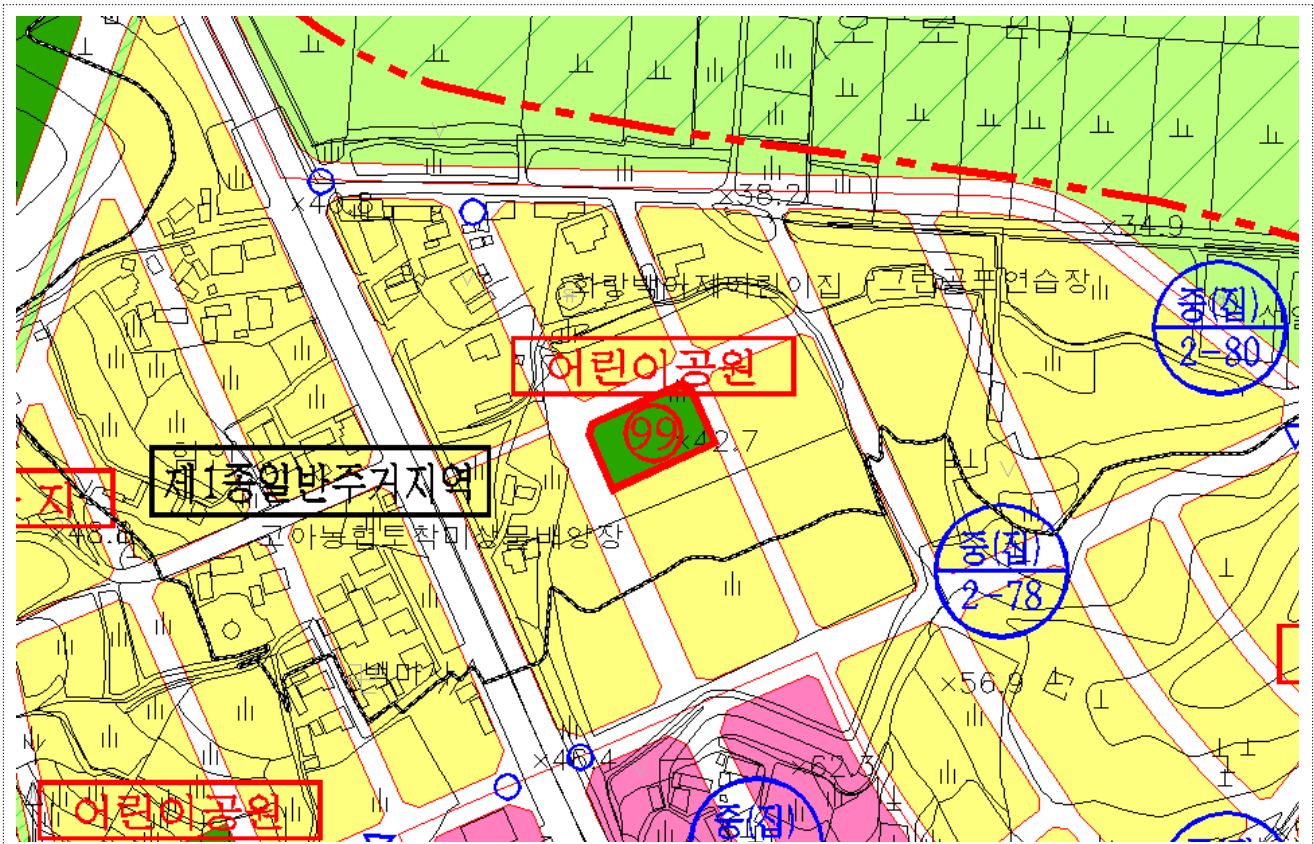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99
- 위 치 : 고아읍 오로리 산20-3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9	오로 제3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오로 산20-3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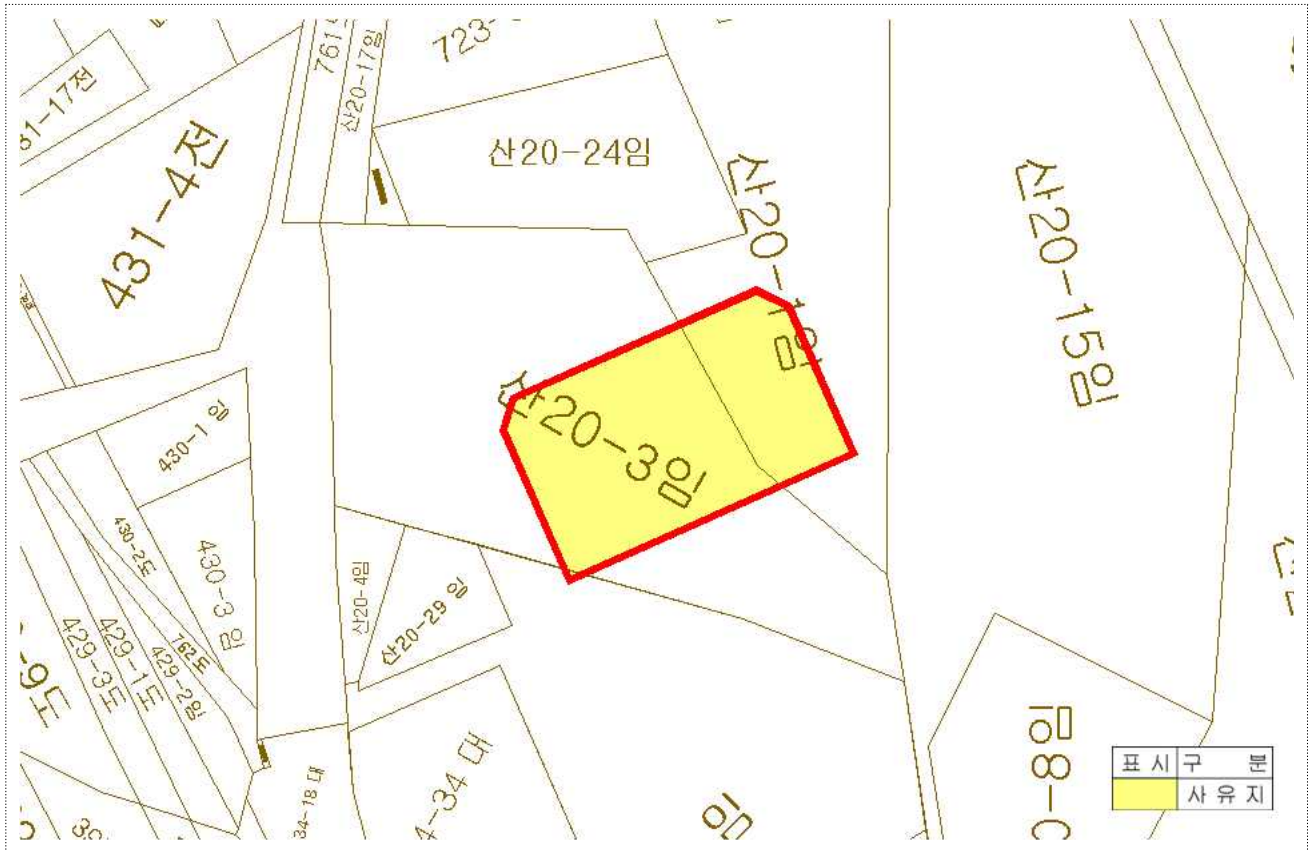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사유지가 1,500㎡, 100.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국도33호선,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국도33호선,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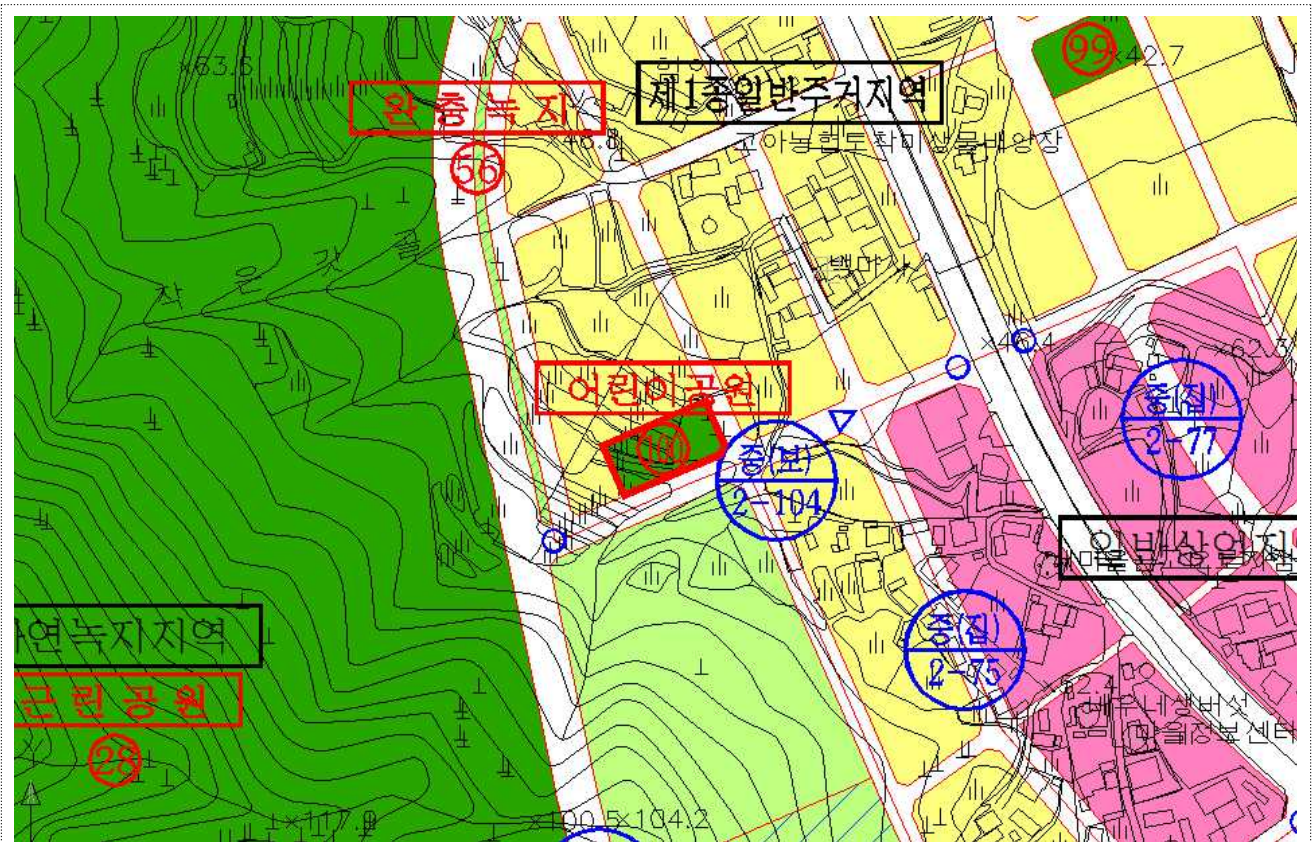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00
- 위 치 : 고아읍 오로리 402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0	오로 제4공원	어린이 공원	고아 오로 402일원	1,500	-	1,500	경북고 3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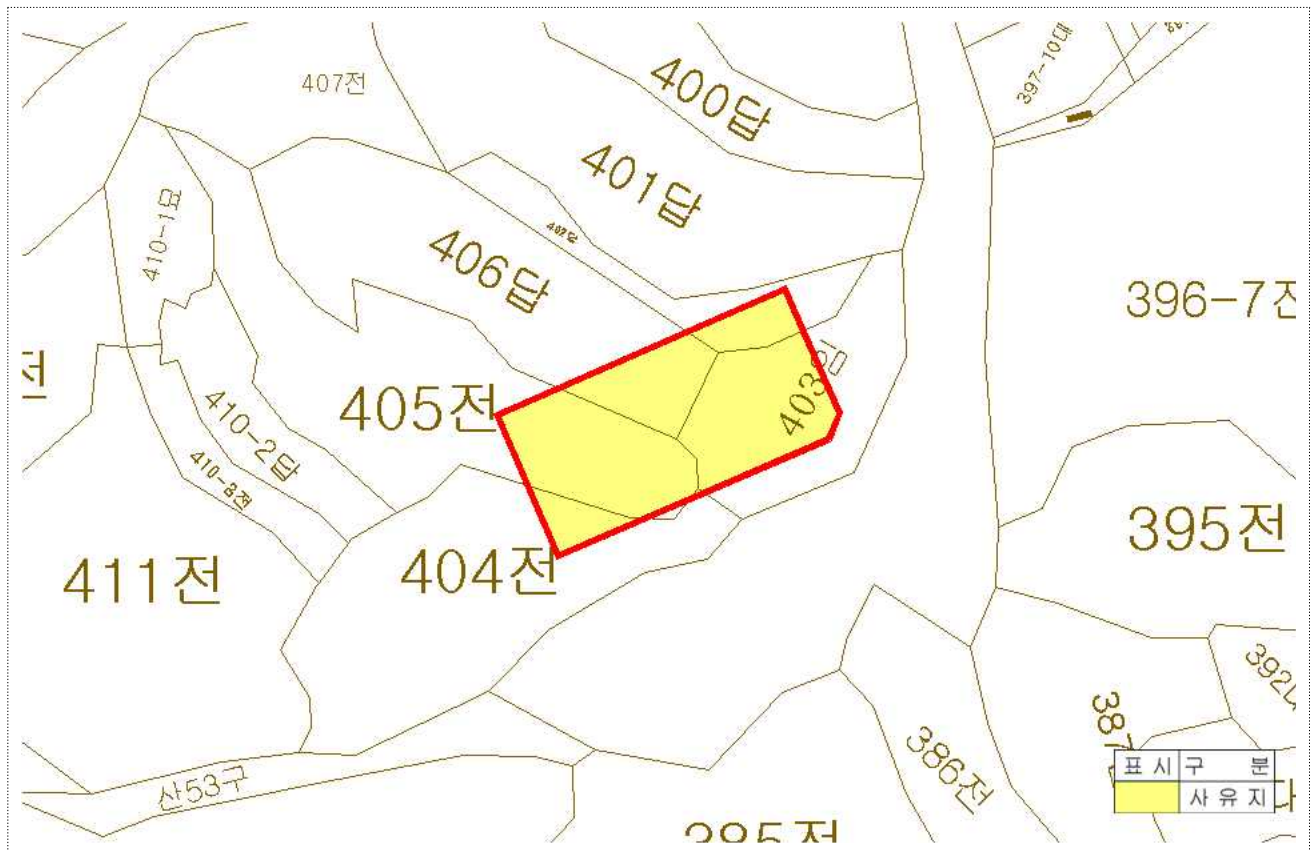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4년 고아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9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사유지가 1,500㎡, 100.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국도33호선,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와 분묘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국도33호선,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와 분묘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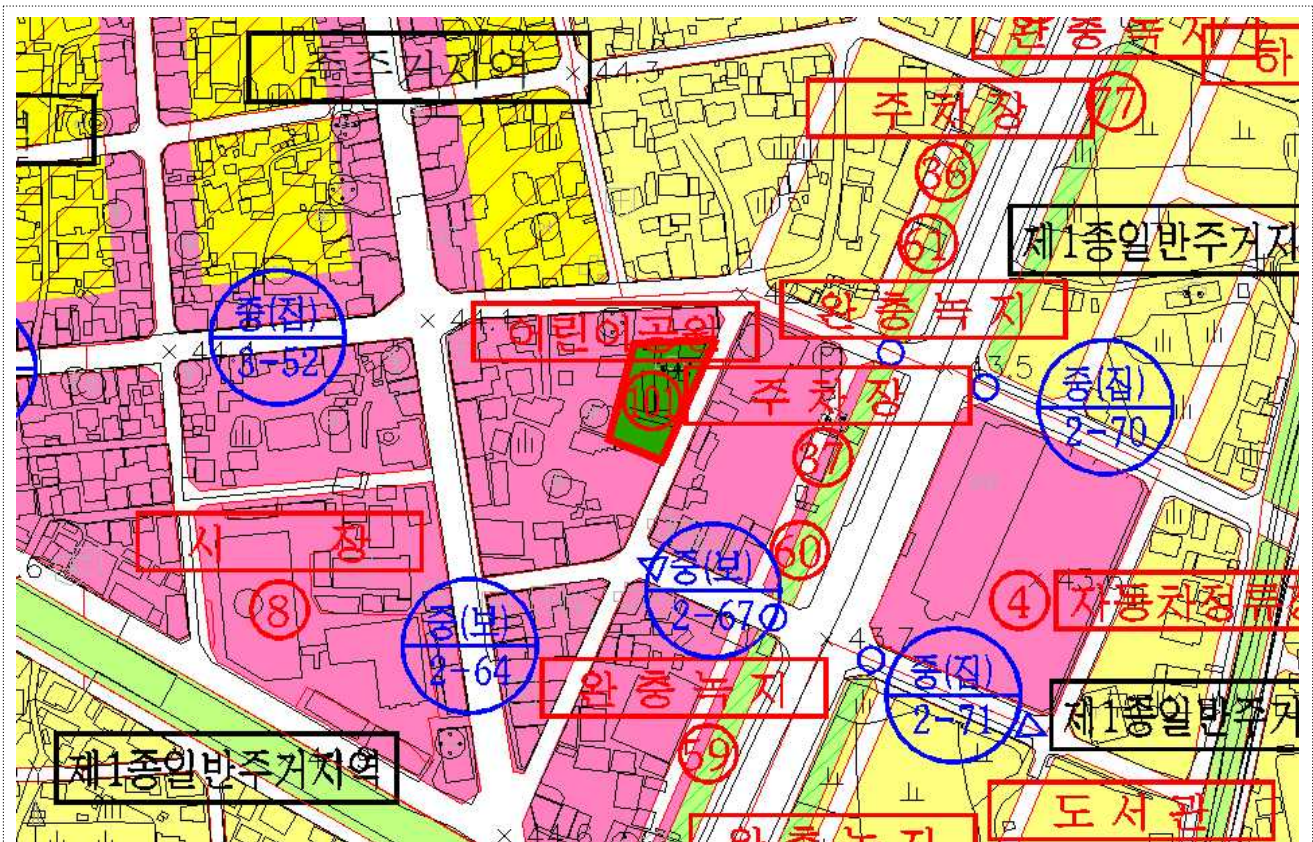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01
- 위 치 : 선산읍 동부리 342-8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1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1	동부공원	어린이 공원	선산 동부 344일원	1,500	-	1,500	건교부 513 (69.9.1)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69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4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1,456㎡, 97.1%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44㎡, 2.9%로 구성됨)
- 인근에 KT선산지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이 창고와 노후건물,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일부 해당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며 노후건축물이 일부 입지하여 건축허용기준에 해당됨
- 인근에 KT선산지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이 창고와 노후건물, 공터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허용기준에는 해당되나 상업지역 및 주거지로 활성화되어 있어 건축을 허용하기보다는 공원개설이 타당함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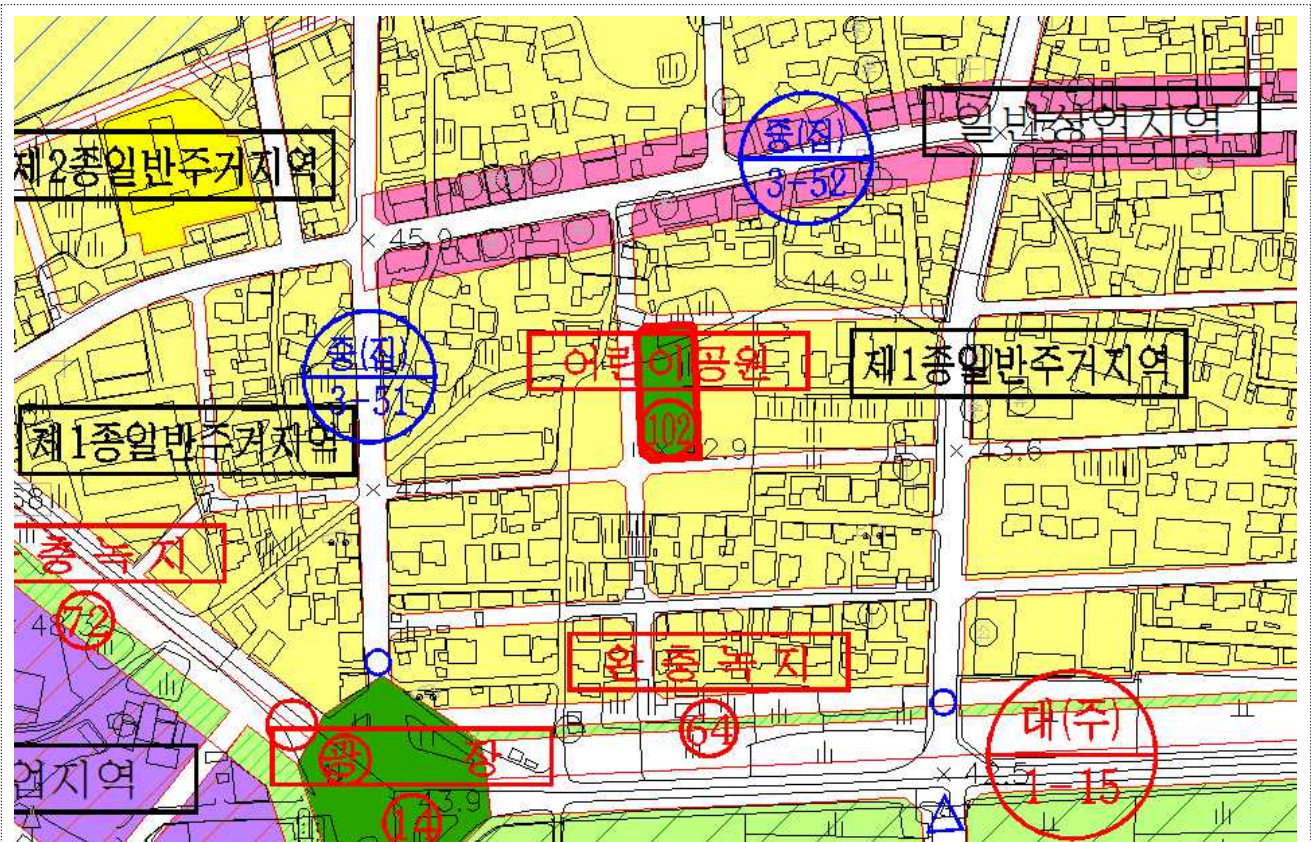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02
- 위 치 : 선산읍 이문리 138-4일원
- 시설결정연혁 : 건설교통부고시 제51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2	이문공원	어린이 공원	선산 이문 139일원	1,500	-	1,500	건교부 513 (6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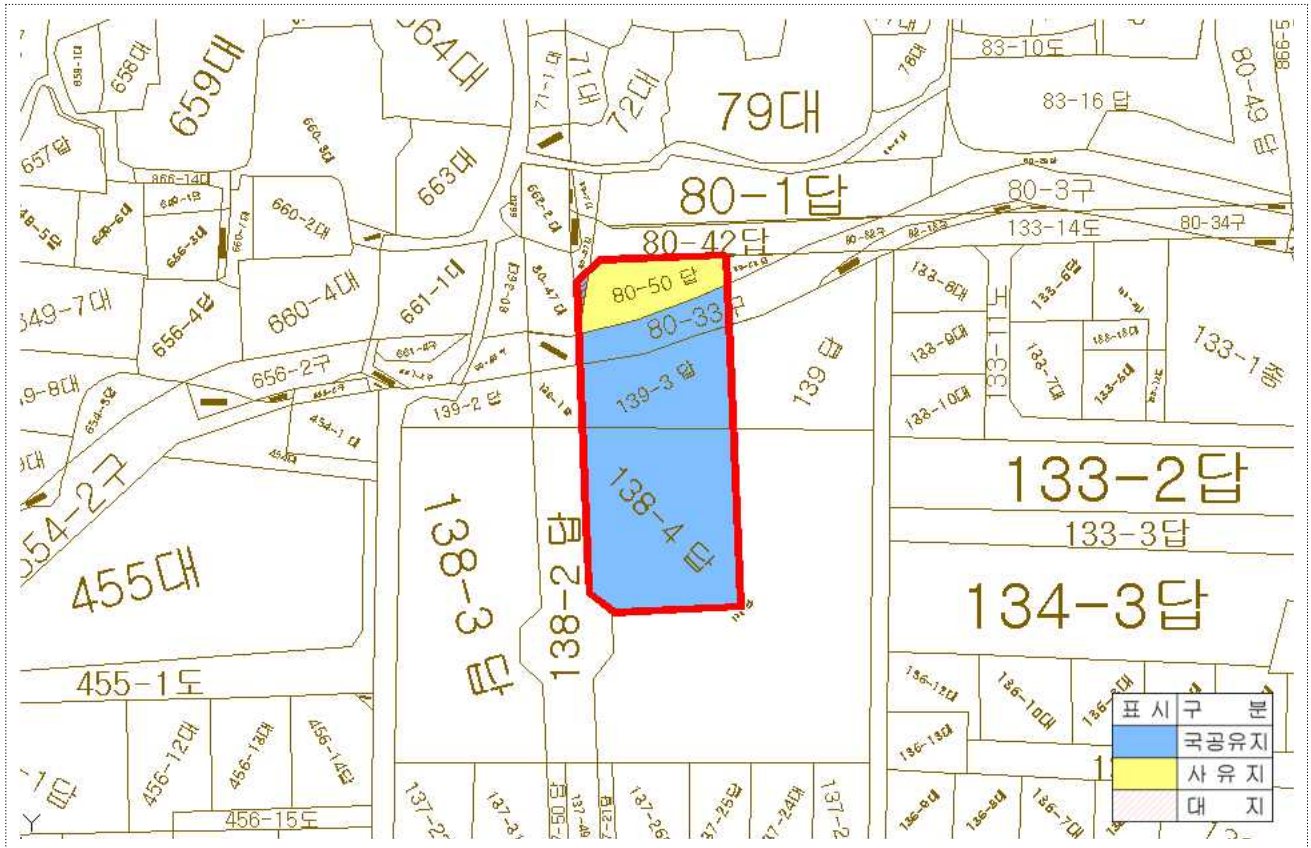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69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44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1,288㎡, 85.8%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212㎡, 14.2%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3㎡, 0.9%로 구성됨)
- 인근에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 주거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 주거지가 입지해 있고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와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민원사항을 반영한 구역계조정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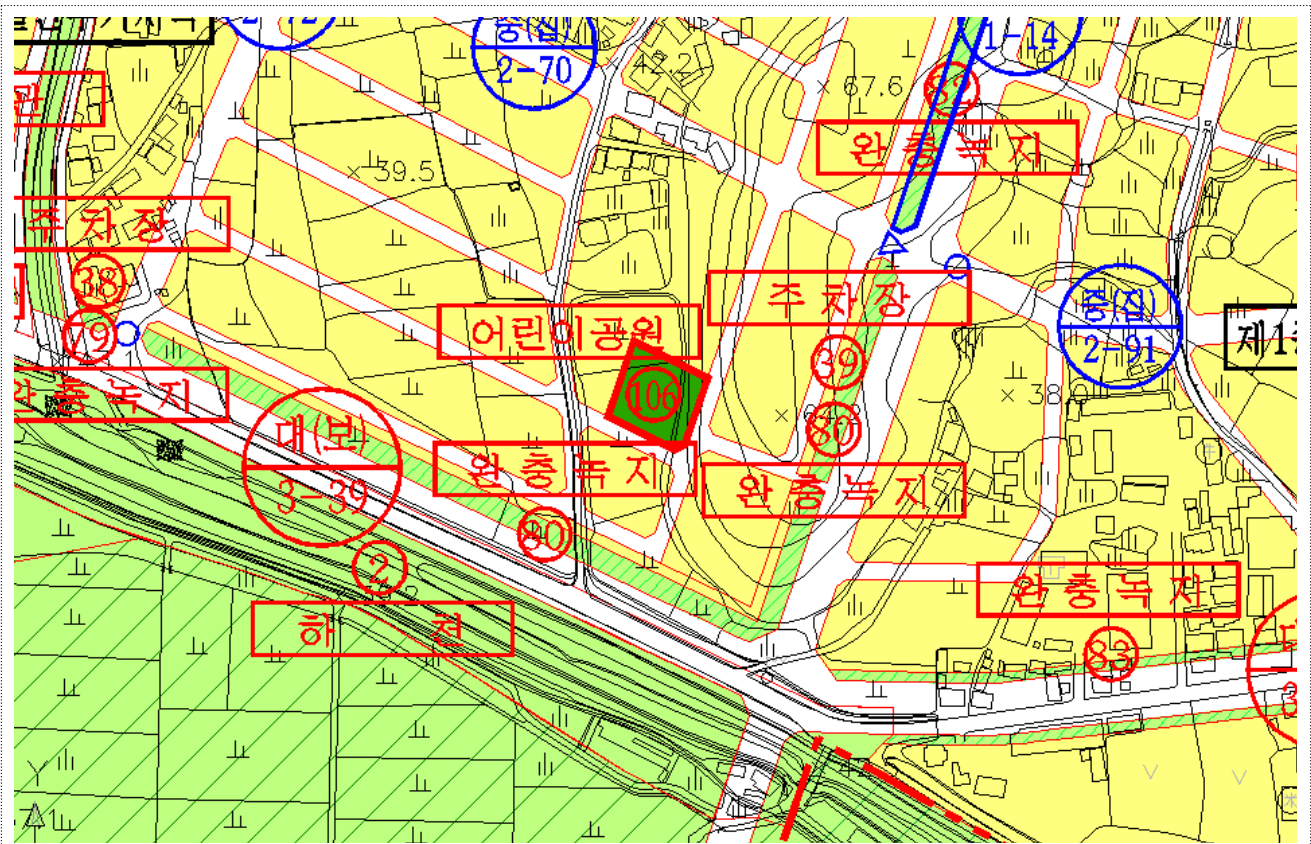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06
- 위 치 : 선산 화조리 536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6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6	1호화조 공원	어린이 공원	선산 화조리 536	1,500	-	1,500	경북고 63 (95.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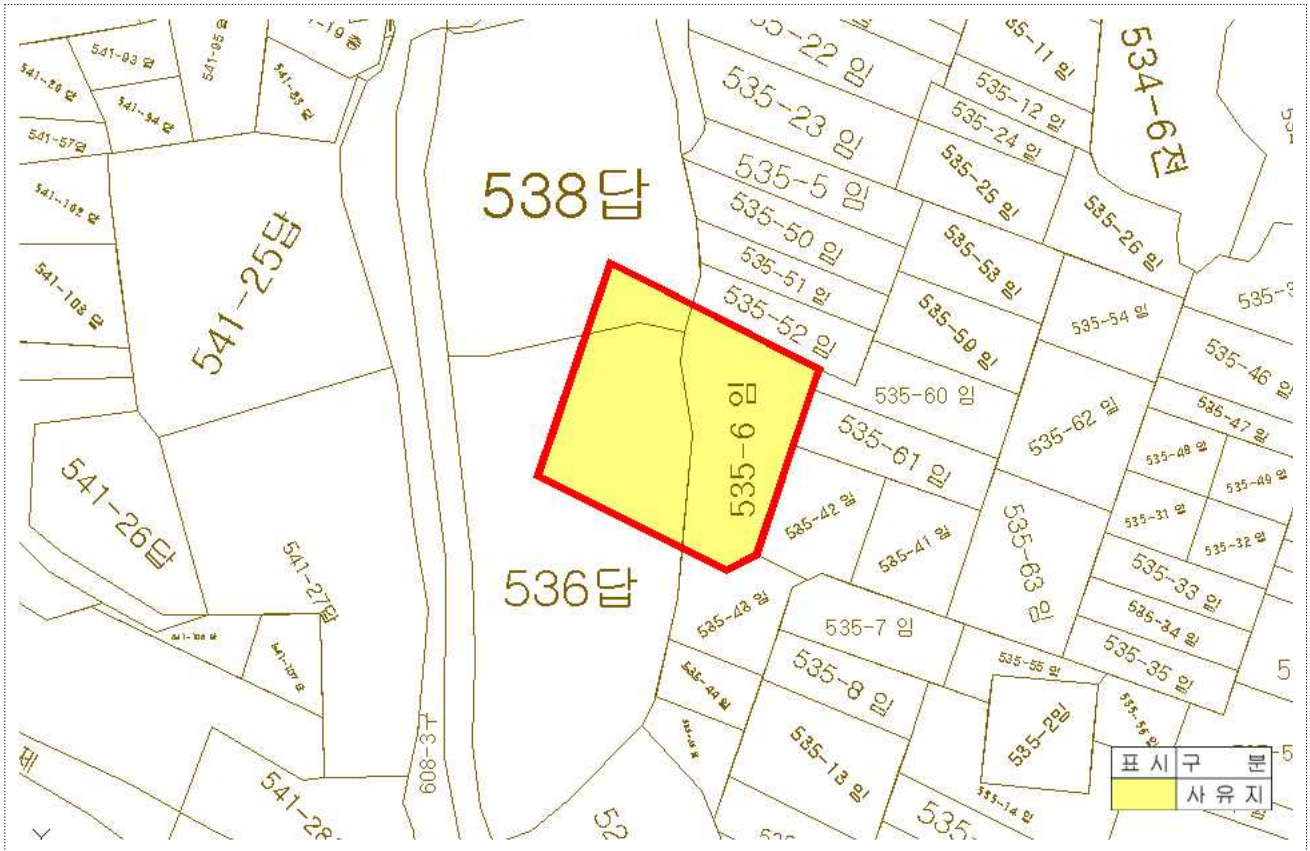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5년 선산도시계획(재정비)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8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사유지가 1,500㎡, 100.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농경지 및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와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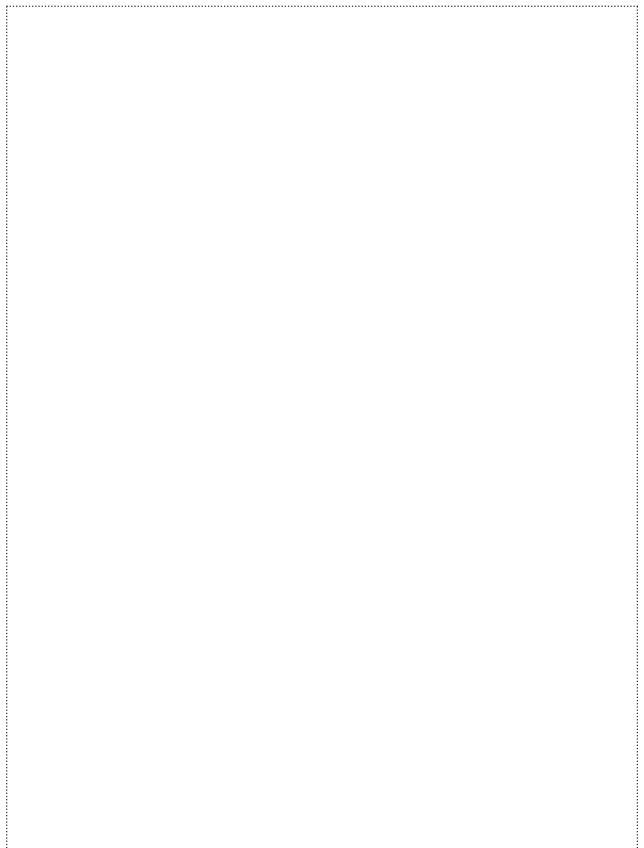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와 양호한 임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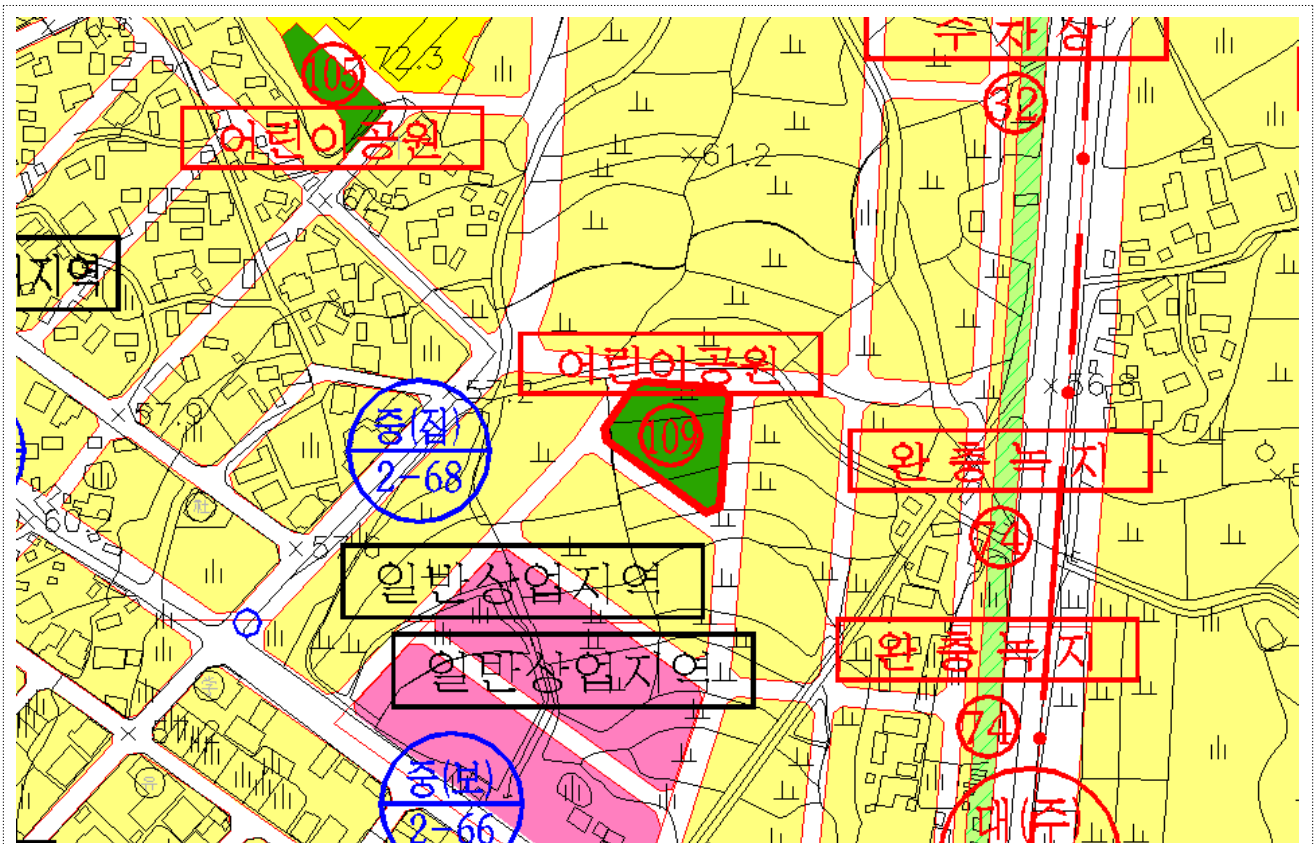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09
- 위 치 : 선산 교리 901-1 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63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9	3호교동 공원	어린이 공원	선산교리901-1	1,875	-	1,875	경북고 63 (95.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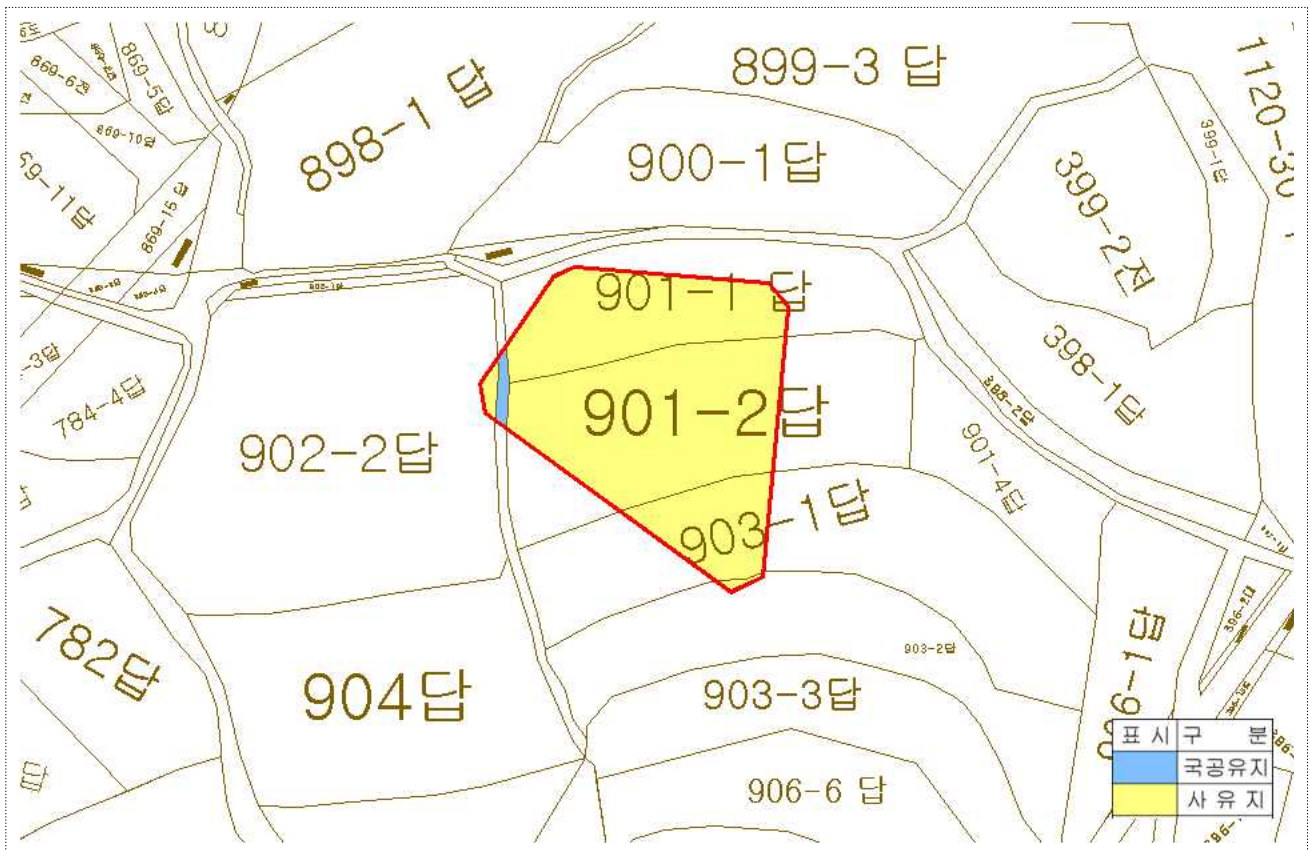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5년 선산도시계획(재정비)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18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875㎡중 국공유지는 21㎡,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854㎡, 98.9%로 구성됨)
- 인근에 국도33호선,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공사를 위한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국도33호선과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공사를 위한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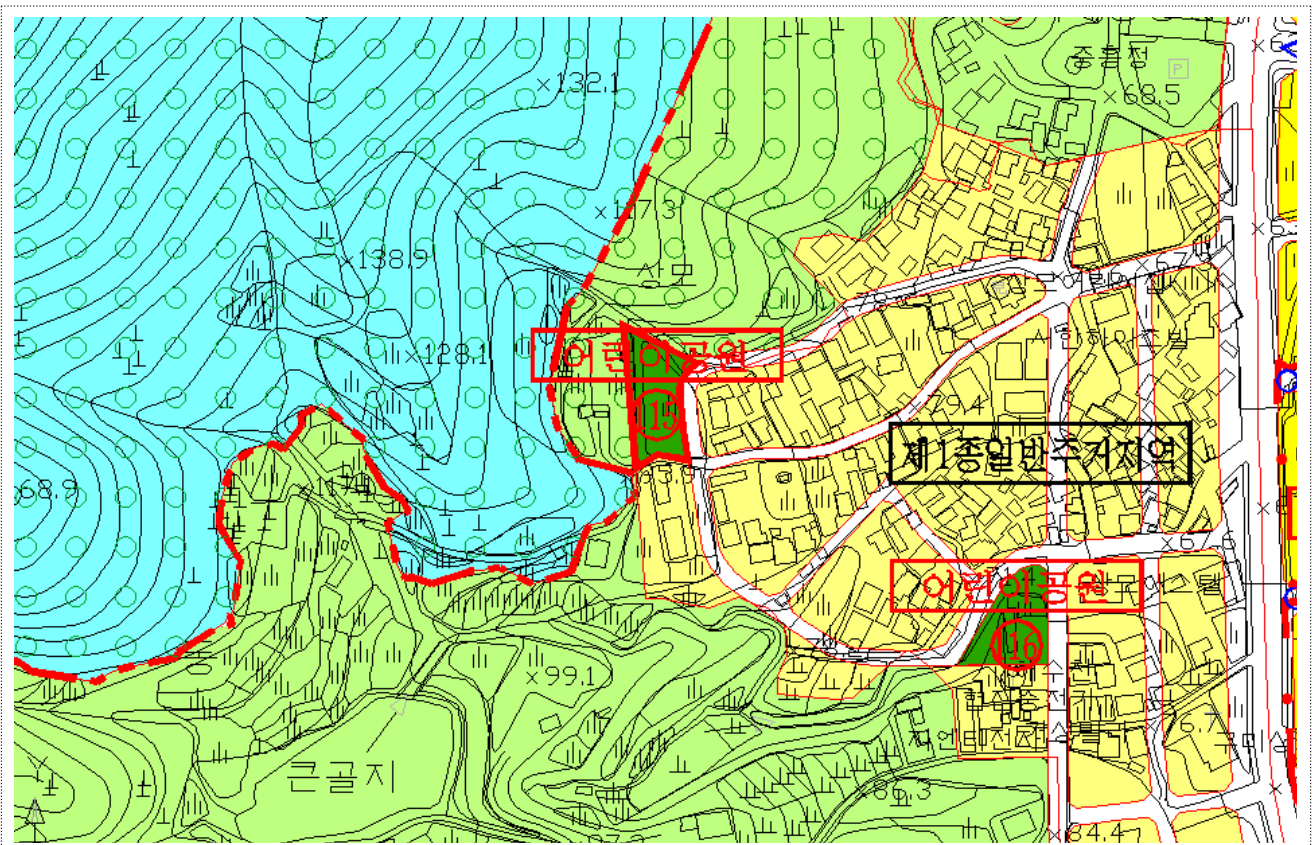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15
- 위 치 : 상모동 253-6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5	상모 제2공원	어린이 공원	상모동 253-1일원	1,600	-	1,600	경북고 249 (92.8.4)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600㎡중 국공유지는 1,597㎡, 99.8%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3㎡, 0.2%로 구성됨)
- 인근에 박정희대통령 생가와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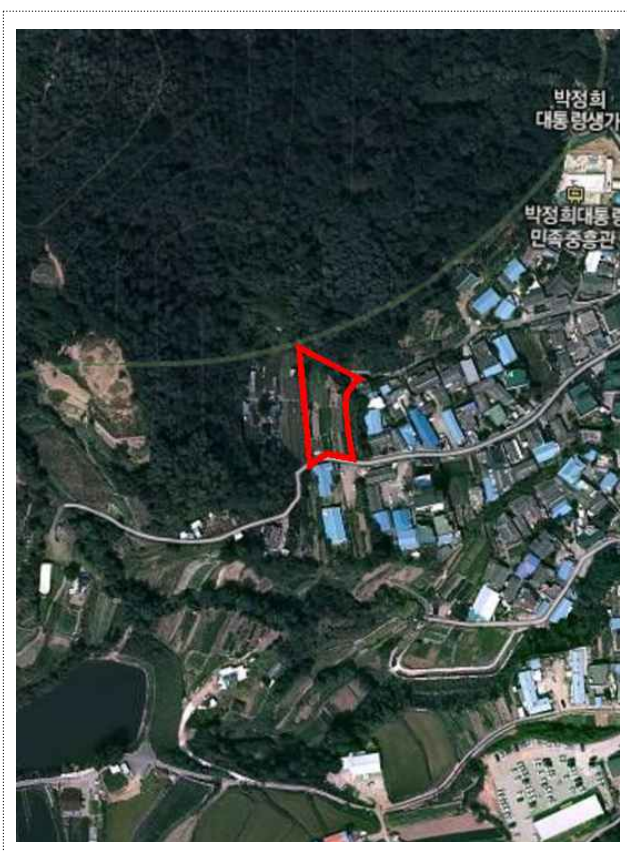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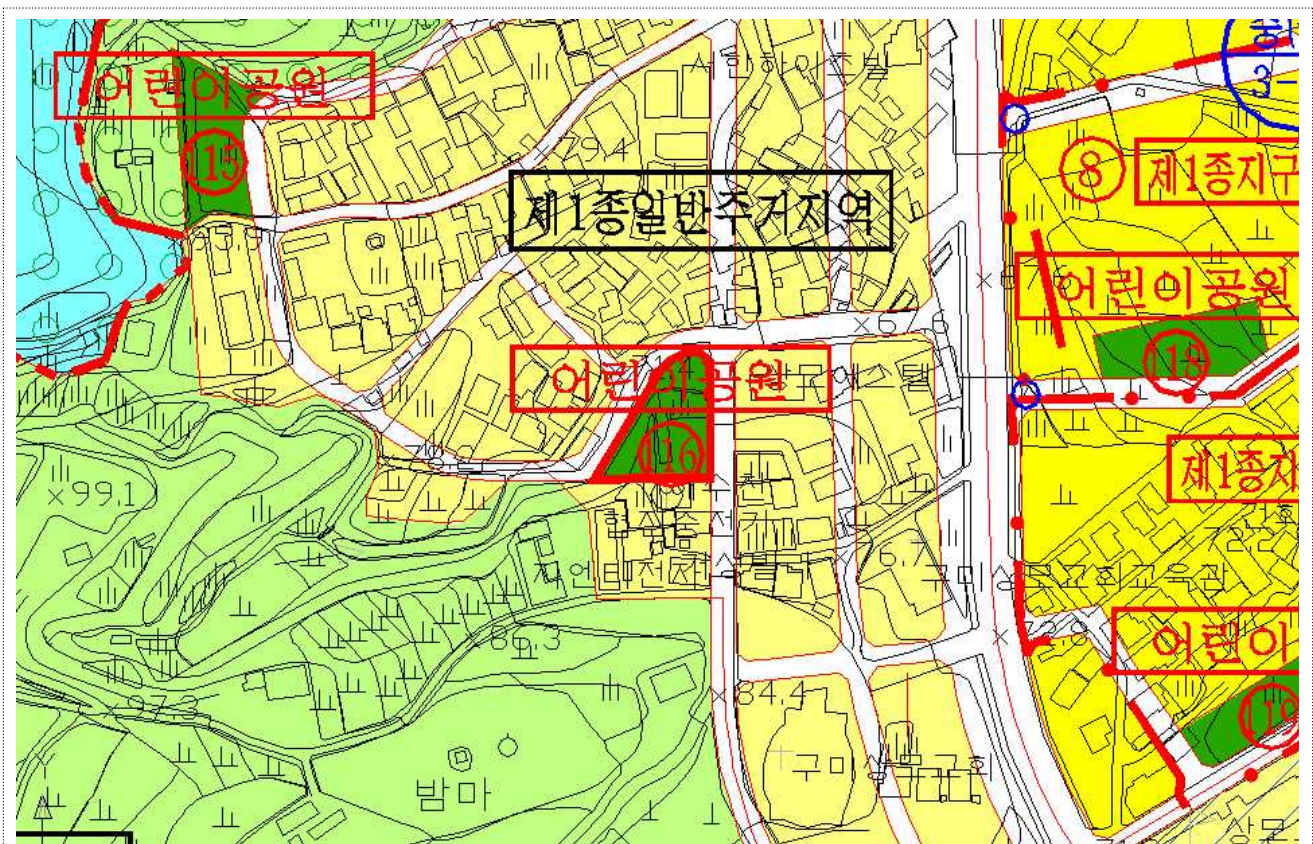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16
- 위 치 : 상모동 261-7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6	상모 제3공원	어린이 공원	상모동 261-7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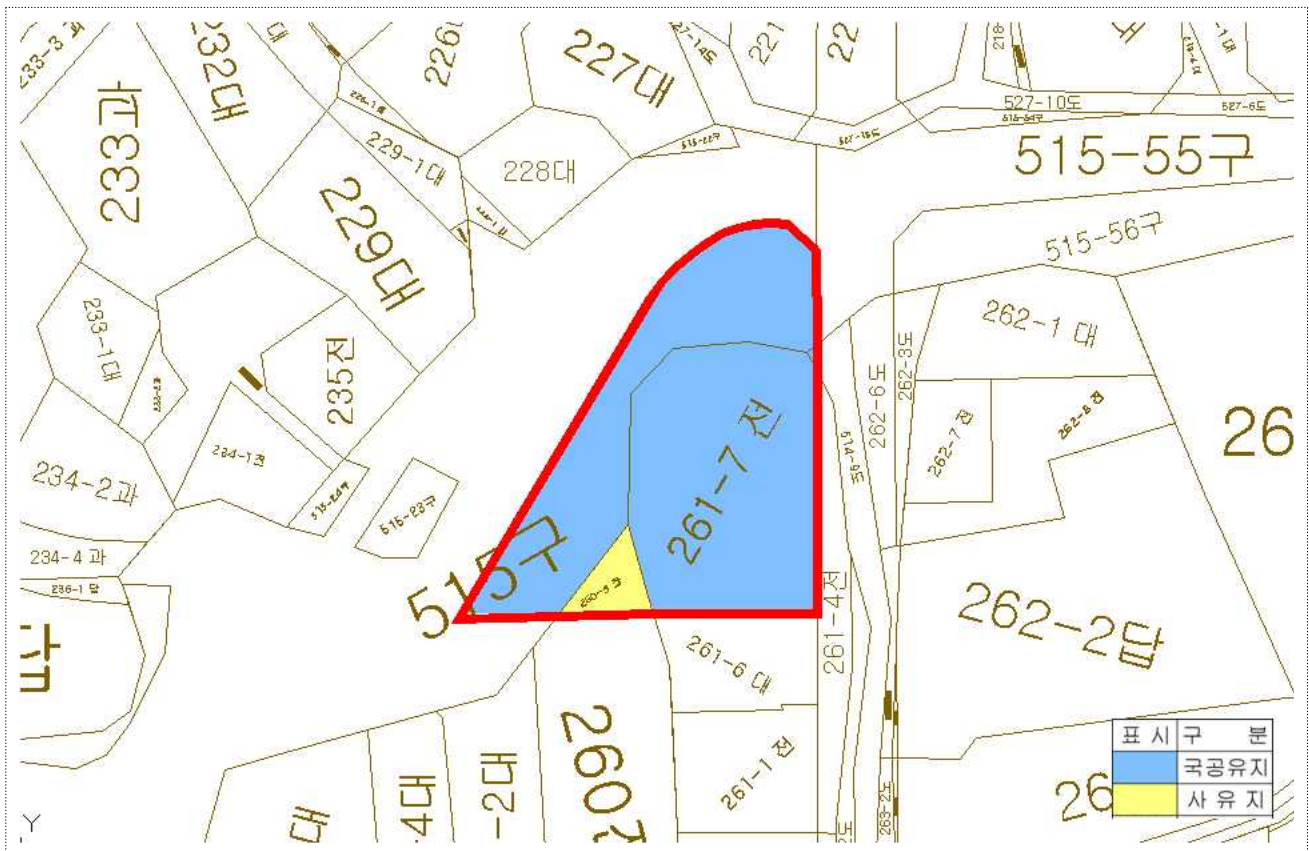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1,432㎡, 95.4%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68㎡, 4.6%로 구성됨)
- 인근에 상모교회,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현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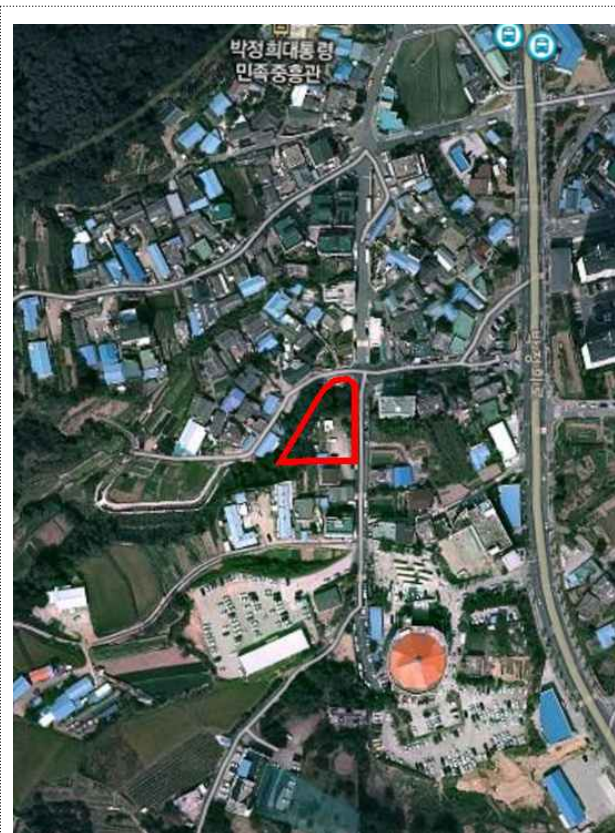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와 상모교회,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공원시설은 없이 식당,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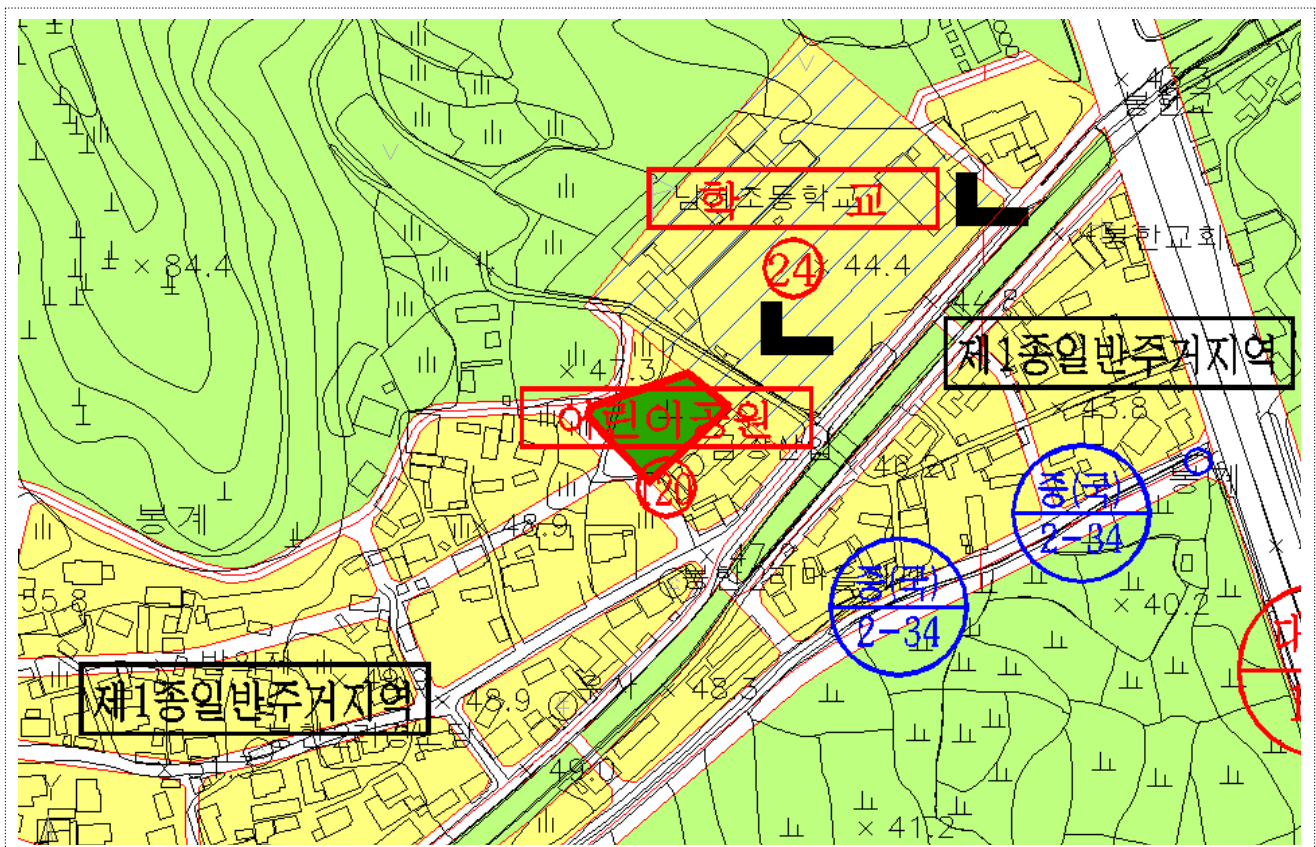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0
- 위 치 : 고아읍 봉한리 45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0	봉한 제1공원	어린이 공원	봉한리 451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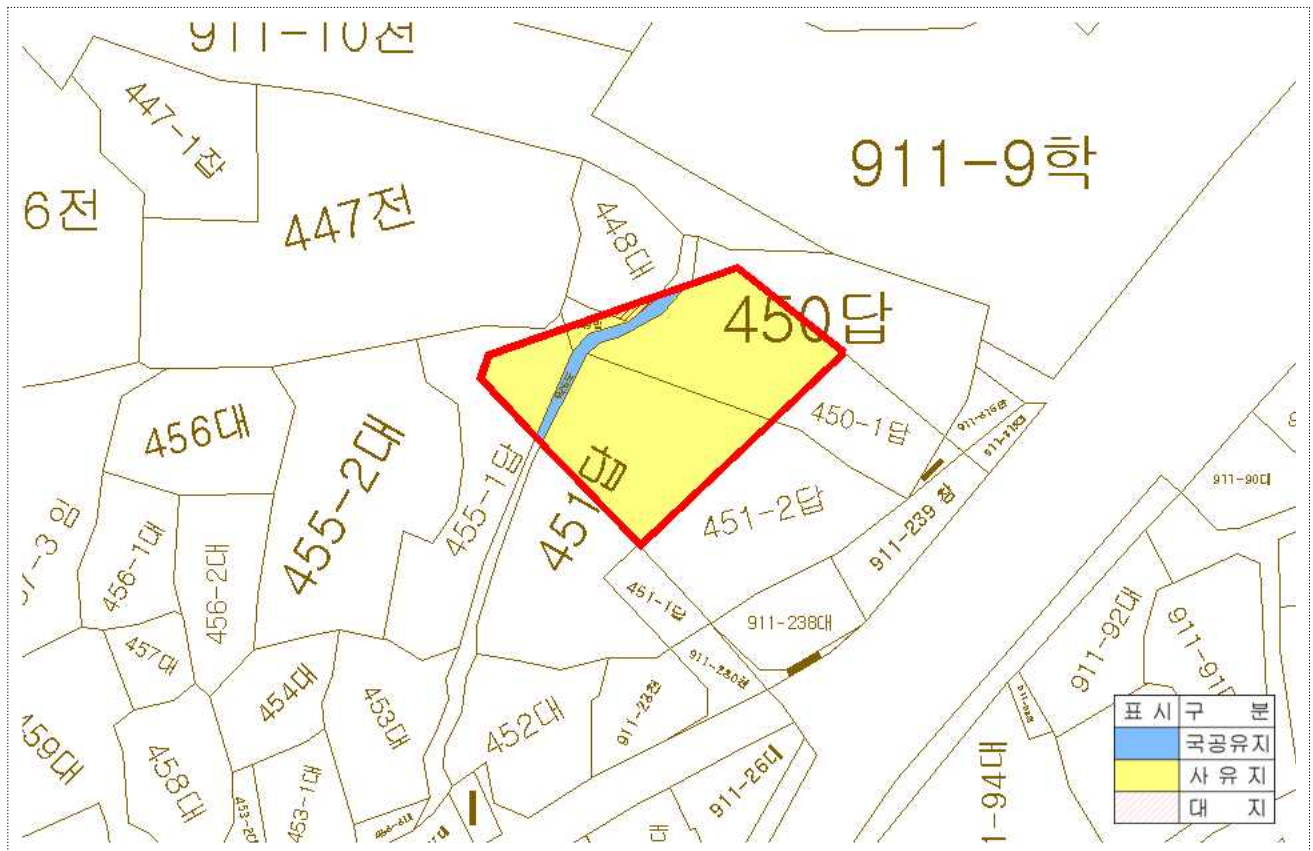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73㎡,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426㎡, 9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2㎡, 0.8%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남계초등학교, 국도 33호선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남계초등학교, 국도 33호선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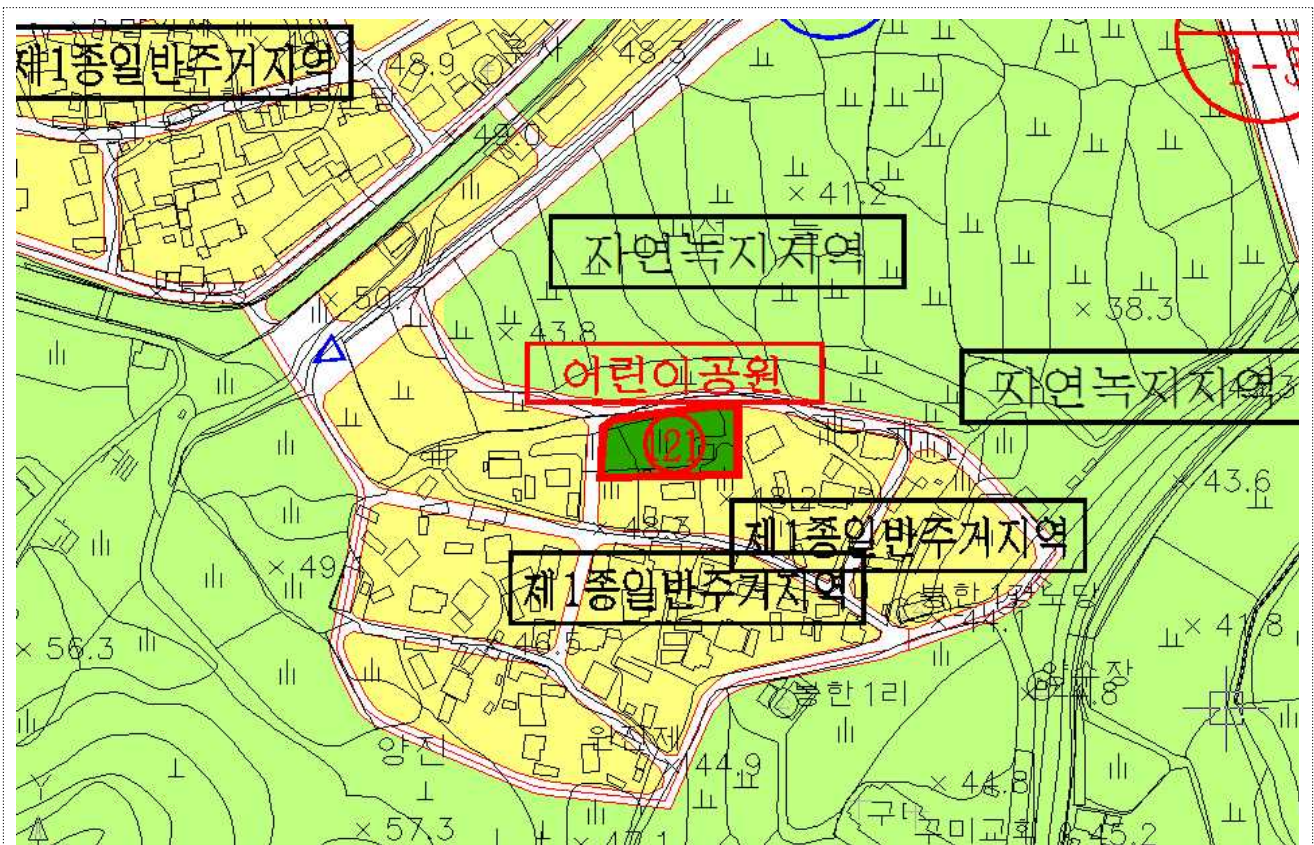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1
- 위 치 : 봉한리 615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1	봉한 제2공원	어린이 공원	봉한리 615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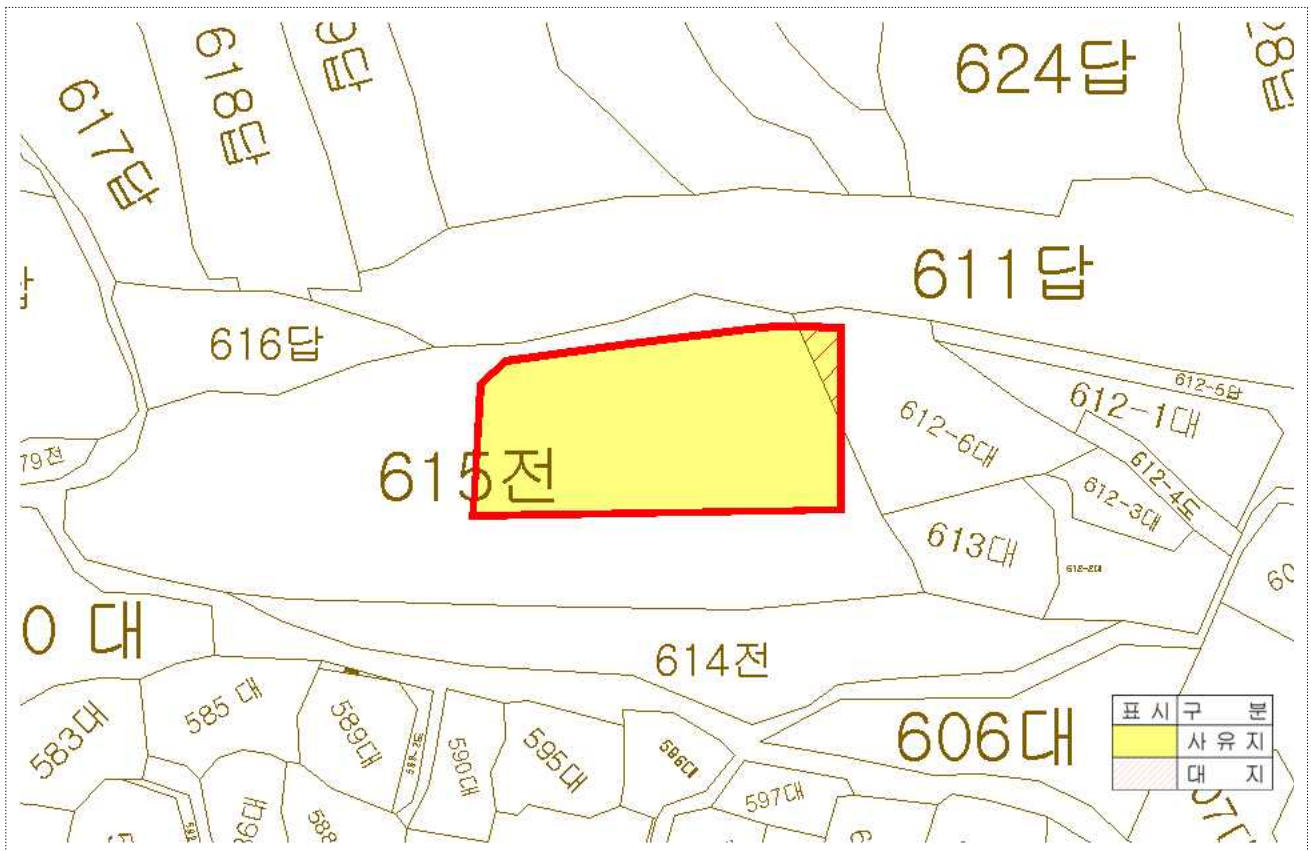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사유지는 1,500㎡, 100.0%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57㎡, 3.8%로 구성됨)
- 인근에 농가형주택지, 국도 33호선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공원시설은 없이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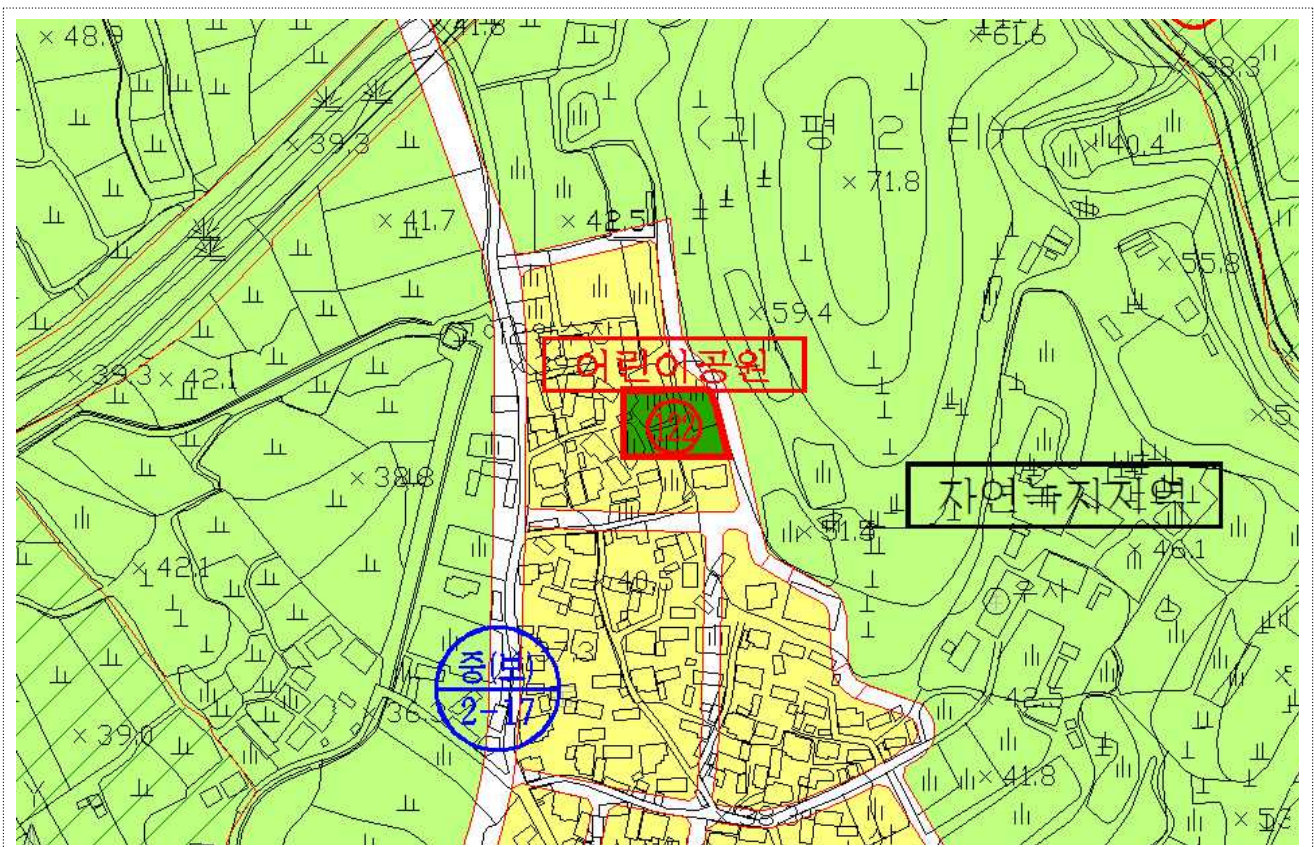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2
- 위 치 : 고아읍 다식리 40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2	다식 제1공원	어린이 공원	다식리 40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4)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34㎡, 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466㎡, 97.7%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946㎡, 63.1%로 구성됨)
- 인근에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형주택이 입지해 있고 공원시설은 없이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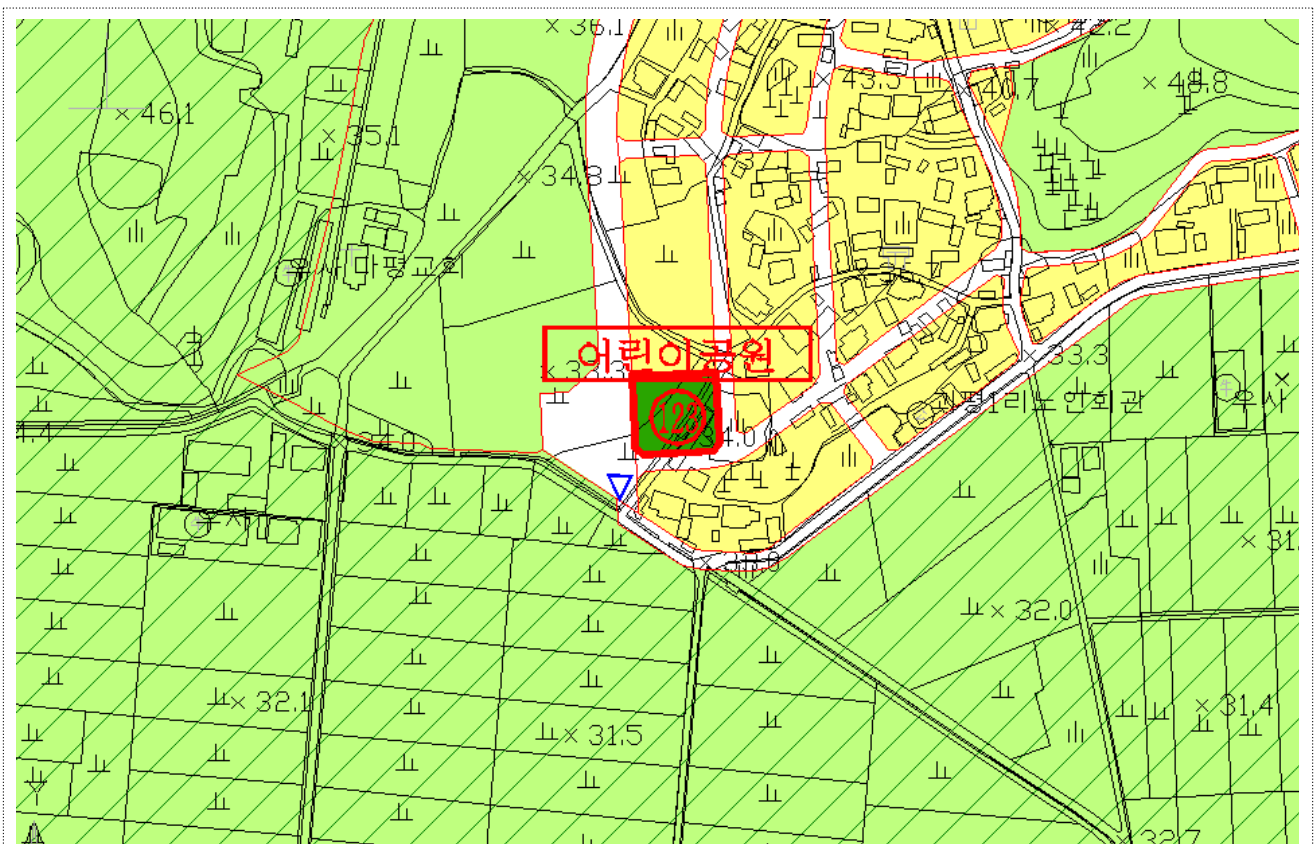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3
- 위 치 : 고아읍 다식리 256-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3	다식 제2공원	어린이 공원	다식리 256-1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4)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639㎡, 4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861㎡, 57.4%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농경지와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농경지,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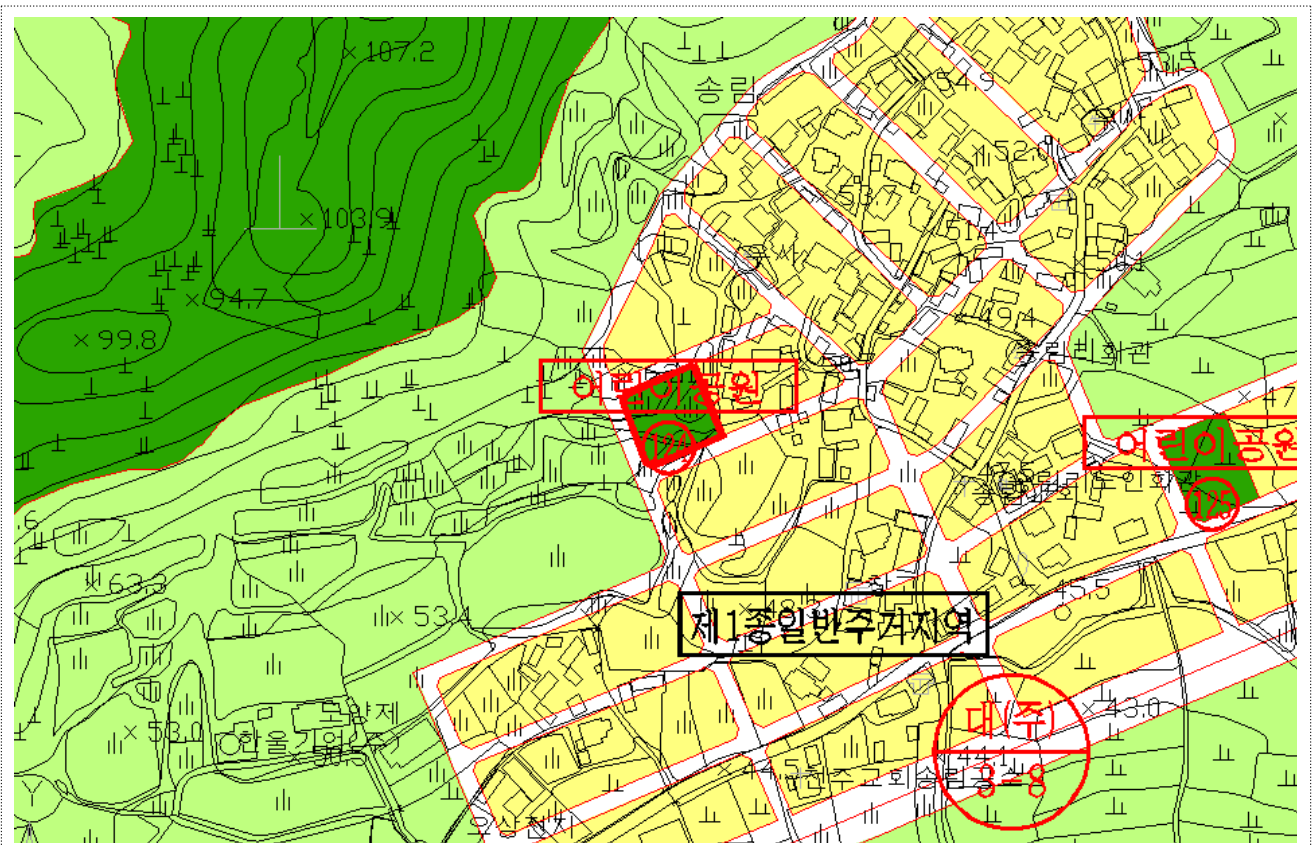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4
- 위 치 : 고아읍 송림리 186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4	송림 제1공원	어린이 공원	송림리 186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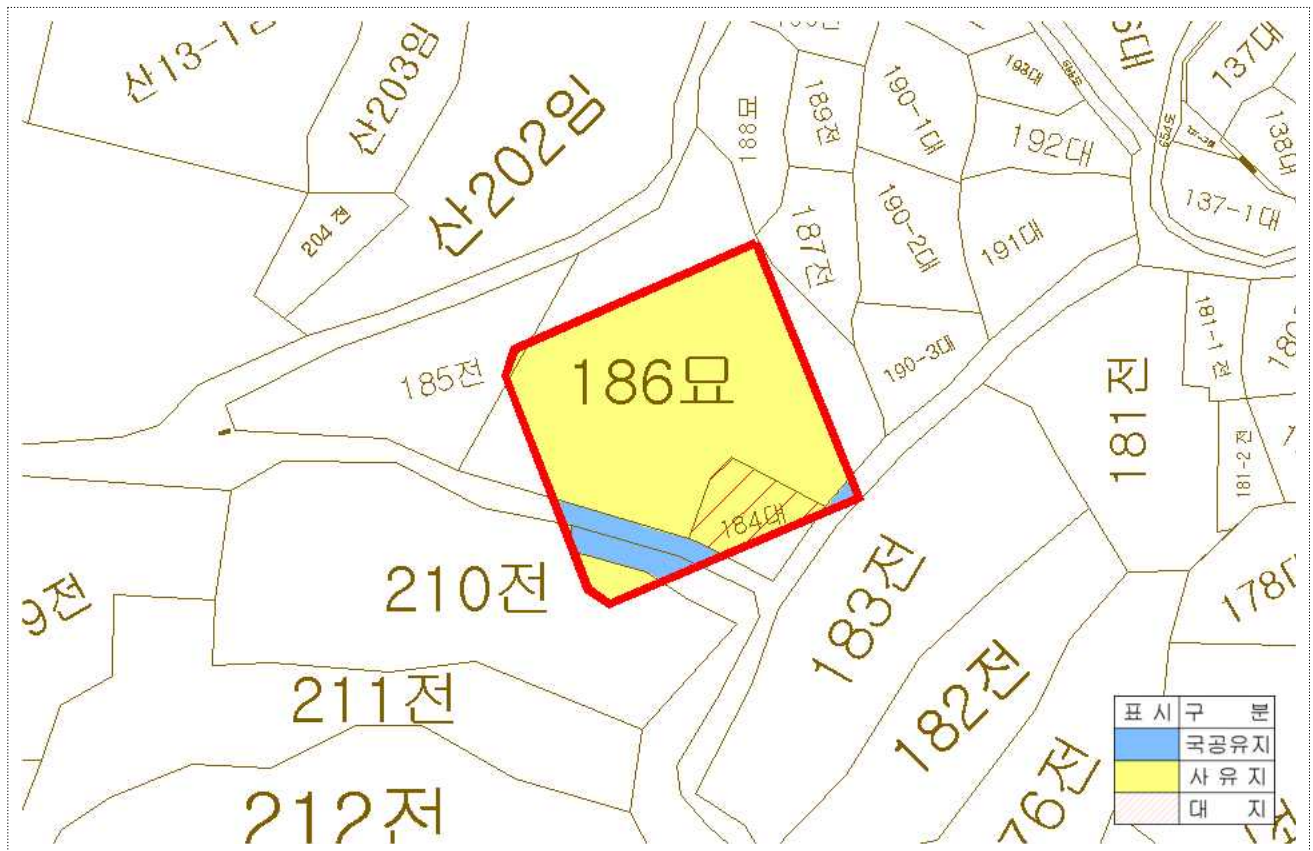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130㎡, 8.6%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370㎡, 91.4%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40㎡, 9.3%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구운초등학교,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경작지,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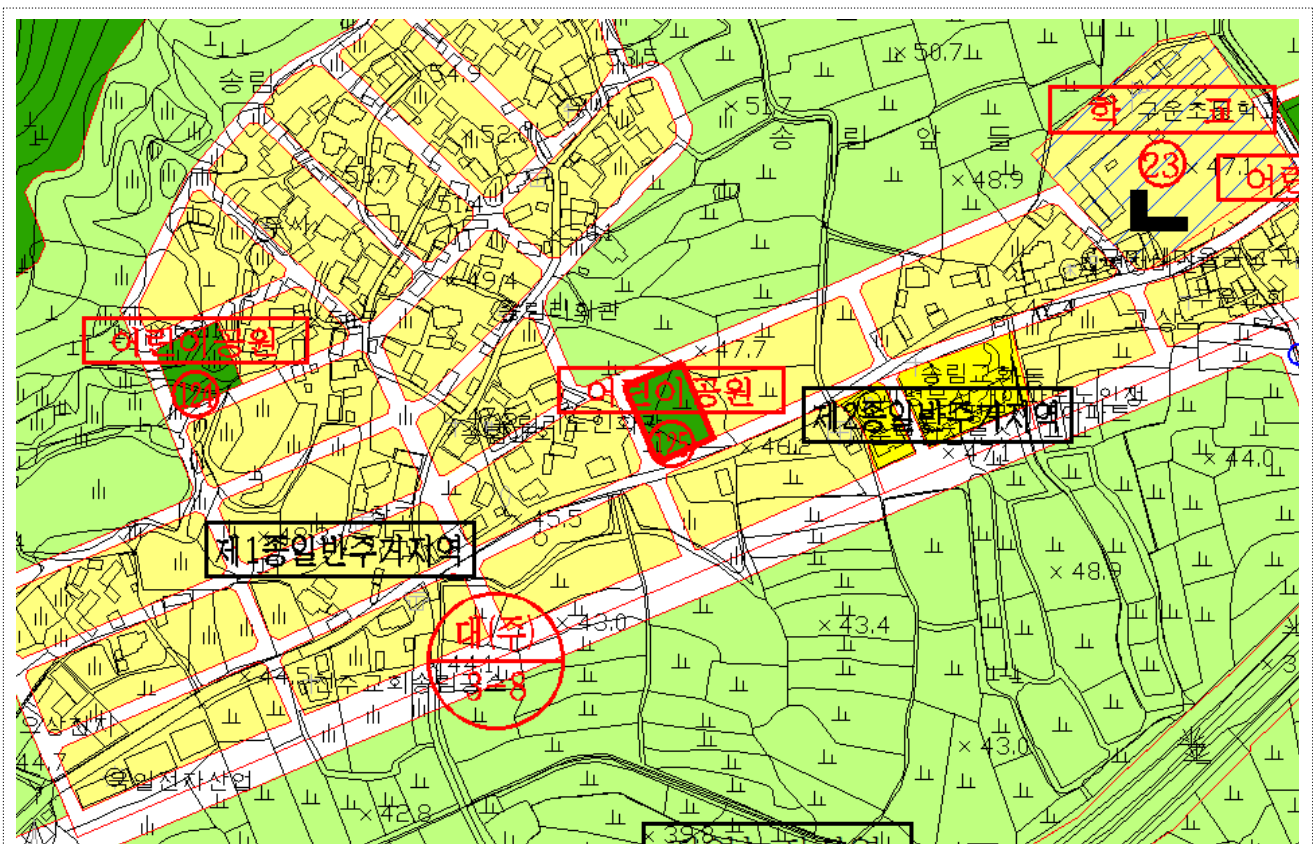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5
- 위 치 : 고아읍 송림리 165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5	송림 제2공원	어린이 공원	송림리 165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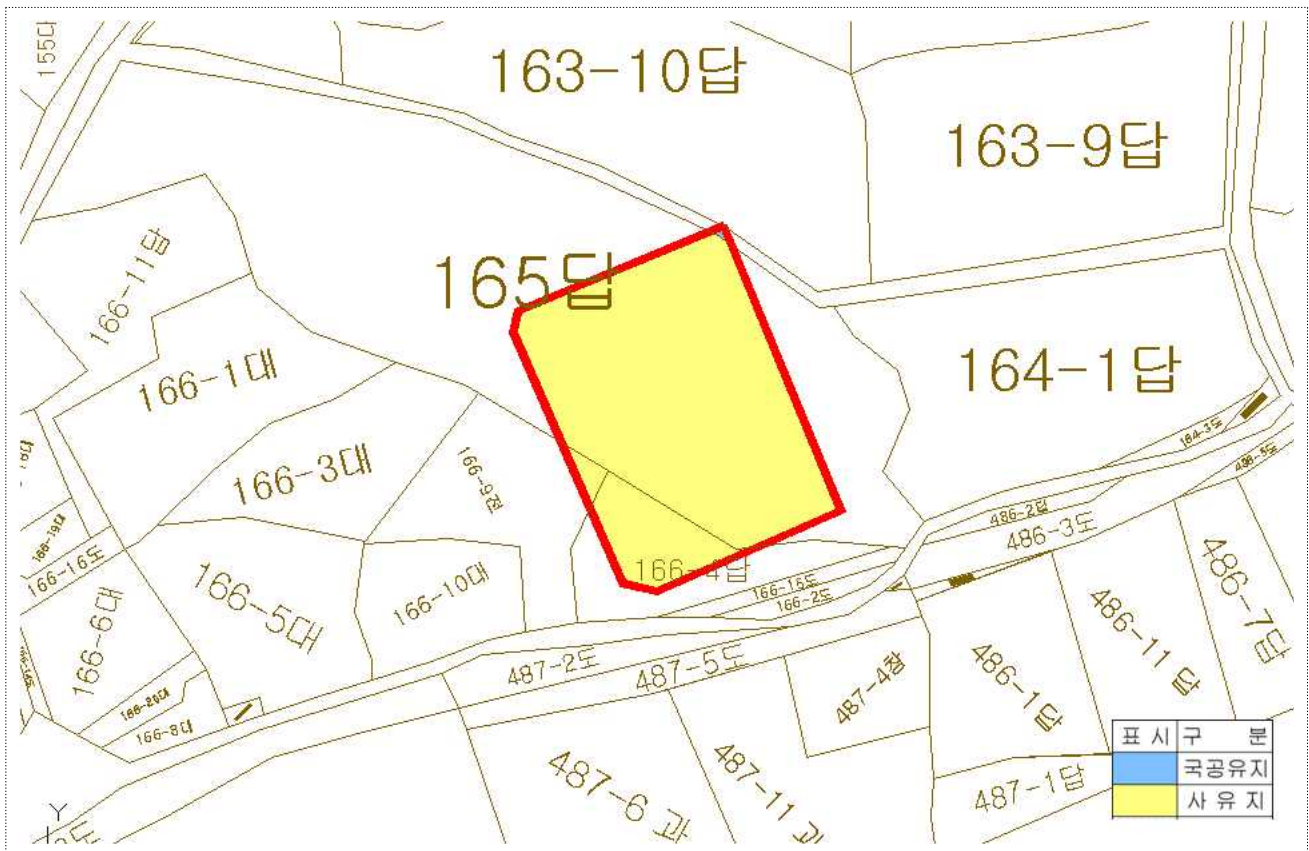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4㎡, 0.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496㎡, 99.7%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대로3-8호선, 구운초등학교, 능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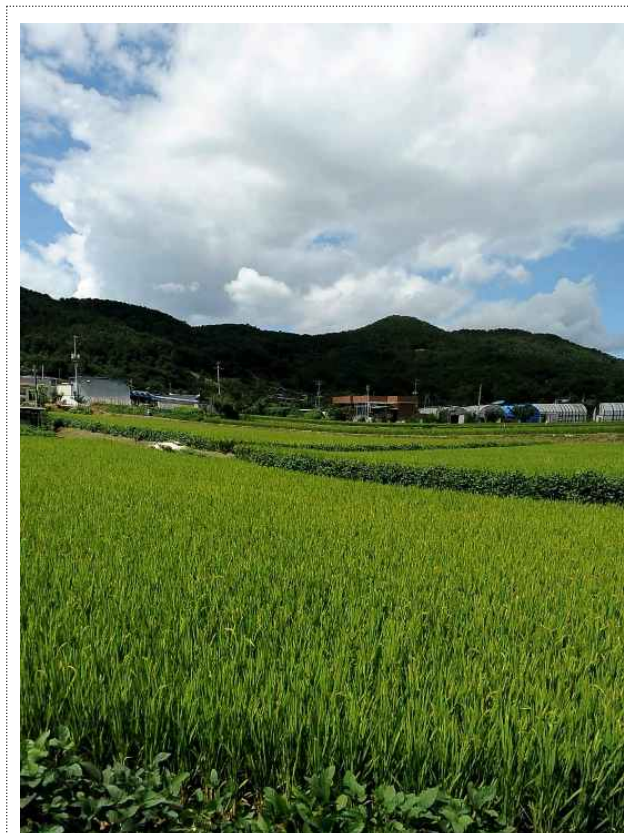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대로3-8호선, 농경지,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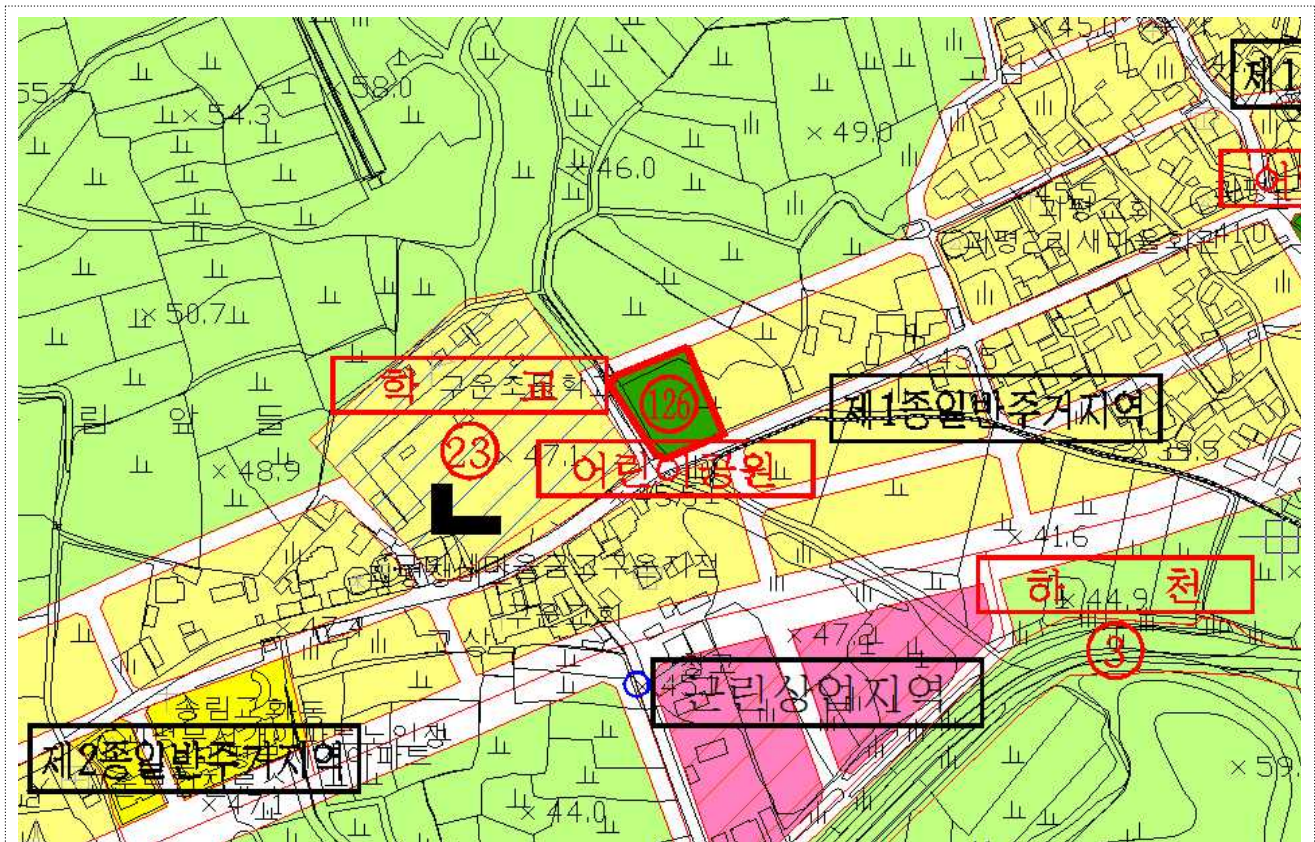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6
- 위 치 : 고아읍 괴평리 231-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6	괴평 제1공원	어린이 공원	괴평리 231-1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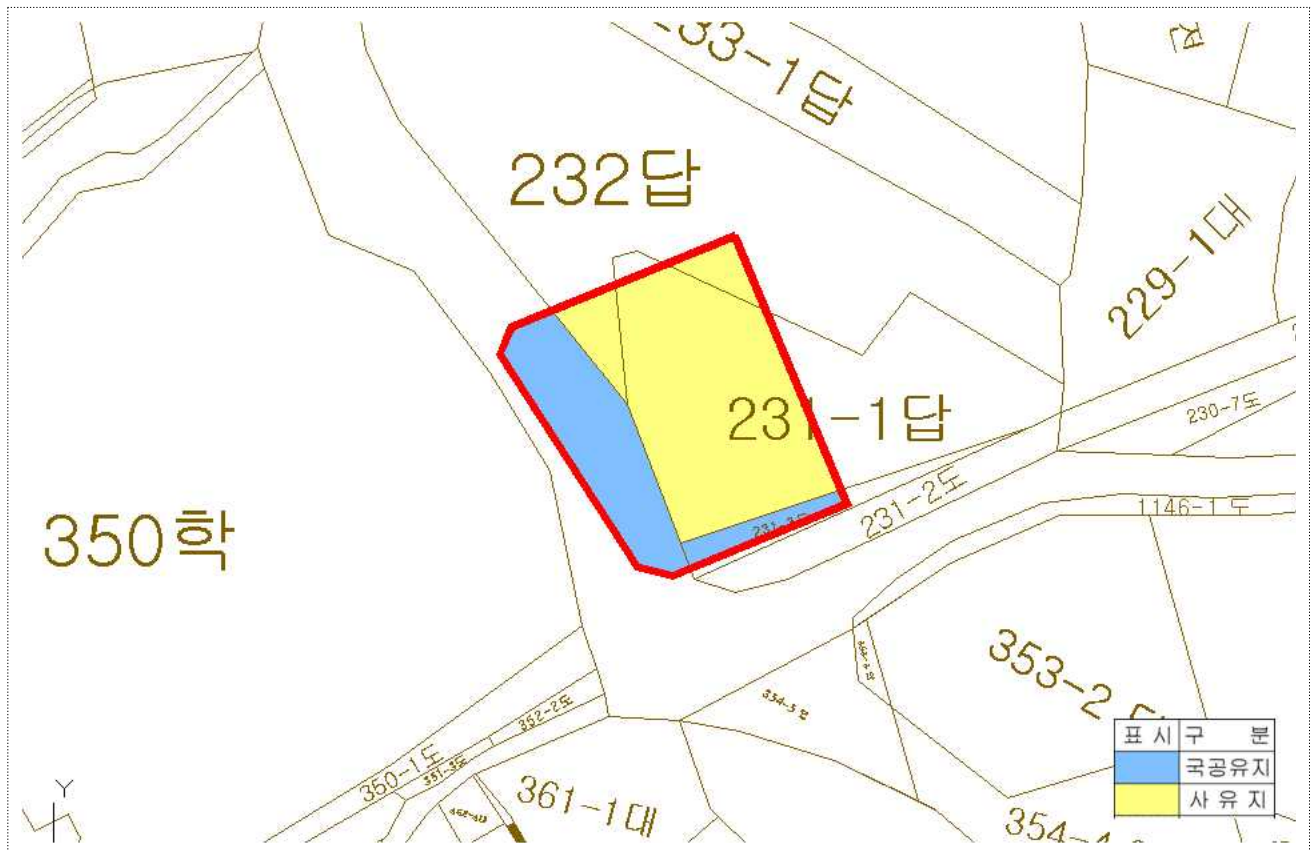
■ 일반 현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500㎡중 국공유지는 495㎡, 3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005㎡, 67.0%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대로3-8호선,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구운초등학교와 연접해 있으며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구운초등학교, 대로3-8호선, 농경지,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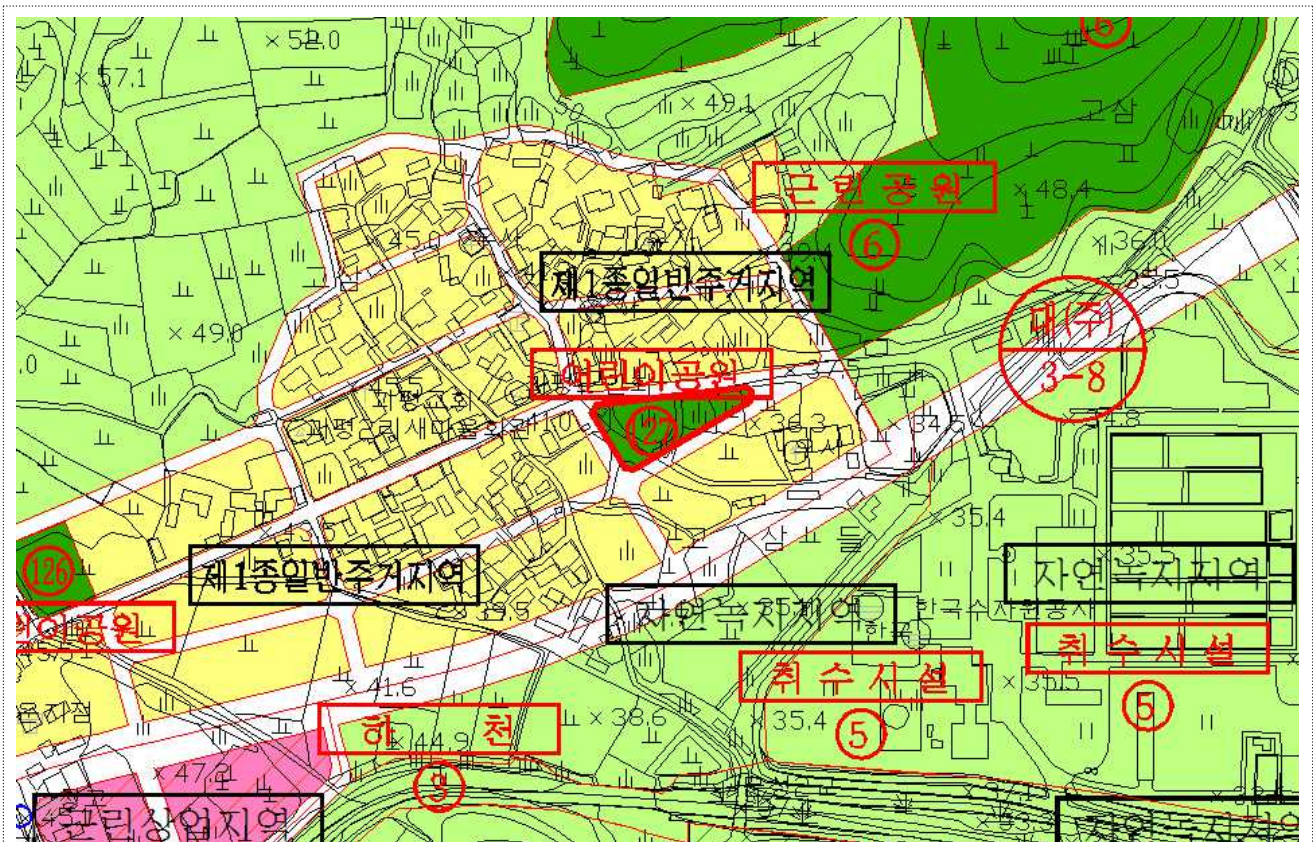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7
- 위 치 : 고아읍 괴평리 63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7	괴평 제2공원	어린이 공원	괴평리 63일원	1,900	-	1,900	경북고 249 (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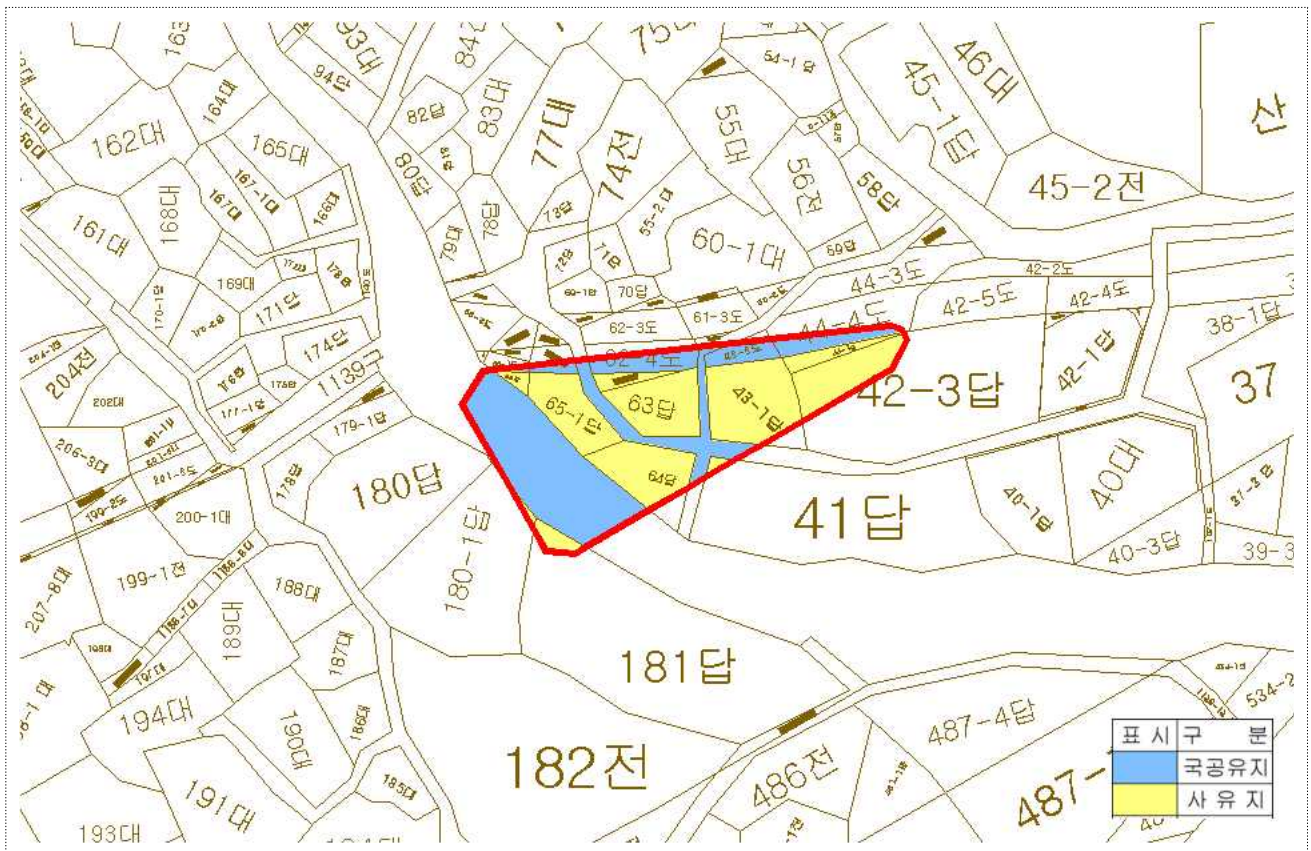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900㎡중 국공유지는 868㎡, 4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1,032㎡, 54.3%로 구성됨)
-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공원으로서 인근에 취수시설, 매봉산,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폐지, 축소 조정으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인근에 취수시설, 농가형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계획된 공원으로서 개설된 공원시설은 없이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장래 주거지역 조성이 활성화될 때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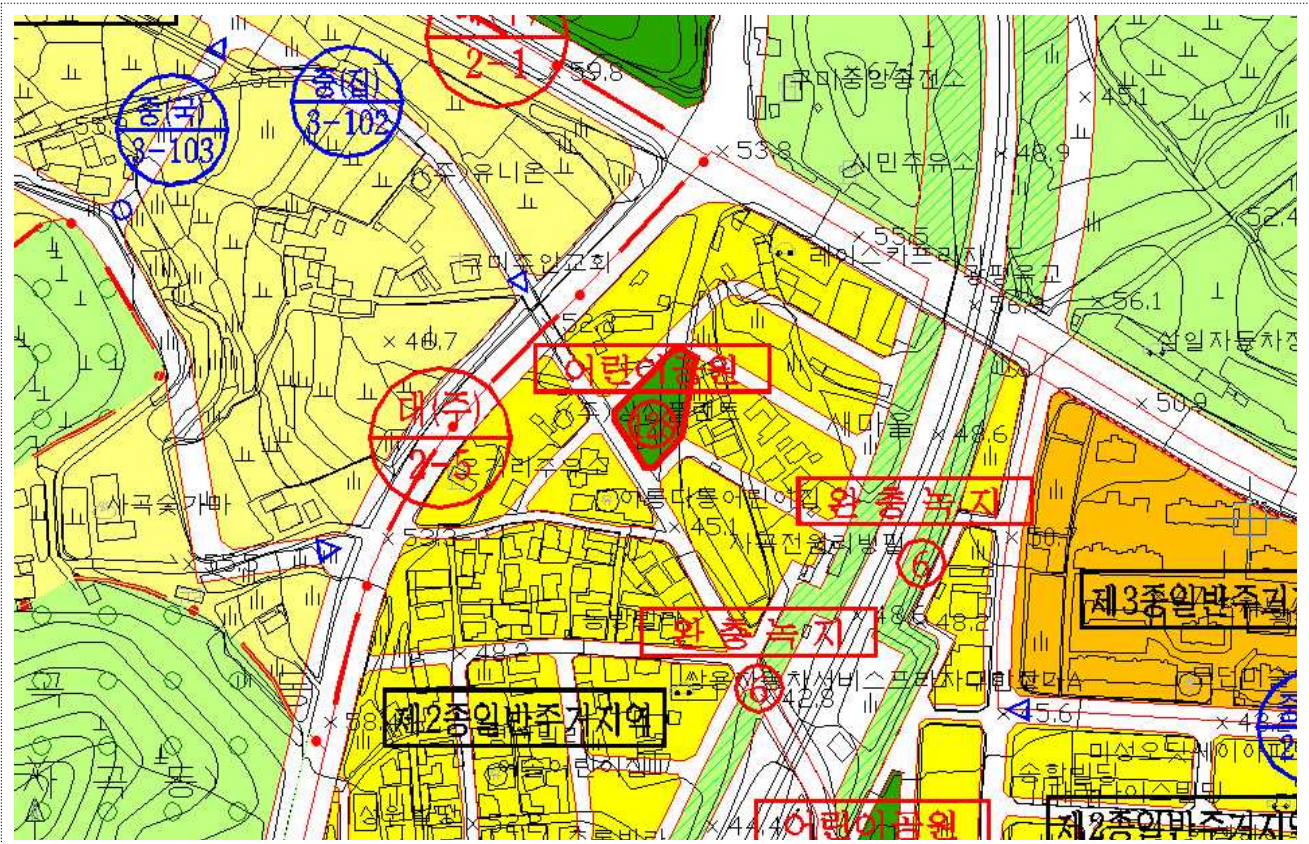
- 시설 명 : 어린이공원 128
- 위 치 : 사곡동 603-154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49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8	사곡 제1공원	어린이 공원	사곡동 603-154일원	1,500	-	1,500	경북고 249 (9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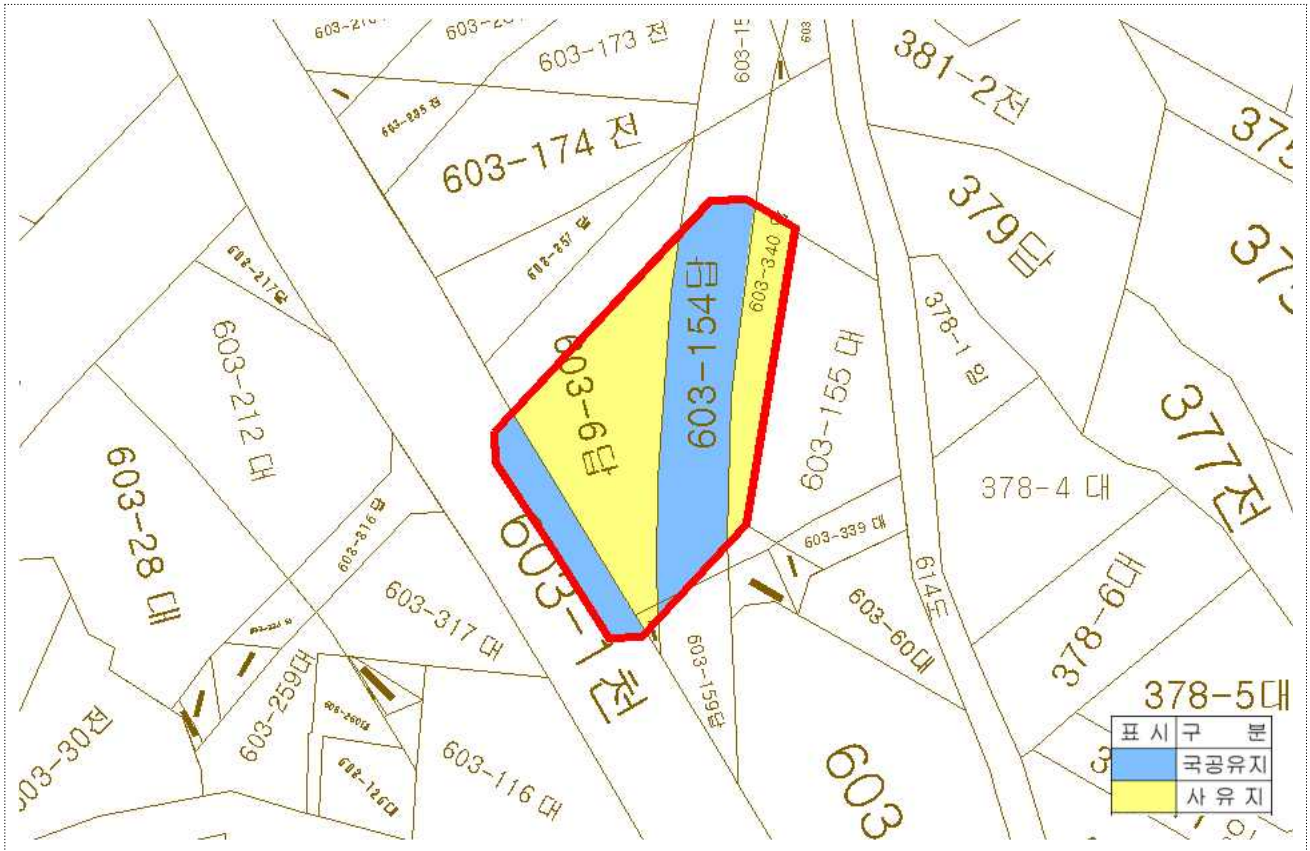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92년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1,900㎡중 국공유지는 702㎡, 46.8%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798㎡, 53.2%로 구성됨)
- 인근에 대로2-1호선, 2-5호선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공원시설은 없으며 현황도로와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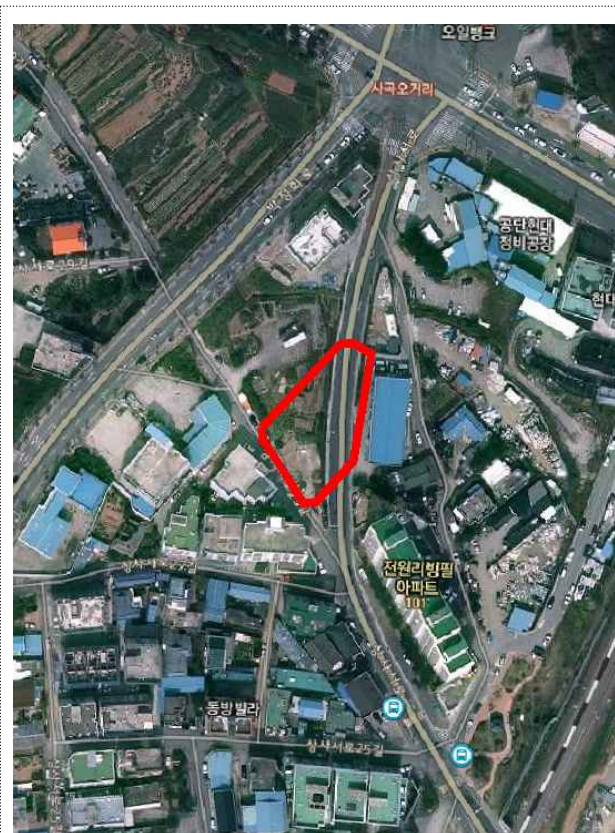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공원)

공원기능 상실	지침상	검 토
1.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해당 없음
2.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한 경우	축소	통과도로 입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침상	검 토
1.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해당 없음
2.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해당 없음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지침상	검 토
1.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확실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사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조정	해당 없음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관리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 발생시 축소로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나 통과도로는 주거지역이 활성화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폐지되어 공원축소는 해당 없음
- 인근에 대로2개 노선이 입지해 있고 주거지역이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이며 공원시설은 없이 현황도로와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중기(2011~2016)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2) 운 동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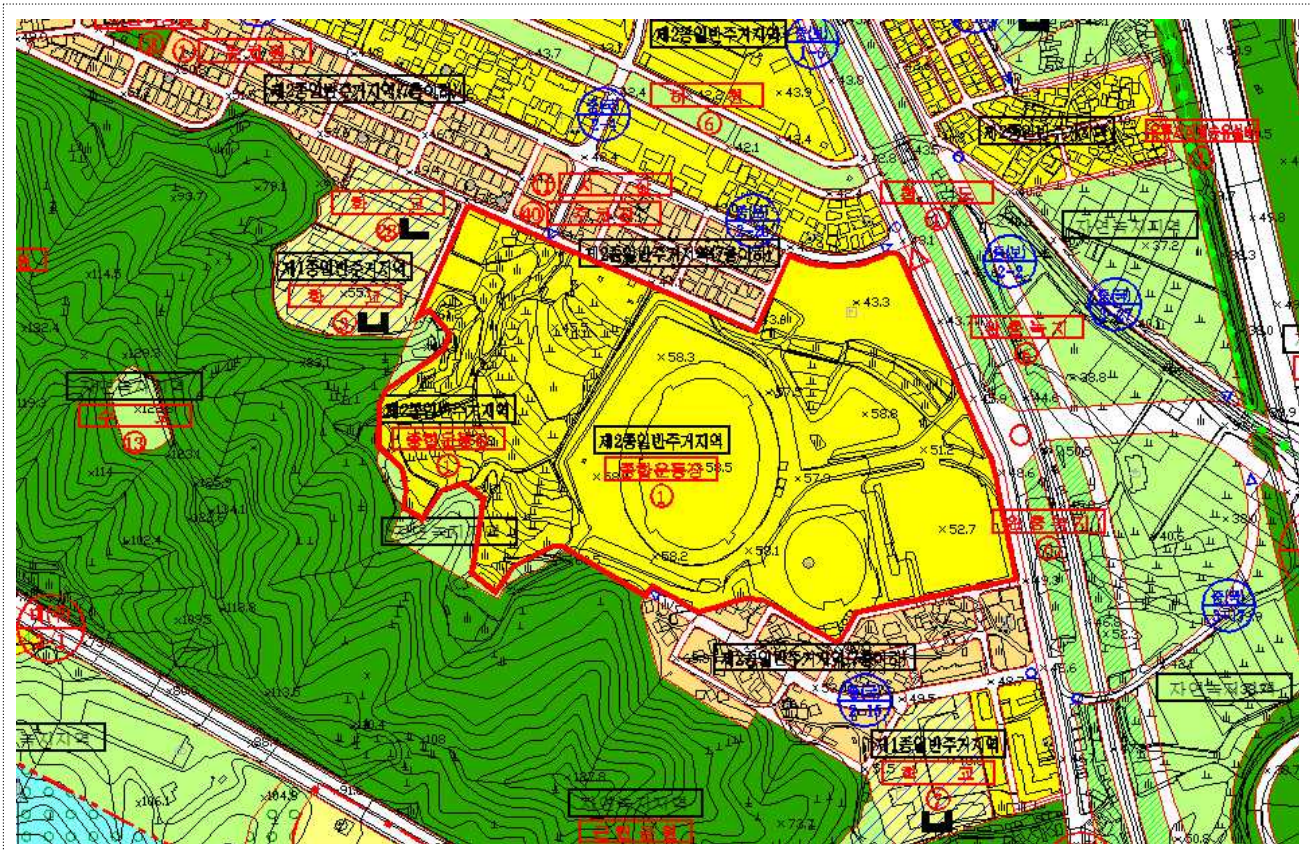
- 시설 명 : 운동장 1
- 위 치 : 광평동 277 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276호
- 결 정 조 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중 합 운동장	운동장	광평동 277 일원	236,174	-	236,174	경북고 276 (82.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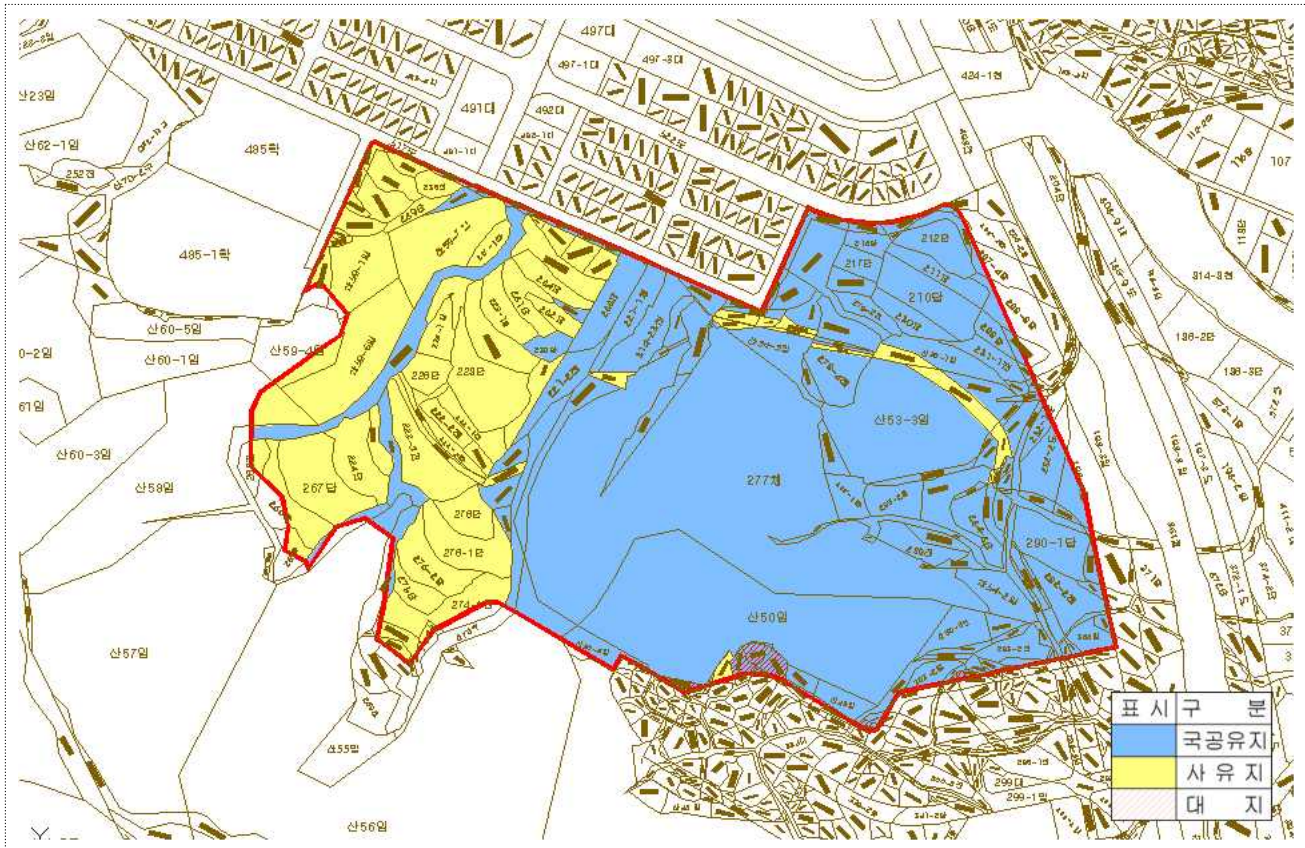
■ 일 반 현 황

- 당해 시설은 1982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31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236,174m²중 국공유지는 167,815m², 7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68,359m², 28.9%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524m², 0.6%로 구성됨)
- 인근에 경부선철도, 경부고속국도, 송정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시설은 시민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이 있으며 미개설 부분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운동장)

검 토 항 목	지침상	검 토
1.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해당 없음
2.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경우	폐지 또는 축소	일부 해당
3.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의 긴급한 시설이 아닌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해당 없음
4.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폐지 또는 축소	일부 해당
5.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경우와 여건변화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축소로 규정된 기준에 일부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
- 주거지역에 결정되어 인근에 경부선철도, 경부고속국도, 송정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시설은 시민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이 있으며 미개설 부분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미조성된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보상비 과다소요 및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조성부분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폐기물처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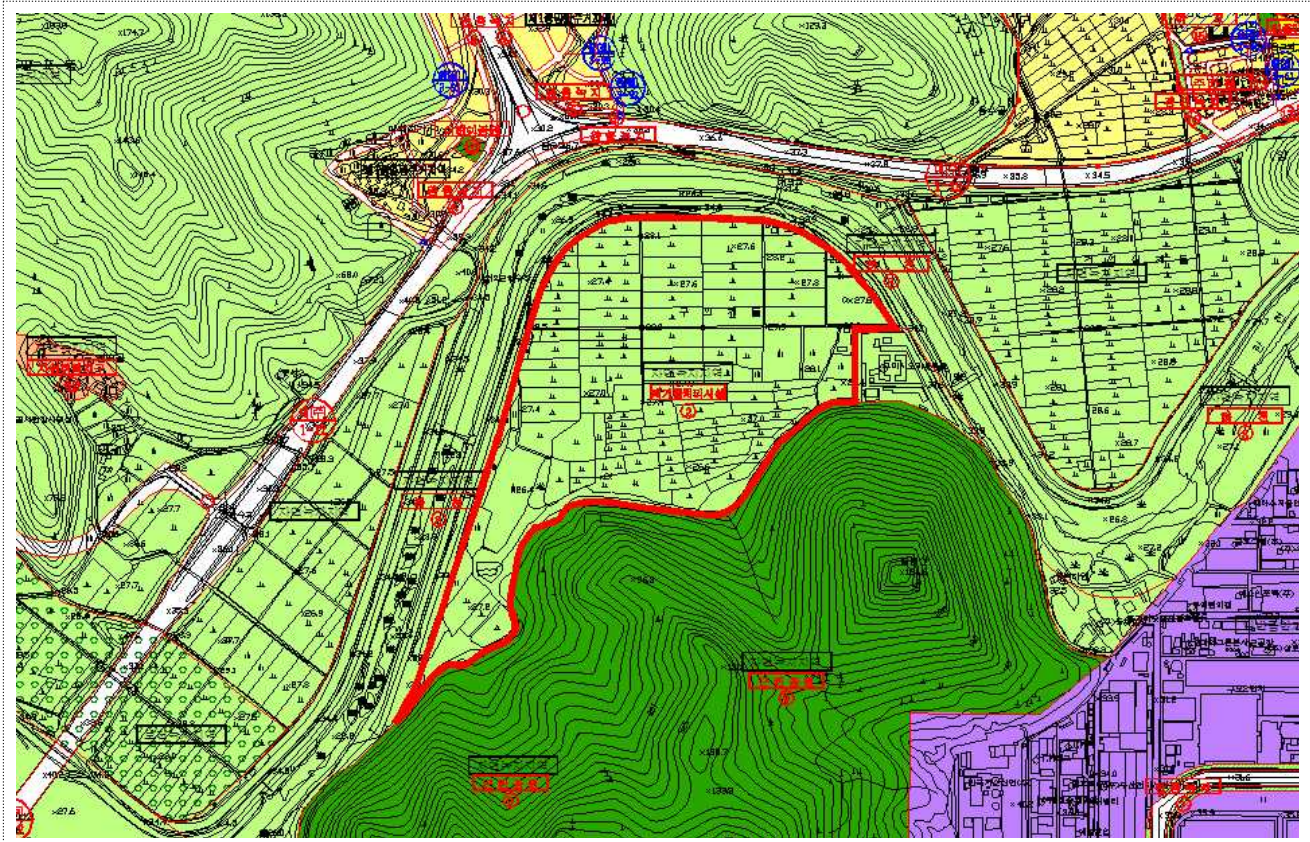
- 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 2
- 위치 : 구포동 921일원
- 시설결정연혁 : 경상북도고시 제305호
-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구포동 921일원	274,000	-	274,000	경북고305 (9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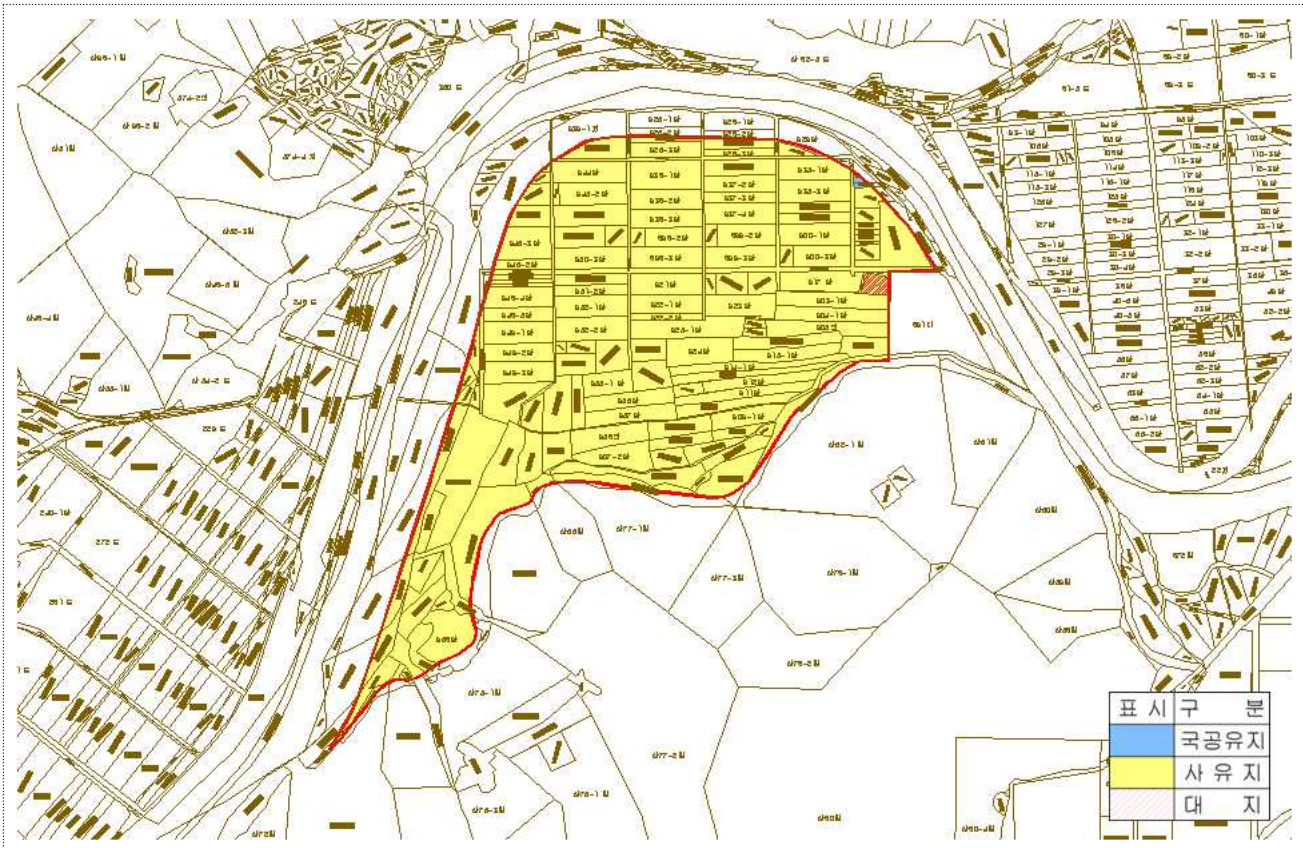
■ 일반현황

- 당해 시설은 1991년 구미도시계획에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까지 약 22년 동안 미개설 상태임
- 보상관계
(총면적 274,000m²중 국공유지는 930m², 0.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273,070m², 99.7%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는 1,066m², 0.4%로 구성됨)
- 인근에 한천, 거의교, 국가산업2단지 등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시설은 없고 현재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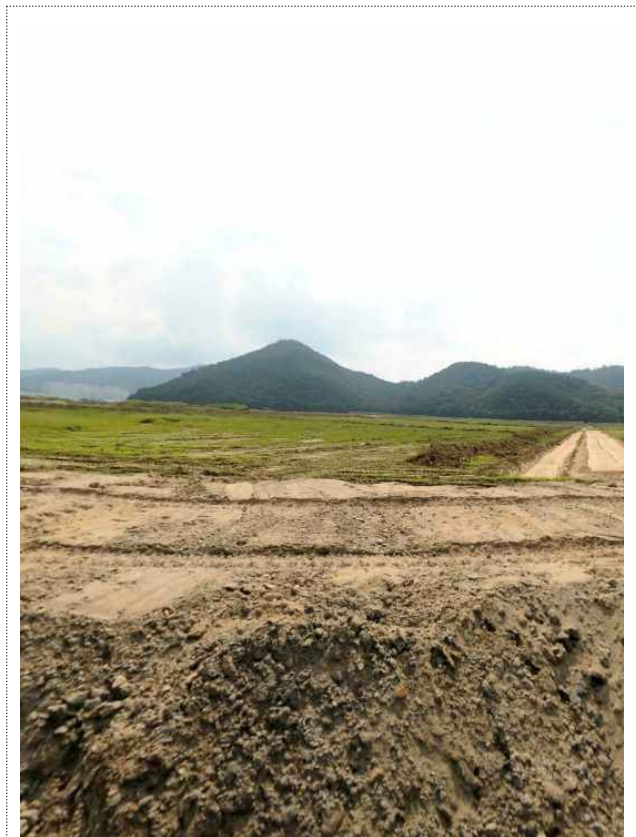
■ KLIS



■ 위성사진



■ 현황사진



■ 시설 재검토 기준(폐기물처리시설)

검 토 항 목	지침상	검 토
1.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해당 없음
2.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해당 없음
3.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의 긴급한 시설이 아닌 경우	폐지 또는 축소	일부 해당
4.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폐지 또는 축소	일부 해당
5.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지 또는 축소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지침상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해야할 지역의 긴급한 시설이 아닌 경우와 현재 여건변화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폐지로 규정된 기준에 일부 해당하는 사항임
- 자연녹지지역에 계획되어 인근에 한천, 거의교, 국가산업2단지 등이 입지해 있고 조성된 시설은 없고 현재 공터로 이루어져 있음
- 구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대체시설인 산동면 백현리 일원의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